

언론중재

2005년 봄호



특 집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판례동향 / 명예훼손의 법문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05. 봄

차 례



계간/2005년 봄호 • 제25권 • 제1호/통권94호
 인쇄/2005년 3월 27일 • 발행/2005년 3월 30일
 등록/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영식 • 편집인/최정
 인쇄인/이병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 : 02)397-3114, 3000, 3100
 FAX : 02)397-3029, 3049, 3069
 www.pac.or.kr
 전자조판, 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표지디자인/현춘수

| | |
|-------------------|---|
| 특 집 |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
| | 4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 양삼승 |
| | 26 •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 김재협 |
| | 42 •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 함석천 |
| 판례동향 | 54 • 명예훼손의 법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양창수 |
| 기고/연구 | 66 •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⑤ • 정상규 |
| 통계보고 | 80 • 2004년도 중재신청처리 등 주요 업무 처리현황 |
| 지방토론회 | 110 •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 장호순 |
| 언론보도와 임의중재 | 116 • ‘연예인 X파일’ 사건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 이효성 |
| 위원칼럼 | 122 • 중재단상 • 신명중 |
| 해외동향 | 124 |
| 자 료 | 130 • 언론중재신청사례 136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146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160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 언론과 법 | 164 |
| 위원회소식 | 166 |
| 언론법제권현황 | 170 |
| 지상중재 | 172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갈차문고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발원원고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정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양 삼 승
변호사

- 서울대 법대 졸업 대학원 박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 논문 : 「헌행법과 언론수용자 권익」,
「언론평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
제도의 개선」 외 다수

I.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987년과 1995년의 2차례의 법률개정으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오다가,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종합하고, 단일법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2005. 1. 1. 단일법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 약칭한다.)이 제정되게 되었다.

먼저, 위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위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다.

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시행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 제도(당시 법률상의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이었다.)의 도입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도 “반론권”이라는 법적 창조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물론 이 권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변형된 형태로 독일로 전수된 것을 우리나라가 이어 받은 것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위 권리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언론중재위원회”(실질은 “조정”에 해당된다)를 설치하고, 반드시 이를 거치게 하는 것으로 수정·도입되었다.

나. 1987.11. 28. 언론기본법의 폐지·정간물법 등으로의 수용

언론평해자의 권리구제에 획기적인 반론권의 제도를 규정한 언론기본법은, 1987년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출생 동기의 불순함을 지적받아 폐지됨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은 반론권제도는 1987. 11. 28. 정간물법 또는 방송법의 일부로 흡수되어, 이산가족은 되었지만 그 생명

언론중재법에 의해 위원회는
중재의 조정 및 심의 기능 외에
중재기능도 가지게 돼

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기회에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특히 반론권이라는 용어의 도입 등)을 시정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간단한 개정(불출석시의 취하 간주 또는 합의 간주 등)을 얻어 내 이외에는 더 큰 선물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다. 1995. 12. 30. 정간물법 등의 개정

1987년의 위기를 넘긴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후 약 10년 동안 실무자들 및 관련 언론학자와 법률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실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반론권 내지는 언론중재제도의 개념이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장기간의 노력의 결과는 1995. 12. 30. 정간물법 등의 개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즉 가장 큰 성과로서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법률 용어로 채택되어(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1986. 1. 28.의 대법원 판결로서, 이 판결이 법률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정간물법이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명백히 판단하였다.) 비로소 봄에 맞는 옷을 입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중재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직권중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재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라. 2005. 1. 1. 언론중재법의 제정

1995년의 정간물법 개정이 있는 후,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는 확실히 뿌리를 박아왔으며, 그 후로는 더욱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서, 한국형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뿐만 아니라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

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을 가져야 하겠다는 열망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2000년에 그동안 축적되어온 지혜와 경험을 모아 가칭 “언론평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가진 바 있고, 그 결론으로서 “언론평해구제법”(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위 가안이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국회에서 2002. 2. 8. 국회의원 27인의 발의로 정간물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3. 5. 29.에는 공청회까지 개최되었다.

그 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법률의 개정 작업이 미루어져 오다가, 2004년 말경 법률의 개정이 급물살을 타던 중, 2005. 1. 1.에 마침내 단일법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이른 것이다.

위 새로운 제정법은 그 동안의 언론관계 학자들, 법조인들 및 언론중재의 실무에 종사해온 분들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서 무난한 입법으로 보여 지기는 하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되는 점을 담고 있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언론중재법의 “핵심적” 변동사항

이번의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법률가, 언론학자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제정의 막바지 단계

에 이르러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야당인 한나라당 및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각각의 안을 제출하고, 이를 절충 또는 취사 선택하여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조문마다 그 연원을 찾기가 수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정법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법정정전의 언론중재제도와 비교하여 “핵심적인” 변동사항이라고 보여지는 5가지 점 및 “중요한” 변동사항 26가지를 먼저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하고, 나머지 “경미한” 변동사항은, 법률의 규정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단일법의 제정

반론권제도 및 이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정간물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규정된 형식이 적절치 못하여 단일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드디어 이번에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전세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집을 마련하여 이사한 모습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제정법의 명칭에 관하여,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위원회법 등 몇 가지의 안이 제시되었는데, 결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낙착되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법의 명칭으로 사용된 언론 “중재”라는 개념은,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실질적인 의미의 “중재” 즉 장래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그 경우에는 제3자(즉 이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될 것이다)에게 판단을 맡기고 당사자는 그 제3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것(즉, 현재의 제도상 상사중재원이 여기에 해당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거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중재위원회의 “기능”의 변화 [“중재”기능의 도입]

새로운 제정법은 제1조(목적)에서 “... 언론보도로 인하여 ...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 하고 ‘중재’ 하는 등의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언론보도 또는 개재로 인한 분쟁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는 제3절 중재의 제24조(중재) 제1항에서 “당사자의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2항 내지 4항에서 중재의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25조에서 그 효력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새 제정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는 실질적 의미의 “중재”의 기능도 함께 가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제정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종래의 조정 및 심의기능 이외에 중재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중재”의 제도는,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장래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분쟁에 대한 중국적 판단을 제3자에게 맡기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약속하는 것인데, 현재 제도 상으로는 상사중재원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소송 이외의 대체적인 (alternative) 방법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산상의 분쟁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중재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는 별로 없었고,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마련된 개정법률안에

중재부는 손해의 유무나 범위를
밝히는 데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분쟁 해결의 큰 틀을 망각해서는 안 돼

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정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갑자기, 어느 야당의 안이 받아들여져 법률로서 채용 되게 된 것이다.

아마도, 종래 언론“중재”위원회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는 “조정”이고 “중재”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지적받아 온 바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언론“중재”제도가 그 명칭과 실질이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법률로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이론상으로만 보면 잘못된 것이 없는 마당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성질상, 사전에 그 분쟁의 가능성을 예상하여 그 해결방안을 “중재”로 하도록 약속해 두는 해결방안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

다만, 보도가 행해지고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중재”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발휘될 여지가 있다.

다. 조정 “범위”의 확대 [손해의 배상도 포함]

새 제정법은 제18조 제2항에서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쟁점, 즉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점에 관하여는 종래 찬반 양론이 있었다.

즉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로서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의 3가지가 있는데, 이중 반론과 정정보도 이외에 손해배상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심리의 기간(최장 21일)이나 심리의 방식 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중재부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다는 것이다.

즉 언론피해로 인한 물질적 손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선 언론의 침해와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잘못된 보도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경합하여도산이 발생한 경우, 그 오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며 또한 피해자 자신의 잘못도 경합된 경우 어느 정도의 과실 상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오보로 인한 회사의 피해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예를 들어 매출의 감소만을 손해로 인정할 것인지 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 등이 한결같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면이나 시간의 할애 이외에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언론사들이 지극히 기피할 것이 명백하리라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언론사들이 배상한 금액을 취재 기자나 편집 기자에게 구상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이 반

론이나 정정에 대하여 더욱 경직된 자세를 보일 것도 우려된다(아니면 반대의 효과가 생길수도 있다).

이러한 반대론의 논거를 받아들여, 종래에는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하는 데에 소극적이거나 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하튼 이번 제정법에서는 이를 중재위원회의 조정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만큼 이제는 그 효율적인 운용에 유념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할진대 앞에서 본, 반대론의 주장 논거들에 각 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손해의 배상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의 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혹시라도 손해배상 분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까지도 해결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재부에서 손해의 유부나 범위를 밝히는 데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분쟁 해결의 큰 틀을 망각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1980. 12. 31.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의 범위는 최초에는 반론보도청구권만이 필요적 중재의 대상이었다가, 그후 1995. 12. 30. 법의 개정으로 추가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임의적 중재 대상으로 된 후 다시 2005. 1. 1. 이번의 법의 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조정의 대상으로 되게 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중재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범으로 규정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힐 염려도 있다.

부디, 이 점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라. 조정 “대상”의 확대 [인터넷 신문도 포함]

새 제정법은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제14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제16조 제1항), 추후보도청구(제17조 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제30조 제1항)를 각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에 각 관련되어 있는 언론사의 개념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정의) 제10호에서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인터넷신문은 정기간행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최근에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있어서 여론형성의 과정이 크게 변화되어, 종래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오프라인”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그 대신 “온라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받아들여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학계와 실무계의 일치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신문이 정식으로 언론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즉 이로써 인터넷신문도 역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터넷신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위 제정법 제2조 제8호에서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는 종래 정기간행물이 그 제명을 달리하여 개정된 법률이다) 제2조 제5호

『법률신문』(www.lawnews.co.kr)은 『법률신문』(www.lawnews.c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법률신문』(www.lawnews.co.kr)은 『법률신문』(www.lawnews.c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 동안 위원회의 조정전치 성과를 고려할 때 조정전치의 범위를 좀 더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 해

에서는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되는 전자 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온라인 매체가 여기의 인터넷신문에 해당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의 규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선은 법률의 규정 내용 중에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즉 "독자성"과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포털사이트는 법적인 인터넷신문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 "필요적 전치주의"의 폐지

종래의 정간물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한 소위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반면에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 또는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는 소위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반론보도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던 이유는 명백하다.

즉, 우선 중재위원회에는 언론관계법령에 밝은 법

조인들과 전직 언론인들, 기타 너망있는 인사로 중재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언론사 및 피해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중재부의 절차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반론보도 사건은 그 보도의 사실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심리가 비교적 간단하여, 구태여 법원의 상세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국민들이 반론권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중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룰 도대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가 보다 더 용이하다는 취지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그 본질상 보도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가름하여야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심리방식 밖에 취할 수 없는 중재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심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즉,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반면, 새로운 제정법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도 중재위원회의 조정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크게 방향을 바꾸었다.

즉, 제정법 제26조 제1항은, 아무런 제한 규정없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정법의 위와 같은 태도는, 종래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거치게 하면서도 중재위원회의 결정(이는 직권중재결정을 의미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으

로써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히 시간과 노력만을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제정법의 위와 같은 입법 의도는 당연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이 반론보도에서 필요적 전치를 폐지하고, 임의적 전치로 전환한 것이 옳은 선택인가의 점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그동안 실제적 사건 처리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정과 반론이 모두 중재의 대상으로 된 1996년 이래 2005. 2. 28.까지 최근 10년간의 사건처리통계를 살펴보면,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조정성립률은 평균 39.3%이었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이는 형식상으로는 신청취하의 모습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합의에 따른 취하의 경우 등을 포함한 것이다.)을 산출해보면 평균 68.6%에 달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조정성립률 31.2%, 피해구제율 59.8%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법원에 있어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사건해결(조정·화해 등) 비율보다 훨씬 높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중재부의 조정이 평면적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중재위원들이 법조·언론·학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정의 성립에 이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정전치의 성과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이었다면, 조정전치의 범위를 좀더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여러 법률시안에 있어서도, 반론보도뿐만 아니라 정정보도까지도 필요적 전치의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만은 임의적 전치의 대상으로 하는 안이나 견해가 발표되어 왔던 것이었다.

여하튼, 새 제정법의 규정이 위와 같이 마련된 이상, 이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의 실무에 있어서 가급적, 바로 소송제기로 가는 것보다는 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유도, 지도, 계몽하여 그 유용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III. 언론중재법의 “중요한” 변동사항

이번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있어서, 개정전과 비교하여 “중요한” 변동 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재위원회 및 중재위원에 관한 사항

(1) 중재위원 수의 증가

중전에는 중재위원회에 있는 중재위원의 수가 40인 이상 8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정법 하에서는 그 수가 40인 이상 90인 이내로 증가되었다(법 제 7조 제3항).

이러한 이유로서는, 반론보도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삭제되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약간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의 감소요인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이 추가되고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 역시 중재의 범위로 포함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언론중재사건의 증가를 예상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제정법은 중재대상의 추가와 중재범위의
확대로 사건이 증가될 것을 예상,
중재위원 수를 늘려

즉, 1개 중재부가 5인으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2개 중재부의 추가 설치를 상정한 셈이다.

(2) 중재위원의 구성

종전에는 중재부의 5인의 중재위원은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제정법에서는 5분의 1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자(법원행정처장이 추천), 5분의 1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대한변협회가 추천), 5분의 1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밖에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과거의 규정을 좀더 세분화하고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3) 중재위원의 임기 및 연임의 제한

종전에는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정법에서는 중재위원(따라서 중재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도 마찬가지이다)의 임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 규정을 두었다(법 제7조 제5항).

(4) 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

종전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정간물법 시행령 33조), 제정법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법 제7

조 제11항)고 규정하여, 중재위원회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훨씬 높여 주었다. 이는 중재위원회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5) 중재부장의 자격

종래에는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고만 되어있어서(앞서본 바와 같이, 5분의 2 이상이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누가 중재부장이 되는지 또는 중재부장의 불출석시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간혹 혼란이 빚어져 왔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법은,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법 제9조 제1항)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6) 중재부의 의결정족수

종전에는 중재부장을 포함하여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정법에 있어서는 중재부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되었다(법 제9조 제2항).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5인이 모두 출석한 경우에는 4인의 찬성(5×2/3)이 아니라 3인의 찬성(5×1/2)으로 의결하게 되었고, 4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3인의 찬성(4×2/3)이 필요하였는데 역시 3인의 찬성(4×1/2을 초과)이 필요한 결과로 되었으며, 3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2인의 찬성(3×2/3)이 필요하였는데 역시 2인의 찬성(3×1/2)이 필요한 결과로 되었다.

결국 위 조문의 개정은 5인 전원이 출석한 경우의 결을 위한 정족수가 4인에서 3인으로 변경된 점에서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7)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조달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기타 재원에 관한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어 운영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정법은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2조)고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재원조달의 출처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 방송법 제38조(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면서, 제10호에서 “언론공익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사무처에 관한 사항

(1) 사무총장의 임명 및 임기

종래 사무총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새 제정법에서는 사무총장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 제2항). 그러나 연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사무처의 조직·운영·직원의 보수 등

종래에는 사무처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직원의 보수·정원 등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

었으나, 제정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법 제11조 제4항), 그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다. 청구권에 관한 사항

이번의 제정법에 의하면, 언론의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사후적인 피해 구제의 방법으로는 ① 정정보도청구권, ② 반론보도청구권, ③ 추후보도청구권 및 ④ 손해배상청구권의 4가지가 있게 되며, 사전적인 피해 예방의 방법으로는 ① 침해정지청구권, ② 침해예방청구권, 그리고 이를 위한 ③ 물건의 폐기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청구권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종전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로서 인정하여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었다.

그런데 새 제정법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의 청구권을 민법 제761조에 의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언론중재법 자체에 의한 특수하고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 규정의 체제도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법적 성질

종전에는 정간물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을 그 법적인 성질은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청구권이고,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민법 제761조에 따라서 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새 제정법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제정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고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아

규정하면서, 이를 위하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요건이나, 위법성의 객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법 제14조 제2항), 오로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진실되지 아니한 언론보도”가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정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즉 일반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와는 별개의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권리의 구체적 내용

정정보도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및 정정보도의 내용이나 방법 등 권리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종전에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하여 규정되었던 내용들을 새 제정법에서 그대로 옮겨 규정하고 있다.

규정 내용의 중심이 종전의 반론보도에서 정정보도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2)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새 제정법에 있어서도 반론보도청구에 관해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규정하여 종전과 달라진 바가 없다. 다만 규정의 형식상, 반론보도의 거부사유, 그 행사의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정정보도로 옮겨지고, 반론보도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바뀐 점만이다(법 제16조).

(나) 그런데 법 제16조 제2항에서,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 규정은 법이론상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반론보도의 청구에 언론

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연혁 및 그 법적 성질에 비추어서 당연한 것으로서, 법률이 불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적절치 못한 입법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 다음으로는 더욱 중대한 결함으로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든지 아니면 규정을 두더라도 “진실”이 아닌 「“사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하였어야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또는 신중한 용어사용의 예에 의하면) 언론보도에 관한 한 “진실”과 “사실”을 구별하여 사용해 왔다.

이해의 편리를 위하여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A라는 공무원이 B라는 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A가 학교동창회의 총무로서 같은 동창생인 B로부터 동창회비로 송금받은 것이 사안의 진상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언론의 보도가 ① “A라는 공무원이 B라는 업자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면 이는 “사실”에도 어긋나고 또한 “진실”에도 어긋난 잘못된 보도이다. ② 만약 보도가 “A라는 공무원이 B라는 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보도되었다면, 이는 “사실”에는 부합하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아니하여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즉 일반독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이다). ③ 이에 반하여, 언론보도가 “A라는 공무원이 동창회의 총무로서 같은 동창회원인 B라는 업자로부터 동창회비로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다면, 이는 “사실”에도 부합할 뿐만 아

니라. "진실"에도 부합한 보도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보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여 "사실"을 "객관적 외형적 진실"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진실"은 이를 넘어 "그 동기나 사건 전체의 올바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각각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언론보도내용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의 예에 있어서 ①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②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③의 경우에는 A라는 공무원이 이러한 보도가 나가기를 설사 원치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언론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법 제16조 제2항의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규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종래 이러한 규정이 없던 때에, 반론보도에 관한 이론적인 해설에서 반론보도의 성질상 당연히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흔히 기술되었던 것을, 친절하게 법률의 규정으로 옮겨 놓으면서 이해의 부족으로 잘못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상의 과오를 참작하여, 여기의 "진실"의 의미는 "사실"의 의미로 선해(善解)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회적·선의적 해석으로, 위 "진실"이라는 의미를 앞서 본 바와는 달리 막바로 "사실"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 역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정법은 제14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진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곳에서는 앞서본 바와 같은 의미의 "진실"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3)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이에 관하여는 특별히 중요한 변동 사항이 없다.

(4)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권에 관한 사항

새 제정법은, 언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의 정지 또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제3항).

이는 종래 학설상 인정되던 침해정지 및 예방의 청구권을 언론보도에 관련하여 명분의 규정으로 옮긴 것으로서, 권리구제를 망라하여 규정하려는 법률입법자의 친절한 입법 태도라고 보여진다.

라. 신청과정에 관한 사항

(1)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

종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다(언론사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협의불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런데 새 제정법에서는 그 기한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로 연장하여 규정하였다(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언론사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11일 이내).

이는 가능한 한 언론피해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반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지위 불안정의 상태가 그만큼 오래 계속되는 점이 있다.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에 맞추어 추후보도의 청구에도 그 기간이 1월에서 3월로 연장되었으며(법 제17조 제1항),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월, 6월, 14일 기한이 적용된다(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정법상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소 제기 간주 조항은
신청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2) 피신청인(언론사)에 관한 사항

(가) 새 제정법은, “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제2항).

이 규정의 취지는 보도가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반론의 보도를 청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청구시 그 “대상인 보도내용”을 명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보도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신청인 즉 언론사에게 전환시킨 것이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통상 그 보도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종래 실무상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을 참작한 것이며 친절한 입법태도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의 청구기한이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보도내용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언론사는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다(법 제15조 제7항).

(3) 조정과정에 관한 사항

(가) 불출석시의 제재

종전에는 당사자의 불출석시의 제재에 관하여, 당사자에 따라 차별규정을 두었다. 즉 신청인의 경우에는 “1회”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던 것에 반하여,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2회” 불출석의 경우에만 합의

간주되었던 것이다.

새 제정법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여 신청인의 경우에도 “2회” 불출석한 경우에만 취하 간주되도록 하였다(법 제19조 제3항).

(나) 이의 신청시 소 제기 간주

종전에는 일정한 경우에(즉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부는 직권중재결정을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한 쪽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공연히 시간만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다시 새로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만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새 제정법에서는 (비록 직권중재결정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직권조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22조 제4항).

종래의 논의의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태도로 보여진다.

(다) 청구간의 변경 및 병합

새 제정법은 정정·반론·손해배상의 청구가 동일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청구상호간에 청구를 변경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법 제18조 제6항) 가능한 한 일거에 언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라) 조정신청에 수수료 징수

특집 /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새 제정법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제5항). 이는 실비보상의 성격과 함께 조정신청의 남용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수수료의 액수를 적정하게 규정할 것이 요망된다.

마. 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한 사항

정정·반론보도청구에 관한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치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된 것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정 신청 및 조정 과정에 있어서 정정·반론·손해배상청구 상호간에 변경·병합이 가능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의 제기 및 심리과정에서 역시 청구상호간에 변경·병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6조 제2항).

그리고,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 제소기간도 역시 조정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로 통일하여 규정하였다(법제26조 제3항).

바. 벌칙에 관한 사항

종전에는 벌칙으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었다(정간불법 제23조, 제24조).

그런데 새 제정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법 제34조).

사.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고충처리인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범위, 자율적 활동보장, 자격·보수·임기에 관한 사항의 공표, 활동사항에 대한 공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아.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종전에는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었다(정간불법 제18조 제8항).

그런데 새 제정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상세히 규정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자”도 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시정권고를 활성화시키도록 의도하고 있다.

IV. 언론중재법의 “경미한” 변동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변동사항 이

새 법에 의하면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해서도
조정이나 중재신청이 가능해져

외에도 언론중재법은 단일법으로 제정되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거나 미비하다고 주장되어온 부분들을 수용하고, 단일법으로서의 체제 완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경미한 부분들도 수정·보완 하였다.

그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재위원회의 임원의 선출, 임기, 임무(제7조 제1항 내지 제8항)와 중재위원의 역할, 지위상실, 제척 등에 관하여 종래 규정이 없거나 중재위원회의 운영 규칙으로 규정되어있던 것들을 정비하여 법으로 옮겨 규정하였다.

나.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의 국회보고의부(법 제11조 제3항) 및 사무처 직원에 관한 규정(법 제10조 및 제13조)을 신설하였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래 반론보도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것들은 수정·보완하여, 정정보도의 항목으로 옮겨 규정하고, 반론보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법 제15조 제4, 5, 6항 등).

라.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서면의 방법 이외에도 구술이나 서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하였고,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도 상세히 규정하였다(법 제18조 제3항 내지 5항).

마. 직권중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종래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법 제22조 제1항).

바. 중재불성립결정을 할 경우로서, 종전에는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당사자간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

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 하였다(법 제21조 제3항).

사. 기타 종래 법률이나 시행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재위원회규칙이나 또는 실무상의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을 다수 법률의 규정으로 수용하여 단일법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V. 맺는말

가. 이상에서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변경내용을 살펴보았다. 위 법률제정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20여 년 동안) 언론중재제도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 언론인 및 실무자들이 갈망해오던 “단일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이를 위하여 노력해 온 분들의 노고는 차하받아 마땅할 것이다.

나. 위 법률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고, 또한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노력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25년전 1980. 12. 31.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독일의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반론권의 개념조차 생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제대로 존속·성장해 나갈지 극히 의문스러웠던 때에 비교하면,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나름의 독특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

이제부터는 안으로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밖으로 우리의 선진제도를 수출·전파하는

노력도 함께 하여도 좋을 듯하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 법률의 경우에도 돌이켜보면 몇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본문에서 이미 기술하였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반론보도의 경우 필요적 전치를 삭제한 것이 못내 아쉽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경우에도 위 법률과는 반대로 필요적 전치로 하기를 바라는 바이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도 중재·조정 대상으로 한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나 싶다. 법률체계의 완결성을 위하여 권리 구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의도에 서였다고 보여지지만, 자칫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로 되어, 쉽게 해결에 접근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같고 닦아 성공적으로 이루

어 놓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에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라. 끝으로 반론보도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규정은, 사족을 넘어서 명백히 잘못된 규정으로 보여진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언론 보도관계 기사의 진·부를 표현함에 있어서 극히 유용하고도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회가 있는 대로 바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여하튼 위 법률은 제정되었고, 공포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2005. 7. 28.부터 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부디 잘된 점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쉽거나 부족한 점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폐해를 최소화 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가기간행

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보정”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의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지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

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그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시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살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부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의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

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을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후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민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 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특집 /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이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의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에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의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의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①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의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처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의나 사회적 법의 또는 타인의 법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존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발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 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새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김 재 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대 법학과 조동 대학원 법학박사
-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제3대학
언론방송법 박사
- 저서 : 『세계언론판례총람』
- 논문 : 「담약제 기사 인용의 문제점과
법적 책임」, 『동아일보 대 MBC 명예훼손
소송 판결의 의미』 외 다수

I. 머리말

2005. 1.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¹⁾이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 법률의 입법취지는 그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방송보도에 관한 반론보도 등의 규정인 방송법 제91조와 반론보도 등의 미방송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5호가 삭제되었다. 또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그 법률의 명칭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언론 침해에 대한 구제 규정인 반론보도 등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다.²⁾

II. 새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제도 등에 관한 주요내용

새 법률의 의의는 각기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단순히 포괄하여 단일화하였다

1) 이하 새 법률이라고도 한다.

2) 아울러 새 법률 제2조 제1호, 제6호로 뉴스통신도 언론에 포함시키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면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뉴스통신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자에 대한 구제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뉴스통신으로 인한 피해구제도 새 법률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언론중재법은 위원회의 활동이나
언론폐해구제제도의 실제 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언론폐해 구제제도 운용 측면에서 보면, 언론 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청구기간을 종전의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고, 반론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강제적이 아닌 임의적 절차로 만들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종전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여 종전 중재제도를 그 법적 성격에 맞게 조정으로 보아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통상의 중재제도에 걸맞는 중재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제도는 종전의 직권중재 결정제도를 그대로 따르되 그 용어만을 법적 성격에 맞게 조정으로 바꾸었을 따름이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다른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하

었다. 여하튼 이 같은 변화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나 언론폐해 구제제도의 실제 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반론권 제도 등의 법적 측면에서 보면, 반론보도 청구에 있어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며, 정정보도 청구에 있어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 정정보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전 정간법에는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라고 쓰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 즉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특적으로 인정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보아,³⁾ 정정보도는 반론보도와는 다른 차원의 제도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새 법률에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다같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언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의 보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같은 차원의 제도임을 명백히 하였다.⁴⁾ 그러나 새 법률상 정정보도 제도의 규정에 관하여 반론권과 같은 차원의 권리라

3)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285-286쪽 참조.

4) 그러나, 한편 양삼승 변호사는 '언론폐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43쪽에서 이론상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서는 서로 본질상 다름이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구태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보는 견해와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명예 회복의 특칙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르고 반론권과도 다른 특별한 새로운 성격의 권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⁵⁾ 그 법적 성격과 의미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Ⅲ. 새 법률 이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연혁과 법적 의미

1.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정정보도청구의 도입과 그 법적 의미

가. 도입의 과정

언론기본법이 1980. 12. 31. 제정되면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언론법제에 처음으로 반론보도 제도를 도입하였다.⁶⁾ 그 의미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게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 주장의 보도를 부상으로 구하는 권리이고, 그 성립요건으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그 보도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⁷⁾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나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 민법 제761조에 의한 종래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권리이다.⁸⁾ 말하자면 반론보도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받게 되고, 언론사로서는 다른 입장을 가진 상대방에게 토론이나 반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에 그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반론보도제도를 통하여 쌍방의 사실적 주장과 자료들이 보다 충실하고 균형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진실발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언론의 공익 목적에도 부합하게 된다.⁹⁾

한편 언론기본법은 반론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언론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원의 소송절차에 앞서 필요적 중재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간편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채택하였다. 그 후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1987. 11. 28. 언론기본법은 폐지되었으나 반론보도 제도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과 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전치제도는 그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¹⁰⁾과 방송법에 그대로 흡수되었다. 반론보도청구제도와 언론중재

5) 이러한 어느 견해에 의하든 정정보도청구권을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기초인 양 구제 제도의 첫머리에 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위헌의혹의 시선을 가진 언론인의 입장에서든 새 법률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6) 1980. 7. 21. 통감부가 법률 제1호로 공포한 공무원신분지법 제20조가 있었으나, 그 법률의 제정 목적이 일본이 한국의 신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우리 신문은 식민지하에서 애국애족, 사회의 복타으로서의 긍정적 역할만을 하여와 그 반론권제도가 실제 운용될 바는 전혀 없었고, 그 후 5·16 쿠데타 이후 방송법과 언론윤리위원회법에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축소되어 수용되었으나 역시 한낱의 운용사태도 없었다고 한다.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11, 2002, 법문사, 110-118쪽 참조.

7) 반론권으로서의 법적 성격 규명은 서울고등법원 1983. 11. 17. 82타200호 결정.

8) 그럼에도 일부 언론학자는 반론권이 불법행위책임에서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 761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유일상, 개정판 언론법제론, 2000, 박영사, 148쪽 참조.

9)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1987, 조선일보사, 521-522쪽, 박선영, 위 책, 437-440쪽 참조.

10) 이하 정간법이라고 줄여 쓴다.

반론보도제도의 근본 목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받게 한다는 것

제도는 정정보도청구라고 이름 붙여진 그대로 존치되었고, 언론사가 2회 이상 중재절차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도록 중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1991. 12. 31.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다가 1995. 12. 30. 정간법과 방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령상 반론권 제도의 본질인 정정보도청구권의 용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리하고, 그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전치주의를 그대로 두되,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사항으로 보아 중대대상의 폭을 넓혔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 결정 권한을 주었다.

하여튼 지금까지 언론 관련법에 규정된 반론보도 제도의 근본 목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권리의 행사요건으로 그 언론보도의 진실이나 위법성 여부, 나아가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그 제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반론권의 행사에 있어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요건인 행위자의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을 요구하면 신속한 구제의 길이 봉쇄될 우려가 있고 이는 반론권의 본질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도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보도가 허위인 경우에는 반론보도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재절차나 소송절차에 있어 그 행사 요건으로 보도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따져 판단하는 절차를 반드시 취하지는 아니할 뿐이라는 의미이다. 분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하더라도 '진실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에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명하든, 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반론보도제도의 중재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신속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경우로든 보도의 허위성이 밝혀지면 당연히 피해자는 다른 입장이나 보충의 의미를 담은 반박보도를 넘어 전부나 일부의 정정의 의미를 담은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도 반론보도제도의 본질이나 목적에 전혀 어긋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정간법이나 방송법상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와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정간법 제16조 제1항이나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사실적 주장 속에 허위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정간법 제18조 제1항(방송법 제92조에 의하여 방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에서 반론보도청구권 외에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도 중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정간법 제19조 제1항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필요적으로 중재절차를 전치절차로 거쳐야 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제2항에서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2조 제4항에서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¹¹⁾ 제5조 제1항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름을, 제2항에서는 그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가압류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0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간법 등의 반론보도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정정보도도 포함한다.

정간법 제16조 제1항이나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서 반론보도청구권자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적 주장에는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주장만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한편, 정간법이나 방송법상 그 규정 외에 언론보도의 허위의 사실적 주장을 특별하게 규정하여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반론보도청구에는 정정보도의 취지를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필요성과 신속한 권리 구제의 요구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반론보도의 의미로서의 정정보도는 다른 입장에 선 순수한 반론만을 구하는 반론보도와 그 목적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다. 즉 반대적 사실 주장의 신속한 보도나 허위보도사실의 신속한 정정은 구제의 신속성이라는

목적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물론 정간법이나 방송법에서 말하는 반론보도청구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는 정정보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개념상으로 보아도 반론보도는 그런 의미의 정정보도를 당연히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도된 원기사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엄격히 나누어 다른 제도와 절차로 운용할 필요는 없다. 이는 반론권 제도가 생긴 연혁이나 프랑스나 독일 등의 반론권제도의 기본 원칙과 성격 나아가 반론권의 본질과도 부합한다. 다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그 의미로서의 정정보도에 관하여는 반론보도와 다른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뒤에서 언급한다.

다른 한편 정간법에서 정정보도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 조항은 제18조 제1항으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대상으로 넣고 있는 것뿐이다. 그 규정 이외에는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당연히 그 의미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특칙으로 인정되는 민법 제764조의 정당한 해석에 따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분쟁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¹²⁾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항으로 포함한 것은, 우리의 정간법이나 방송법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언론중재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며

11) 이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가 반론보도청구권과는 행사요건이나 행사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신속한 반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는 통상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민사본안 소송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12) 물론 이 청구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인정되어 온 것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분쟁을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론권청구와 마찬가지로의 기간 내에 조기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피해자는 물론 방송사나 언론사도 포함한다)가 임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독특하고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¹³⁾ 다만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정보도에 대하여도 독립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¹⁴⁾ 그 이유도 뒤에서 언급한다.

더구나 정간행이나 방송법상의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가

처분절차에 따른 심리결과 신속한 반론권을 통한 구제의 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하면서 언론의 보도가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¹⁵⁾ 피해자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단순히 다른 입장에서 본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고 완전한 권리 구제와 신속한 권리 구제¹⁶⁾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게 되어 합리적이다.

결국 피해자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기본법에 처음으로 반론권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당연히 인정되어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⁷⁾ 새 법률 제정 이전의 경우 그 정정보도의 근거 법규는 민법 제764조가 아니라 정간행

13) 다만 입법론으로는 일반인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와는 달리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분쟁 절차의 해결을 언론중재, 반론권소송의 제도로 흡수시키고, 그 소멸시효도 특별히 제한하는 특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 특히 방송의 속성(방송 내용을 장기간 모두 보관하는 것은 어렵고 불필요하다는 등), 인터넷 시대의 언론매체의 신속성과 다양하고 다량의 보도로 인하여 그 전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여 명예훼손된 경우에도 쉬사리 잊혀지는 점, 언론의 자유신장과 기능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언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아 채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우리의 언론 환경과 대비하여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4) 그러한 의미에서 새 법률이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다시 등장시킨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15) 단순한 소명으로 축한지 민사분쟁과 같은 증명을 요하게 할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16) 그 경우에도 반론보도만을 병할 수 있다고 하면, 당사자는 다시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권리의 불완전한 반쪽 구제에 그치고 다시 민법상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게 하는 것은 절차의 지연과 반복, 비용부담의 증가 등의 폐해를 당하게 된다.

17) 혹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반론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민사신청절차에 의한 경우 보도의 자유와 편집권성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헌마165 결정을 들고 있다(안상운, 위 논문, 55쪽 이하). 그러나, 위 결정은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정정보도문이, 만약 이를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갖고 그와 같은 의미로 게재된다면 이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 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반론권의 내용으로서 정정권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여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정을 병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양경승,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문제, 사법논집 28집, 1997, 217쪽도 같은 견해이다). 그리고 반론권의 가처분절차도 본안절차와 마찬가지로의 필요적 변론을 여는 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로 재판하는 것이므로 재판권자의 침해가 가져 올 염려가 없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정보도를 병할 수 있는 경우는 반론보도의 전심절차나 재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모든 정정보도청구가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병합될 수 있거나 그렇게 청구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반론보도청구의 소에서 정정보도도 허용된다고 하여 반론권제도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의 반론권 규정이다. 따라서 정간법이나 방송법에서 말하는 반론보도청구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의 법적 의미

대부분의 학설상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엄격히 구분되고 중재절차, 범위의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그 중재결정이나 판결의 효력과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이 달리 되어 있으며, 소송상 양자를 병합하거나(주위적·예비적 청구로도) 청구 변경할 수도 없다¹⁸⁾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이 경우 정정보도는 언론사가 스스로 보도내용의 위법성과 허위성을 인정하고 그 정정을 하는 민법 제761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그 이름으로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정정보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정정보도청구라는 용어를 반론권에 포섭되는 의미인지, 민법 제761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의 의미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재하여 쓰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언론기본법 제정에 따라 반론권제도 도입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후에 용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로 잡았지만, 학자들이 이를

해석함에 있어 반론보도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점에도 기인한다. 즉 정정보도청구의 의미를, '허위인 사실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사에 언급된 자가 그 보도가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그 보도 사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그와 다른 생각 즉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데 있어 신문이나 방송 등이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무료로 할애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정정보도는 오로지 민법 제761조에 의하여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에 포함되는 것이지²⁰⁾ 정간법 제16조 제1항, 현행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아가 청구인이 반론청구의 소송절차에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고 입증한 경우에도 반론문이 아닌 정정보도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문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 또는 방송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처럼 설명한데서 비롯된다. 즉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정정보도문의 공표를 구하는 권리는 반론보도청구권에도 민법 제761조에 의하여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써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합의 또는 중재결정 등이나 범위의 판결을 보아도,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구하거나 병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대체로 언론사의 이름으로 허위의 보도내용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지 피해자의 이름으로 허위의 보도내용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구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두 의미의 정정보도청구는 다른 것이다. 그 근거로는 우선 민법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이론은

18) 학자에 따라서는 정정보도청구에는 반론보도가 병합되거나 반론보도로 청구되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안상운,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언론중재, 1998, 가을호 55쪽. 다만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반론보도만을 구한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정정보도만은 안되고 반론보도만 가능하다고 한다.

19) 양삼승,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98, 여름호, 7쪽 이하.

20) 한편 민법 제761조에는 그 외에 반론보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정정보도가 아닌 순수한 의미의 반론보도를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구하고 있으면 그러한 반론보도를 금지할 이유도 없고, 처분권주의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적당한 처분이라는 표현은 제한적 정정의 규정이 아니라 방법이 무한히 열려진 포괄적 포섭 규정이다.

반론권에 포섭되는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권제도 창설 이전에 이미 인정된 것이고, 민법 제 764조는 원래 그 침해의 정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침해의 방법도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민법의 불법행위의 침해 유형으로는 누구나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은 물론 말이나 책자(소설, 시 등을 실은 비정치적 문학잡지나 예술서적, 교과서나 참고서도 포함)·전단·소책자·안내문·팜플렛 나아가 조각물 등 일정한 형상의 제작 등을 통하여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등 그 침해 방법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말이나 전단물·소책자·안내문·팜플렛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명예훼손을 끼친 경우에 그 가해자로 하여금 명예회복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여 배포하게 할 수 있고, 그 방법의 하나로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침해사실을 게재한 전단물 등이나 관련 신문이나 잡지 또는 방송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반론권에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에 의한 명예훼손의 침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견이나 주장에 불과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가능하다. 또한 그 명예훼손의 원상회복 방법도 정정보도만을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정정보도가 적절하면 그 방법에 의하되, 다른 방법이 적절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불법행위가 전제로 되어야 하므로 피해를 받은 것과 보도의 위법성 외에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만, 반론권에 포섭되는 정정보도는 허위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실만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결코 언론사의 고의·과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도 양자의 차이는 본질적이다.²¹⁾

그리고, 우리나라에 반론권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허위의 사실보도나 주장 등으로 타인에게 명예훼손을 끼치고 그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정정보도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방법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이처럼 반론권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인정되어 온 특별한 원상회복 방법의 하나인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가 결코 반론보도와 대비될 수 있는 차원의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제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붙인 바도 없다. 따라서 반론권 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새삼스레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²²⁾²³⁾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의 언론보도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공표하여

21) 신문이나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게 된다.

22) 반론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의 개념을 법률이나 해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그와는 별도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는 그 대로 살아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에서 특별히 표시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67, 182쪽 이하. 이진웅, 언론에 의한 범의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새판자료77, 1967, 186쪽 이하에서도 반론청구와 대비되는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의 경우는 별도로 취급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필자와 같은 입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줄 것을 구하는 권리는 반론보도에 포함되고, 같은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의 언론보도가 단순한 한두가지 사실 보도가 아닌 여러 사실적 주장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일부는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보도이고, 일부는 허위의 보도인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구함에 있어 단순한 반론과 허위의 정정의 공표를 구하는 정정 주장이 함께 주장되어야 한다. 그 경우 청구는 별개의 청구가 아니고 반론권으로서 하나의 청구이어서 병합이나 청구변경이니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한다.²⁴⁾ 이는 반론권 제도의 발상지인 프랑스나 독일 나아가 오스트리아의 법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²⁵⁾

다른 한편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증거에 의하여 원보도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않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하급심 판결²⁶⁾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반론보도소송에서는 증거에 의하여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파기환송한 바 있다.²⁷⁾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하급심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²⁸⁾

물론 당시 적용된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보아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²⁹⁾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청구인이 정정보도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언론사의 이름으로 스스로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구한 잘못이 있으나, 마땅히 법원으로서는 석명을 구하여서라도 청구인 스스로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그 작성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경우 청구를 변경하여서라도 그러한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반론보도사건을 가져분 절차에 의하여 심리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IV.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새 법률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련된 규정 내용

새 법률은 용어의 정의로 정정보도는 언론보도 내

24) 그런 의미에서 새 법률에서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두 청구에 관하여 청구병합이나 청구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용어를 쓴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5) 프랑스의 1881년 출판자유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인정정권(droit de rectification)을 지금까지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번역하고 소개하고 있어 프랑스에도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자가 있을 지도 모르나(박은희,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8, 66-73쪽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으로 번역하고 있고, 박인수, 공인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법제현황, 언론중재, 2001, 봄호, 43쪽에서는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우리의 정정보도청구권과 혼동될 여지가 있어 특별히 공인정정권으로 번역하고 있다. 위 두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공인정정권에 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인정정권은 우리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26) 서울지방법원 1995. 6. 15.자 95카합1359 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8. 31. 95카합2283판결,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38815 판결.

27) 대법원 1998. 2. 21. 선고 96다10008판결.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7. 30. 선고 96카합1951판결에서는 보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잘못된 것이어서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방송보도 청구는 반론보도권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8) 정간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과 민법 제761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의 구별을 주장하는 것은 이론상이나 현행 법률상으로도 타당하다(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1, 법문사, 2002, 317-342쪽 참조).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와 달리 정간법이나 방송법상의 반론보도청구에는 허위사실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정정보도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29) 정간법 제16조의 규정의 해석은 1995. 12. 30.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용어의 정리 등과 상관없이 같을 수밖에 없다.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종래 반론권 제도에서
인정되어 온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개념화한 것

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제2조 제15, 제16호). 그리고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첫머리에 정정보도청구를 두어 그 요건과 행사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반론보도청구는 본질적 차이에 관한 약간의 차이를 담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이 다른 점은 권리행사 주체의 요건에서 전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후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에 대하여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보도내용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같은데 후자에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내용만이 다르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제14조 제3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나 관례상 인정되어 온 원칙을 반영한 것인데, 이 규정도 동일하게 반론보도청구에도 준용된다. 또한 신청인³⁰⁾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

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제26조 제2항), 이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2.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허위보도의 정정을 구하는 권리이다

새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반론권에는 언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문과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친 사실적 주장을 담은 정정보도문의 공표를 함께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그 정정보도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 보도내용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정정보도청구의 주체는 반론보도청구의 주체의 부분집합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해당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함). 이는 반론권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즉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종래 반론권 제도에서 당연히 인정되어 온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와 반론보도를 구하는 권리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법적으로 개념화한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¹⁾ 물론 이와 같은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다른 이름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부활하게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0) 피해자만이 아니라 언론사도 신청인이 될 수 있다.

31) 그리하여 종래 인정되어 온 반론권에 관한 이론이나 관례의 취지가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에 있어서도 모두 그대로 타당하게 된다.

부적절한 법률 용어의 선택이고, 또한 그것이 마치 반론권 제도의 기본인 것처럼 반론보도청구권에 앞서 상세히 규정하고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준용하게 하는 것은 규정의 형식상으로도 부적절하다.³²⁾ 더구나 언론기본법에 반론권 도입시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이름 붙여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킨 혼란을 다시 부추길 위험도 상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새 법률은 2000년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³³⁾의 제제나 내용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도 그와 같으므로 비록 정정보도의 공포 형식에 관하여 일부 규정이 다르기는 하나 그 법적 성질이나 의미에 관하여는 언론피해구제법안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 법안에서 반론보도분은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8조 제2항) 정정보도문은 독자 투고의 형식이나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5조 제5항), 따라서 그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도 아니고 종전의 반론보도청구권에 포섭될 수 있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허위의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그 정정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성립요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와는 다르지만 그 행사 방법은 같은 특별히 창설된

권리인데,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의미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간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 명한 정정보도문을 보면, 거의 모두 언론사가 그 이름으로 잘못된 보도 내용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잘못된 사실적 주장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형식이 아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로 반론권제도 외에 창설된 새로운 구제제도라는 것이다.³⁴⁾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우선 새 법률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을 반론보도청구권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양자의 권리가 같은 성질로 반론권 제도에 포섭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정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와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민법 제764조에 버금가는 정정보도를 강요당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정정보도의 소도 반론보도의 소와 마찬가지로 가치분절차에 맞게 함으로써 허위보도라는 점을 증거가 아닌 소명으로 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위헌의 소지가 더 커진다. 그리고 새 법률이 언론피해구제법안과는 달리 정정보도문은 피해자의

32) 반론권의 본질은 반론보도이지 정정보도가 아니다. 정정보도는 반론보도의 한 형태로 예외적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합의를 경우엔 인정되는 특별한 형식의 반론보도일 뿐이다. 물론 종전에 반론권제도에 포함되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와 혼동하는 위험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33)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15쪽 이하에 전분이 게재되어 있다. 아울러 양삼승 변호사가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

34)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13쪽에서는 언론피해구제법안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예외적인 위상회복조치와는 다른 특별한 새로운 성격의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새 법률은 언론피해구제법안과는 다르다. 여하튼 이 견해에는 언론사 스스로가 아닌 피해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정정보도는 성질상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그것과는
법적 성격과 의미가 달라

진술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피해구제법안의 그것과 다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결국 그 법적 성질을 반론권 제도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새 법률 제18조 제6항은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서로 변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래 두 청구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관례를 의식하여 특별히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나, 반론보도와 정정보도가 본질상 같은 제도라고 보면, 그 규정이 없이도 상호 청구취지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반론권 법제에서는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 모두 중재위원회, 법원, 피해자측과 언론사측이 서로 협의하여 수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문제된 원보도기사에 대하여 정정을 구할 부분과 반론을 피력할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정정과 반론보도의 취지가 모두 담긴 반론문의 공표를 청구하게 될 것인데 이를 청구의 병합이라고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다만 동일한 하나의 보도기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주

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구하고, 허위라는 입증이나 소명이 부족하면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대(大)가 소(小)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 언론법제의 규정에 더 부합한다.

3.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새 법률 제26조 제4항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권리와 별개임을 명시하고 있다.³⁵⁾ 정간법 제19조 제2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간법에서는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제18조 제1항에서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라고 함에 있어서만 사용할 뿐이어서,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나오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³⁶⁾ 다만 그로 인하여 반론보도에 포함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형식의 정정보도는 반론권으로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권 즉 피해자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문을 작성하여 해당 언론사에 공표를 청구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간법 제16조 제1항

35)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법률 제31조에 민법 제761조를 그대로 따오면서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 한다'는 제2문을 추가하여 그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36)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언론보도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지닌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 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나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것이지 그 외에 따로 법적인 근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³⁷⁾ 다만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을 반론권제도 관련 법률에 재등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이다. 여하튼 새 법률에는 정정보도청구를 반론보도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새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와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는 그 법적 성격과 의미가 다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새 법률 제31조 제2문은 잘못된 규정이다

새 법률 제30조가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일반 규정을 약간 변형하여 두고 있다. 그리고, 제31조 제1문에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인 민법 제764조를 그대로 따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그런데, 그 제2문에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제31조의 규정도 언론피해 구제 제도 중 제1절 소송의 란에 규정된 것이고, 그 전제인 제30조의 특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30조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일반 규정과 그 체를 같이하고 단지

위법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수단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1조도 민법 제764조와 같이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을 둔 것이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1조의 정정보도의 청구는 제13조, 제15조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제13조, 제15조의 정정보도청구권과 같이 그 청구에 있어 불법행위의 일반 이론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립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 보도내용의 위법성을 배제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제30조, 제31조의 손해배상제도의 체계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다만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과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규정을 주의적으로 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에 대하여는 그 같은 추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인정되는지에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대하여만 특별히 그같은 추정을 명분의 규정이 없이 일반화할 수는 없다.

V.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절차적 의의

1.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조정사항이다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반론

37) 정간법 제16조 제1항이나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실적 주장 속에 허위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38) 민법 제764조와는 달리 '정정보도의 공표 등'이라는 문구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부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는 진적으로 동일하다.

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여(제19조 제7항) 이들의 참여로 인하여 중재부가 겉으로 표출된 분쟁의 양태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그 주변 상황이나 속사정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어 분쟁의 실질적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정절차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 전에도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정(제20조 제3항)을 두고 있다.

3.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따른다

새 법률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침이 없이 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의신청시 법원에 소제기가 된 것으로 보아(제22조 제3, 4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낭비와 지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두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제도의 이용을 제고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권의 법원 소제기 기간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제기기간과 동일하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보도가 있을 후 6월 이내로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불성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 소제기한 것으로 보는

특칙이나 제소기간에 대한 특칙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이 새 법률에 규정된 대로 조정신청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숙고하는 등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고(제26조 제3항),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에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제26조 제4항),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제26조 제5항),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심리에 관하여 가처분절차의 규정(다만 보전의 필요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본안의 제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제외)에 의하여 재판함을(제26조 제6항),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항소만을 허용하고(제28조 제1항) 있는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한편 앞으로 새 법률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될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이 종전의 반론보도등 청구사건 심판규칙과 어떻게 다를지는 의문이나, 그 내용이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법리적으로 중요한 점을 들어 보면,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고,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며, 그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가압류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이다.

새 법률은 조정절차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자들에 대한 중재위원의
후견적 조정기능을 강조해

이처럼 새 법률의 규정도 종전의 정간법 등이나 관련 규칙과 마찬가지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치분절차와 유사한 보전처분절차에 준용하여 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의 성질을 전제해 두고(사실인정도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한다), 단지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절차를 열어 판결로써 결론을 내리고, 그 불복절차도 상소의 절차를 따르며, 집행절차에서도 통상의 민사집행법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별조분을 두고 있다. 이는 정정보도등에 관하여 그 다름을 신속히 해결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의 소송절차가 아닌 보전처분절차를 따르게 하되, 정정보도청구등의 성질상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면이 있어 배제 조항을 특별히 많이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필연적으로 가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많은 예외 규정을 둔 조치에는 이론상은 물론 실무상으로도 많은 의문이 간다. 그리고 그 의문에 관한 다름이 있어 오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인 반론보도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에서 집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

로이 두게 되는 복잡한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³⁹⁾ 우선 정정보도 등에 관한 다름이 통상의 민사쟁송과 성질상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권리구제의 신속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보전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 등에 관하여 권리의 신속 구제는 특별 전담재판부를 두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중재위원회 중재절차를 거친 기록을 파악한 뒤 바로 변론기일을 넣어 심리하든지 별도의 변론준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에 대하여 기일을 짧게 잡아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증거조사에 협조하게 하는 등 담당재판부의 실제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관하여 굳이 민사소송법의 변론이나 불복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거나, 민사집행법의 준용이나 예외조항 등을 두는 등의 복잡한 법률적 구성을 할 필요는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나 민사집행절차와 다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특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⁰⁾ □

39) 원오근,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민사판례연구 21권, 박영사, 725쪽 이하에서도 이미 이를 지적하고 있다.

40) 반론권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가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우리처럼 언론중재위원회라는 특수한 중재 재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통상심리절차와는 다른 급속심리절차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의 가치분절차와 유사한 점은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함 석 천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 서울대 법학과 졸
-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판사
- 논문 : 「언론소송의 실무」
「반론보도청구소송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연구」 외 다수

1. 시작하면서

필자는 1999년 4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언론전담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당시 서울지방법원) 제25 민사부에 근무하였다. 당시 전국에 공식적인 언론전담부는 1개뿐이었고,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하여 위자료가 1억 원이 넘는 사건이 선고되기 시작할 때였다. 언론 소송에 특유한 이론이 집대성되고 판례가 정비되어 언론 소송이 실무에서 하나의 완전한 전문 분야로 뿌리내린 시기이기도 하다. 필자가 언론전담부를 떠날 때에 즈음하여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에 관한 논의가 본 궤도에 접어들고, 공인(公人) 소송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으며, 언론사간의 분쟁이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 대법원에서 공적인 논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에 관한 법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또 한가지 주목할 변화는 인터넷이 언론의 자유의 중심 핵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을 전후하여 공직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인터넷

이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언론(言路)로 등장하였고, 그와 더불어 인터넷 언론이 여론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훨씬 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법리가 형성되어 왔지만, 이 시기와 때를 맞춰 법이 정비되면서 인터넷 언론이 제도화된 언론매체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영향은 언론 사건의 세계화 추세를 낳아 이제는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커지게 되었다.

그다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와 빠른 변화가 있어왔다. 이제는 정부 여당의 개혁입법 중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필자가 언론전담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언론 사건은 전통의 손해배상의 관점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유연한 분쟁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때와 같은
기계적이고, 수치적인 계산이 애초에 불가능 해

정정보도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정과 중재까지 아울러 관장할 수 있게 되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손해배상 부분에 관하여 법리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손해의 개념과 위자료

민사 사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최종적인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 민법 규정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분쟁 해결의 단초가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른 민사 피해 배상 역시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언론 보도로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때 문제되는 손해는 어떤 것인가.

'손해'는 비자발적(非自發的) 손실로, 자발적 손실인 비용과 대비된다.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에 대한 손해가 가장 흔하고 이해하기 쉬운 손해이다.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지만, 현재 법원은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의 손해 3분설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폭행으로 신체 침해가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받아 직접 발생한 치료비는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가장 대표적인 손해이다. 이를 적극 손해라 부른다. 다만, 향후 치료비와 같이 언젠가 반드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 역시 적극 손해에 들어간다. 소극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

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다. 일실 수입(불법행위로 잃게 된 수입)이 가장 대표적이다. 입원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기왕의 일실 수입과 노동능력 상실 비율에 따른 장래의 일실 수입이 산정 기초가 된다(직업 없는 자라도 통상 노임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들 재산상 손해를 모두 산정한 다음 고려하는 손해 영역이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민법 제751조)을 만회해 주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손해 산정에서 위자료는 적극 손해와 소극 손해를 계산한 다음 가장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자료는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조 기능을 가진다고 말하여진다. 대법원 역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위자료의 보충적 성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공 1985. 23] 참조). 위자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아왔기 때문에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정신상 고통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때와 같은 기계적이고, 수치적인 계산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자료가 재산상 손해 산정의 어려움을 보충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언론 사건에서 문제되는 인격권 침해,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손해는 주로 위자료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가 종종 문제되기는 하나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3. 언론 사건에서 위자료의 의미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생명, 신체의 침해와 달리 명예훼손에는 오로지 '정신상 고통'만이 손해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명예 외에 다른 인격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등이 대표적인 인격권들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결국 이러한 인격권들의 침해에는 위자료가 손해 산정의 중요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주로 문제되는 범익은 '명예'이고,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문제되는 손해는 '위자료'이다. 언론 보도로 다른 인격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어떤 정신상 고통이 생기는가?

우선 명예는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된다.

전차 자본주의가 심화되어 경제생활에서 신용이 중요해지고, 사회가 정보화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사람에 대한 주위의 평가는 그 사람의 신체나 생명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오래 전부터 사람의 명예가 사회생활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 왔지만, 통신이 발달한 요즘처럼 사람의 명예와 신용에 많은 무게를 두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정신상 고통은 크게 인격적 가치 하락과 경제적 가치 하락에서 오는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기준으로 사회적 평가의 내용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평가 가운데에서도 인격적 평가와 경제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고통에 따른 손해는 독립적일 수 있지만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사례를 들어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범죄 보도를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범죄 보도의 대상이 되어 전국적으로 얼굴이 알려지거나 이름이 알려져 주변에서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위의 인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범인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언론 보도로 실제 처벌보다 가혹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생각들이 점차 명예를 사람의 신체나 생명과 같이 중요한 범익으로 보게 하였고, 그에 따라 명예 침해에 따른 위자료 역시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범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다음으로 언론 보도로 어떤 사람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흔히 신용 하락과 관계가 깊다. 유해한 음식(예를 들어 납이 든 꽃게)을 판매하였다고 어떤 가게를 상호가 나오게 크게 비추면서 그 실태를 보도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가게에서 실제로 납이 든 꽃게를 취급하였다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고, 유해 음식을 판매한 것 역시 진실이기 때문에 보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 가게에서 납이 든 꽃게를 취급하지 않았다면 어떠한가. 그 가게 주인은 현저한 신용 훼손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

위자료는 경제적 평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에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

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까지 몰릴 수 있다. 결국 잘못 된 언론 보도로 한 개인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언론 보도 후 매출 급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입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매출 급감에는 언론 보도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 시점에 즈음하여 꽃게 철이 지났다거나, 경기가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들이다. 관례 중에는 연비 향상 장치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 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방송 보도를 전후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언론 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공1999. 2292] 참조). 결국 이러한 경제적 평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은 위자료가 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생기는 손해는 생명, 신체에 침해 때 못지않게 심각하고 지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 역시 그에 상응하여 높아져 온 것이다.

4. 위자료의 범위와 배상 액수의 변화

(1) 언론 사건에서 인정되어 온 위자료의 범위는 어떠한가.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극단적으로 말해 하나의 언론 보도로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때, 위자료는 1원에서 수억 원까지 산정이 가능해진다. 0원은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상 고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곤란하다. 다만,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대신하여)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외가 있기는 하다(민법 제761조).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도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인정된 것이다. 이 경우 위자료 부분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언론 보도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언론 사건에서 위자료의 범위는 이와 같이 매우 넓다. 생명, 신체 침해의 경우에도 물론 과실상계 등으로 매우 적은 금액에서 수억 혹은 수십억 원까지 배상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산정 기준과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여 법관이 배상 금액에 재량을 발휘할 소지는 위자료보다 크지 않다.

그렇다면, 명예 기타 인격권 침해에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탄력적인 것일까?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해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자.

미국에서도 명목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이라고 하여 다른 방법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1달러 정도만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체면만 세워 준다는 말이다. 그런데 손해배상 액수가 고액일 때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되기도 해왔다. 예를 들어 1987년 텍사스 증권회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억 2천 3백만 달러 (\$223 million)의 배상을 명한 배심원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판사가 실제 손해 2천 2백 7십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2만 달러로 감액하기는 했지만, 감액된 액수마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다(이 사건과 그밖에 유사한 사건들에 관한 소개는 www.asne.org/ideas/ucaseaton.htm 참조). 상황이 이러하기에 미국에서는 30년 넘게 신문사 사장과 편집인으로 지내온 언론인이 거의 매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고 솔회하고 있다(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 전 의장 Edward Seaton의 글). 미국은 우리보다 위자료의 편차가 훨씬 더 심한 편이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은 미국과 달리 위자료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가 하나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선고할 때까지도 위자료 액수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일본의 몇 배 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다. 독일이나 일본의 법관들은 전통적인 손해 산정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는 어떠한가. 대체로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라고 보여진다.

우리의 경우 실제로 1원 정도의 극히 적은 위자료만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필자가 본 언론 사건 중에 위자료가 가장 낮았던 사건은 100만 원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방송 뉴스 시간에 내국인의 미군부대 카지노 출입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를 방영하면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종업원의 얼굴이 2회에 걸쳐 약 0.2초와 0.4초 정도 방송된 사건이었다(서울 동부지방법원 2000. 10. 25. 선고 2000가단21636 판결: 확정).

최고 위자료는 어떠했을까. 필자가 아는 바로는 언론전담부에서 신고한 사건 중 한 개의 명예훼손의 언론 보도에 대한 최고 위자료는 1억 원이다. 그 효시는 검사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다는 방송 보도에 대하여 위자료 1억 원이 선고된 사건이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되어 항소취하되었다). 이 판결은 1999년 6월에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방송사는 근거 없이 사건 부탁이 있었다고, 고의에 가까운 거짓 보도를 한 것이 높은 위자료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2) 이제 우리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액수의 변천 추이를 살펴보자.

1990년 초반까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원 미만이었다. 당시에는 언론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서 언론은 억압의 대상이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는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보다는 언론의 자유 확장을 위해 법원이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위자료가 여전히 손해배상에서 보충적인 역할만 담당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했기에 고액의 위자료 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 후 1992년 사죄광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위자료 액수가 차츰 높아졌다. 2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 때로는 그 이상으로 위자료가 높아졌다. 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방송이 전국적인 전파력과 대중에 대한 신뢰를 쌓은 데다, 1992년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이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위자료 증가 추세는 1996년 언론전담부가 설치된 후부터는 다소 강도가

대체로 1990년 이후 언론사건에서 위자료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다 2000년을 정점으로 하여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99년 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오보에 대하여 1억 원이 선고되고, 이어 2000년 유명 여성 앵커가 사생아를 낳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한 사건에서 1억 원이 선고되면서 위자료가 억대에 접어들었다. 당시 언론은 범죄 보도에서의 익명보도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인에 대한 무모한 보도를 이어오던 때였다. 과거부터의 관행을 바꾸지 않은 부러한 보도가 많았다. 그런데 이미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커져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대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오보는 그 개인의 사회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가 심대해졌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올린 것이다.

그런데 위자료 고액화 이후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공인¹⁾이 제기한 소송(특히 검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붓물 터지듯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액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필자가 언론전담부에 근무할 때 본 가장 큰 청구금액은 200억 원이었다(인지대까지 냈지만 후에 취하되었다). 사실 1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인 아닌 개인(예를 들면, 공동경비구역 내 육군 중위 타살 혐의자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도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가 선고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은 1억 원의 위자료가 처음 인정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모두 공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 상징성이 매우 강했

던 것이다. 필자는 2001년 모 일간 신문의 유명한 주필이 “소송 맞들인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공인들의 법원행을 따끔하게 꼬집는 칼럼을 본 적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공인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현재 언론전담부가 2개(제25 민사부, 제26 민사부) 설치되어 있다. 2000년 한 해 언론 사건 중 총 인용금액은 승소 1건당 평균 38,000,000원 정도라고 한다. 이는 평균 청구금액이 약 2억 9천만 원인 점에 대비하면 약 13% 정도 수준이다.

공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어떠한가. 우선 청구금액은 평균 약 4억 6천 5백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확실히 전체 평균보다 높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용 금액은 평균 3500만 원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그 후 2003년까지 인용된 공인들에 대한 인용 금액을 분석해 보면, 2000년 수준과 같거나 더 낮아졌다고 한다.²⁾

아무래도 검사 사건과 유명 여성 앵커 사건의 상징성이 모든 사건의 위자료가 많이 높아졌다는 다소 무리한 추측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

아주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1990년 이후 언론 사건에서 위자료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다 2000년을 정점으로 하여 다소 추세가 누그러지는 형상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약의적인 보도에는 1억 원 이상의 위자료가 선고될 여

1) 공인(公人)의 사전적 의미는 공직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언론 사건과 관련된 공인에는 고위 공직자 외에도 연예인, 인기 스포츠맨, 저명한 시인이나 소설가 등 사회적인 인지도를 가진 공적인 인물도 포함한다. 다만, 특정한 공적 논쟁과 관련하여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2) 통계는 현재 언론전담부에서 산출한 내부 통계 자료에 근거하였다. 자료 인용을 허락해 주신 담당 판사께 감사 드린다.

지는 남아 있는 듯하다.

(3) 그러면 왜 여태까지 위자료의 상한이 1억 원이었을까.

법관이 위자료를 정할 때 아무래도 재산상 피해 산정에 관한 경험을 떨쳐 버릴 수는 없다. 고의에 의한 생명 침해가 있을 때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1억 원을 밑도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여태까지는 한 개의 언론보도로 인정될 수 있는 한 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억 원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액수가 손해배상으로 선고될 수 있을까. 미국은 각 주마다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법 제도를 뭐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체로 그 원인은 배심제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유연한 인과 관계 인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일본을 포함한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에서는 전문 법관이 사건을 관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까다로운 증거 법칙과 인과 관계에 따라 손해 액수를 산출해 낸다. 이렇게 까다롭게 손해를 판정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에서 언론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가 폭넓게 인정될 소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미국에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심제도에서 비롯하는 증거의 우월에 따라 인과관계도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배심의 평결 후에 판사에게 감액 권한이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액의 배상액을 갚아나가다 파산 신청을 하는 언론사까지 있었다니 그 파장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고액의 배상 판결이 선

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이 뜨겁다. 그에 따라 보도 후 정정보도를 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입법안이 각 주에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규모와 언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위자료를 결정하는 요소들

(1) 언론 사건에서 위자료를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선 이념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보상적 관점이다.

법적으로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보도가 허위일수록, 배포의 범위가 넓을수록, 전파력이 빠를수록, 남기는 인상이 강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늘게 된다. 그만큼 정신상 고통이 커지고, 배상해야 할 손해도 커지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예를 들어 범죄자로 낙인 찍혔을 때를 생각해 보자. 언론의 자유 혹은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사람이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면 이것은 법이 정한 처벌에 앞서 더 가혹한 고통을 받는 결과가 된다. 나중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 해도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범죄인이라는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고, 또 그러한 평가는 평생을 두고 그 사람 뒤를 따를지 모른다. 성급하고 무리한 범죄에 대한 실명 보도는 범죄인과 그 가족에게 실제 형의 집행에 앞서 때로는 형벌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고액화 현상은
법이 인격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

다음으로 유명인의 출생의 비밀을 밝혀준다고 하면서 그 유명인이 사실은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을 것이라거나, 여동생이 있는데 사실은 여동생이 아니고 딸이라는 등의 추측 보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 한창 주가를 올리는 연예인에게 이와 같은 보도는 치명적이다. 물론 공인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실적 보도는 면책 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인정되어도 낮은 수준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예인의 사생활을 다루면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허위를 사실인 것처럼, 혹은 아주 근거가 있는 소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 연예인에 관한 한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

언론 사건에서 위자료의 중심 역할은 명예훼손 보도에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한 보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한 고려이다.

주로 고의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 보도한 경우가 문제된다. 기존 시장의 진입 장벽을 깨고 판매 부수, 시청률, 혹은 접속 횟수를 순식간에 높이려는 신생 언론사 혹은 언론 매체가 고의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이러한 충격 요법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이 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따르는 전통의 대륙법의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법리로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곤란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의적인 인격권 침해의 재발 방지는 법이 손해배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형법이 기자 개인을

처벌하여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자 개인의 처벌로 방대한 조적을 갖추고 광범위한 전과력을 가진 언론사의 무리한 보도까지 제어할 수는 없다.

최근 들어 언론 기관의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소속 기자들이 늘어나고 역할도 부서별로 다양해지면서 한 사건이나 주제에 관하여 데스크라 불리는 일정 부서 내 책임자의 지휘 아래 기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각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언론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제는 이러한 언론의 현대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여태까지 위자료의 보충적 역할만을 생각해 온 전통 법 이론이 고려하지 않았던 분야이다. 하지만 법이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언론의 자유를 적절히 제어해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율적인 제어 수단이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현상이었던 것이다.

셋째, 징벌의 의미이다.

위자료에 징벌의 의미를 가미하여 그 액수를 정할 때 징벌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왔다. 특히 언론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자주 등장하였다.

미국에는 징벌 배상이라 하여 사안에 따라 현실 배상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불러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있다. 민사와 형사가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은 영국의 보통법 전통에서 비롯한 영미법계의 특수한 범분화라는 설명이 주류이다.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 사회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고의적인 행위들에

대한 응징을 위해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증권 관련 분야에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우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아직까지 우리는 자기가 잘못된 만큼, 그리고 자기 책임만큼만 대가를 치르면 그 잘못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위자료에 언론사에 대한 징벌의 의미를 가미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소 회의적이다. 언론사를 징벌할 필요가 있는데도 형사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그 기능을 민사 손해배상의 한 영역인 위자료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만으로 사회 구성원을 징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 다시 말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징벌적 배상이 재발 방지의 고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는 재발 방지이다. 어떻게 민사 책임을 결정하는데 징벌의 의미는 재발 방지를 고려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그렇다면 실제 언론 사건의 판결에서 위자료 산정의 요소로 들어 왔던 것들은 무엇인가.

언론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 보통은 세세한 계산 근거를 밝히면서 위자료 액수의 산출 근거를 밝히지는 않는다. 대체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 결과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적정하다는 식으로 금액을 정한다. 위자료를 정하는 데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허위 사실이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비방

의 정도를 아울러 고려한다)

② 전체 신문에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방영 부분이 전체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1면 머리 기사였는지, 지방소식면 구석 기사였는지, 방송 첫 뉴스였는지, 뉴스 말미 보도였는지 등, 사진 혹은 영상의 크기와 제목, 소재목의 크기와 앵커의 소개 화면의 길이, 몇 단 기사였는지, 영상이 전체 뉴스에서 차지하는 시간 비중 등도 모두 고려한다)

③ 언론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자본 규모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 중앙지 혹은 지방지, 지상파 혹은 케이블 방송, 인쇄 부수, 인터넷 언론일 경우 광고 매출 수익에 따른 비중과 회원 수 등)

④ 원고의 사회적 지위(원고가 언론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고려)

⑤ 유포의 정도(배포 혹은 방송 지역, 일간지, 주간지, 계간지 여부, 방영 시간대, 사이트의 인지도, 판매 부수, 시청률 등)

⑥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어느 정도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직접 인터뷰를 하였는지 등)

⑦ 보도 후 정황(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했는지, 판매 대기 중이던 신문을 수거하였는지 등)

언론 사건은 매우 다양하다. 당사자와 언론사가 다양하고, 보도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 역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그 수가 많아 이 글에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논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제30조 제2항).

현재 우리법원은 원칙적인 인과관계법리를
적용하고 있어 언론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어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에 따라 요소마다 매겨지는 가중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요소 하나하나에 점수를 주기가 곤란하다.

억압의 대상이던 언론이 사회의 주도적인 지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위자료 액수가 높아졌던 것처럼 요소요소마다 정해지는 위자료의 수액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에 도식화된 위자료 산출은 어렵기도 하거나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꾸준히 언론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앞서 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시대의 요청에 따라 그 감(感)을 잡아가는 수밖에 없다.

6. 언론 사건과 재산상 손해

언론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주로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언론 사건에서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로 언론 보도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매출이 감소하였다거나, 신용 추락으로 금융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 이들 손해와 언론 보도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언론 보도 외에도 영업과 수익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관대한 반면, 대륙법계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역시 기존의 인과관계 이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영업 매출 감소와 그 정도, 신용 추락에 따른 금융 위기 도래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려면 언론 보도 외에 다른 요소들은 위협 초래에 기여

한 바가 없다는 점까지 아울러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언론 사건에서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의료, 환경, 제조물책임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손해 증명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필요만으로 기존 법 이론의 틀을 깰 수는 없다. 의료, 환경, 제조물책임의 영역과는 달리 언론 사건은 물질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영업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는 보도 외에도 경기 침체, 계절의 변화나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 수없이 많은 현상 변경 요인들이 있다.

관례 역시 언론 사건에서 재산상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비방 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 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한 사례가 있었지만(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1, 40621 판결 [공1996상. 1486]), 이는 기업간의 광고 전쟁에 관한 판단으로 엄밀히 언론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연비 향상 장치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 훼손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방송 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연비 향상 및 매연 절감 장치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기업이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 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우리 법원이 언론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인 인과관계 법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제언

(1) 이상 언론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의미에 관하여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해 보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바뀌게 된다. 법 시행 전에는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해서만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에 부수하여 정정보도청구를 다룰 수 있을 뿐이었다. 또한 이름은 '중재'였지만 '조정' 기능만 수행하였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는 언론 사건에 관한 모든 분야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소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정식으로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의 절차라는 약점이 있지만,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쌓아온 업무 성과와 신뢰를 생각하면 빠르고 정확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여전히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을 두드릴 것이다.

(2)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룰 언론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조정과 중재에도 역시 위자료 산정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빠른 분쟁 해결과 사건의 확대를 조기에 막기 위한 의도 때문에 언론사가 먼저 예상되는 위자료보다 큰 금액을 조정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손해배상 액수는 법원이 그 동안 유사 사건에서 인정해 온 액수보다는 적을 것이다. 조정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중재 역시 까다로운 법과 이론의 적용보다는 유연한 중재안 도출에 주안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이 재판 때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언론사는 언론중재(조정 혹은 중재)를 선호하고,

피해자들은 언론중재를 기피할 것인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주로 손해배상보다 신속한 명예의 회복에 뜻을 둔 피해자들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보도로 신속한 명예 회복을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정정보도가 주된 목적인 피해자에게는 손상된 감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손해배상만으로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분쟁 해결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여 언론사와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언론사 측에서 손해배상은 하지 않고 장차 피해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겠다는 이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절차에 임할 것이다.

조정과 중재의 보기가 당사자들의 설득에 있으므로, 복잡한 법리에 얽매이지 말고 이해와 설득에 기초하여 정정보도의 유무 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손해배상액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다 유연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이 따르는 정식의 절차. 그리고 엄격한 인과관계에 관한 법 이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상 피해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 액수가 커지는 것만은 아니다. 언론사 역시 어떤 보도로 피해자의 사업에 악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정정할 부분은 정정한 다음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할 때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에 "위자료와 재산상 피해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분쟁 해결을 상대방에게 알려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

위원회는 복잡한 법리에 얽매이지 말고
이해와 설득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도출하도록 해야

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손해배상을 다룰 때 누가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언론사와 취재 기자, 편집인은 법률상 분명히 별개의 주체라는 점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보도의 실질적인 내용은 보통 취재 기자가 작성한다. 따라서 1차로는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편집인 등 보도책임자 역시 기자와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사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에는 기자 개인보다는 손해배상의 집행이 용이한(deep pocket) 언론사를 주된 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수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배상 신청을 하는 때에도 언론사(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조정 혹은 중재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경향이나 사용자책임의 법리, 그리고 한

사건이나 주제에 관하여 부서별 역할 분담에 따라 여러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를 편집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언론사가 1차 책임을 지는 쪽으로 입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주관할 때, 가능하면 보도 작성에 직접 참여한 기자나 편집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정 혹은 중재를 할 때 조정이나 중재 성립으로 언론사는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다고 그 효과가 기자 개인에게까지 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 분쟁을 막으려면 기자 등 개인 책임 면제에 관한 조정 혹은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5) 언론중재위원회가 앞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하는 중심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리라 믿는다. □

명예훼손의 법문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I. 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감에 따라 점점 중요한 법문제가 되고 있다. 약 10년 전에 본인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불법행위법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면의 하나일 것”이고, 그와 관련된 위법성(민법 제750조)의 판단이 어려운 예로 “정신적인 인격적 법익이 특히 언론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¹⁾

“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고 나아가 타인의 사상이나 행동, 나아가서는 인격 자체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은 민주사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의사형성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을 표어적으로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알 권리’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령 언론이 어느 공직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비난을 가하는 것은 과연 위법한가. 여기서 그 공직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 등의 영향을 받아, 소위 공적 인물(public figures)의 프라이버시는 통상의 시민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오히려 강력하며, 나아가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일 이러한 경우 쉽사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면 언론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자유가 간접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입론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불법행위법은 위법성판단의 이를 아래 소재로는 헌법적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창 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 글은 최근의 재판실부가 이 문제를 어떠한 준칙에 의하여 처리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요즈음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대법원이 ‘보수적’인가 하는 논의와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 서울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박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논문: 「사생활 비밀의 보호 - 사실적 측면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최근 중요 민사판례 동향, 191-123

1)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본질과 가능성”, 동, 민법연구 제3권(1965), 332면 이하 참조 (원래는 민사판례연구 15집(1993,4) 소재).

이상의 법문제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판단을 보이는 하급심의 재판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법원의 재판례, 그 중에서도 1990대 이후의 재판례에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그 '흐름'이라는 것을 개관하려면 무엇보다 大判 88.10.11. 85다카29(集 36-3. 1)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II. 1980년대 말까지의 학설과 판례

1. 大判 88.10.11. 이전의 학설

명예의 위법한 침해가 불법행위가 됨은 민법 자체가 명문으로 인정하는 바이다(제751조 제1항("타인의 ... 명예를 해한 ... 자"), 제764조("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 또 명예훼손이 언론보도 기타 대중매체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는 없을 것이고, 이는 특히 언론과 출판 등의 자유를 정하는 헌법 제21조가 그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 ...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을 명문으로 정하는 것에 비추어서도 명백하다.

그러나 어떠한 요건 아래서 명예훼손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민법 시행 초기의 대표적인 교과서는 이에 대하여, "명예나 신용의 침해가 어떠한 경우에 위법성을 띠느냐는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침해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말해서, 진실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약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면 위법성이 강하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계가 깊은 것은 위법성이 약하고 순전히 사사에 관한 것은 위법성이 강하다. ... 이상과 같이 명예훼손의 위법성의 유무는 여러 가지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면 대중요법적으로 설명한다.²⁾ 이 설명은 진실성과 공공성³⁾ 등을 판단항목으로 하면서도 이를 위법성의 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강약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는 점⁴⁾이 주목된다.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그 때까지의 대법원판결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인 결론, 즉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만을 제시할 뿐이다.⁵⁾

2. 大判 88.10.11. 85다카29(集 36-3. 1)의 기준

대법원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의 판시이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가공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 지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9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0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衡量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2) 김증한·안이준 편저, 채권각론(하)(1965), 775면 이하. 이 설명은 예를 들면 권윤직, 채권각론, 재정정판(1984), 656면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그 설명의 원형이라고 추측되는 加藤 一郎, 불법행위(1957), 127면 이하도 참조.

3) 그 외에 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위법성의 강약에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

4) 이는 기본적으로 김증한·안이준의 위 편저서(주 2)가 의존하고 있는 我妻榮이 불법행위상의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전개하는 소위 상관관계이론 및 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 후의 일본학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5) 大判 80.2.26. 79다2138등(集 28-1, 112); 大判 88.6.14. 87다카1450(集 36-2, 34) 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大判 88.10.11.의 의미

위 대법원판결은 언론보도 기타 대중매체로 인한 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 사안에는, 외부의 필자가 투고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추궁되었다거나 가해매체가 일간 신문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전자매체보다는 보도의 신속성이 덜 요구되는 월간잡지라는 등의 특징이 있는데,⁶⁾ 이 판결의 판단내용은 사실 그 사안에 직접 대응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2.에서 본 판시부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언론보도 기타 대중매체로 인한 명예훼손도 적어도 추상적 요건으로는 다른 방식의 명예훼손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됨을 전제로 한다.⁷⁾

둘째,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명예훼손로 인

한 불법행위는 적어도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는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⁸⁾

셋째, 명예훼손이 있으면⁹⁾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이 조각된다는 논리구조로 판단된다. 마치 생명이나 소유권의 침해에서와 같이 구성요건으로서의 명예훼손 자체가 위법성을 추단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判 98.5.8. 97다34563(공보 상, 1575)이 명언하는 대로, 위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는 것이다.

넷째, 위법성의 조각을 위하여는 공공성과 진실성의 두 요건이 충족될 것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 전자는 다시 그 적시된 사실 등이¹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요한다. 그러나 여기서 「오로지」란 뒤의 III.2.에서 보는 대로 그 실제의 적용에서는 엄격하게 관철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섯째, 아마도 위 판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실성의 요건에 관하여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 증거가 없더라도”라고 하는 것은 「허위임이 밝

6) 이러한 사안의 특징에 대하여는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인 이은영, “명예훼손책임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공성”, 민사판례연구 12집(1990), 153면도 지적하고 있다.

7) 미국에서는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신문사 기타 언론매체에 적용할 때에는 언론자유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를 별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전개되었다(뒤의 III.4.(1)도 참조). 이에 대하여는 우선 방석호, “명예훼손 민책사유로서의 진실성과 신문사의 주의의무”, 민사판례연구 19집(1998), 256면 이하 참조.

8) 大判 93.6.22. 92도3160(공보 하, 2188); 大判 94.8.26. 94도237(공보 하, 2572) 등 명예훼손죄에 대한 재판례도 같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9) 말하자면 「구성요건」으로서의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大判 97.10.28. 96다38032(공보 하, 3625)이, 비록 원심판결의 판시를 시인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기준적이다. 즉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10) 뒤의 III.5.에서 보는 대로 우리 실무는 사실의 적시와 평가의 주장을 반드시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양자의 명확한 구별을 전제로 각각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독일의 이론(의견 또는 평가에 대한 留止請求權 또는 부작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우선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d.2/2, 13.Aufl.(1994), § 88 (S.708ff.) 참조.

혀진 경우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해자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진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것이다.

책이 없다는 것이라면, 유지청구의 허부는 별개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공성의 요건에 대하여

III. 大判 88. 10. 11. 이후의 재판례의 전개

그 후의 실무는 대체로 위의 大判 88.10.11에서 선언된 법리에 좇아 전개되었다.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문제

재판례 중에는 大判 95.6.16. 94다35718(공보 하. 2496): 大判 98.2.27. 97다19038(공보 상. 865)와 같이 “진실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유책성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류는 위의 大判 88.10.11에서와 같이 여전히 위법성의 문제로 다룬다.¹¹⁾

이는 단순히 법률구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출판물의 배포금지 등의 금지청구권¹²⁾과 관련하여 의미가 적지 않다. 즉 만일 피고가 적시하는 사실 등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으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위와 같은 유지청구는 당연히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법하기는 하나 행위자에게 과

한편 공공성의 요건(“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대하여는 완화의 경향이 뚜렷하다. 예를 들면 大判 96.10.11. 95다36329(공보 하. 3297)은,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그]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시를 앞세우면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이 사건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인기를 끌고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견유판호 안은 인용자가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¹³⁾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11) 일단 1960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만을 보아도 大判 96.1.12. 93다40614등(集 44-1, 323): 大判 96.5.28. 94다33828(공보 하. 1973): 大判 96.8.20. 94다29928(공보 하. 2776): 大判 96.10.11. 95다36329(공보 하. 3297) 등 일일이 들 필요도 없다.

12) 유지하는 대로 大判 96.1.12. 93다40614등(集 44-1, 323)은, 위법한 지방광고가 행하여졌고 앞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미 위의 大判 88.10.11도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이나 공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관시한 바 있다.

13) 이는 형사재판례 중에서도 예를 들면 大判 89.2.14. 88도899(공보 145)가 “가령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의 소행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관한 판단기준이다.

(1) 이에 대한 전형적인 판시는 大判 98.5.8. 96다36395(공보 상, 1572)에서 보는 대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1] 기사의 성격, [2] 정보원의 신빙성, [3] 사실 확인의 용이성, [4]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설시이다.¹⁴⁾

물론 이와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정항목의 열거는 구체적 사건의 판단에서 개별적 법률요건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성」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의 심리와 당사자의 주장·입증의 방향 및 내용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 그리하여 우선 보도내용의 성격, 특히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인가가 문제된 예로 위의 大判 88.10.11(“일정한 입장에 있는 인물에 관한 행위가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 大判 96.5.28. 91다33828(공보 하, 1973)(“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大判 98.5.8. 96다36395(공보 상, 1572)(유명 연예인의 유흥업체에서의 접대에 대한 수사기록에 근거한 일간신문 보도)(“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기사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다) 등이 있다.

(3) 나아가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 또는 정보원의 신빙성이 문제된 예로 위의 大判 96.5.28(“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 더 진위 여부를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위의 大判 98.5.8(“기자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피의자 甲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이고, 그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위 甲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¹⁵⁾ 등이 있다.

14) 또 大判 97.9.30. 97다24207(공보 하, 3279)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여 위와 대동소이한 기준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비교적 최근의 大判 2001.1.19. 2000다10208(공보 상, 497)도 마찬가지이다.

15) 이 판결은 그러한 보도가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그에게 주는 타격의 질이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도 요구한다.

그 외에 사실이 적시된 프로그램의 성격을 문제 삼은 예로 大判 98.5.8. 97다34563(공보 상, 1575)(“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 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등이 있다.

4. 일정한 사안유형에서의 개별적 범위 - 특히 「공적 인물」의 경우

그런데 대법원은 일정한 사안유형에서 상당성 판단과 관련된 말하자면 개별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과 진실성의 관점에서 정하여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공무원과 같은 소위 공직 인물(public figure)에 대하여는 보다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1) 大判 97.9.30. 97다24207(공보 하, 3279)은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

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大判 98.5.8. 97다34563(공보 상, 1575)은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1964)가 판시한 법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만일 언론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언론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언론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검열」을 행할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공적 이유에 대한 논의는 거침이 없으며 대담하고 공공연하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중대한 국가적 공약」과 조화되지 않는다”(p. 260)고 하여, 그러므로 원고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와 아울러 피고 언론사가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면서 또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사려하게 그 점을 무시하면서 (with knowledge of its falsity or in reckless disregard of the truth)」 그 기사를 작성·게재하였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¹⁶⁾¹⁷⁾

16) 이에 대하여는 우선 양창수(주 5), 510면 주 32; 방석호(주 7), 256면 이하 참조.

17) 그런데 大判 98.7.24. 96다12789(공 하, 2200)은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보안사)이 그 워패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간인에 대한 사찰활동을 한 사안에 대하여, “공적 인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어 그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들은 통상인에 비하여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하여는 「공적 인물」이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또한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괴의사실이 공표되고 또 보도됨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국가 및 신문사의 책임이 문제된 大判 98.7.11. 96다17257(공 하, 2108)에서도 “원고가 평범한 시민으로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범죄에 대하여는 알아야 할 상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괴의자의 신원을 명시하고 초상을 보여주면서 한 보도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그런데 憲裁 99.6.21. 97헌마265(憲集 11-1, 768)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문제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에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무엇보다도 언론보도로 인한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의 판단을 사인의 명예훼손에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드물게도 뒤의 IV.1.에서 보는 중요한 大判 2002.1.22. 2000다37521(공보 상, 522)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뒤의 IV.2에서 보는 대로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데 보다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근자에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실무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5.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리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얼핏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의 적시와 가치평가 또는 의견제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⁸⁾

(1) 위의 大判 88.10.11은 “피고 발행의 월간잡지에 게재된 甲의 수기는 원고가 수행한 소송과 관련하여 그가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수기는 그 내용과 기술방법으로 보아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의 표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그 수기의 게재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의도로서 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진실성이 결여된 점은 위 수기의 제목 및 표현내용과 분면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바”라고 설시하는데, 이는 「평가」에 해당되는 진술이 공공성을 갖추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다만 그것이 「인신공격의 표현」에 해당하면 공공성이 부정되어 결국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단정할 수는 없다.

18) 반문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정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 반문보도청구의 제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평가에는 그 권리를 부여한다. 大判 2000.2.25. 99다12810(공보 상, 806)도 이를 전제로 한다.

(2) 이 문제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논의된 것은 大判 99.2.9. 98다31356(集 47-1, 37)에 이르러서인 것으로 보인다.¹⁹⁾ 이 판결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분하여 논하면서, 전자에 대하여는 위의 大判 88.10.11.의 법리 기타 지금까지 살펴 온 바를 반복하고, 특히 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즉 이와 같이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묵시적으로라도 전제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소위 「순수의견」)에는, 의견이나 논평은, 그것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이 점이 위 판결의 요체 중의 하나이다.

(3) 그리하여 大判 2000.7.28. 99다6203(공보 하, 1925)(“원고가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수사 등이 거론되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풍자만화를 기고하여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 경우, 원고가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 등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大判 2001.1.19. 2000다10208(공보 상, 197)(“게임이 불법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 등은, 이러한 순수의견임을 이유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의견 등이 일정한 사실을 전제하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

19) 그러한 의미에서 그 많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사건 중에서 이 판결이 “대법원판례집”에 수록되었다는 사실도 심상하게 볼 것은 아니다.

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⁰⁾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의견이나 논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는 범위는 애초 혹 상정되었던 것보다는 넓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IV. 최근의 중요한 동향

1. 大判 2002.1.22.에 대하여

(1) 大判 2002.1.22. 2000다37524(공보 상, 522)는 대법원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大判 88.10.11 이후로 발전시켜 획득한 법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아예 “일반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2) …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 기준을 채택하였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파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쉬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3)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4)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은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

20) 이는 - 앞의 주 9에서 본 大判 97.10.28. 96다38032(공보 하, 3625)이 이미 밝힌 바 있는 -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읽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의견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관별에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태도이다.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종전의 명예훼손 대 언론자유라는 단순한 대립도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세분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정면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그 중에서도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공격은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방송프로그램이 행한 역사해석을 주사파라고 평한 잡지기사에 대하여 그 편집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大判 2002.12.24, 2000다14613(공보 2003상, 425)에서는, 위의 大判 2002.1.22의 판시 중 위 (4) 부분(“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보도)이 인용되고 있다. 이제 앞의 Ⅲ.4.(1)에서 말한 바와 같은, 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관하여 「그에 특유한 법리」의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²¹⁾

(2) 이어서 나온 大判 2003.1.24, 2000다37647(공보 상, 688)은 대법원이 민주화에 따르는 사회의 가치의 다양화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앞 (1)의 大判 2002.1.22의 판시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나아가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나**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

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이 판결이 적어도 우리 사회의 성격에 대한 기본 인식에 있어서 대법원이 「좌와 우」의 공존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한 문제일 것이나, 어쨌거나 대법원이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문제」에 관하여 점점 세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

(1) 앞의 Ⅲ.4.(1)에서 본 대로, 大判 97.9.30, 97다24207(공보 하, 3279)이나 大判 98.5.8, 97다34563(공보 상, 1575) 등만을 보아서는 소위 「공적 인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반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의 Ⅲ.4.(2)에서 본 대로 憲裁 99.6.24, 97헌마265(憲集 11-1, 768)는 언론보도로 인한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의 판단을 사인의 명예훼손에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면에서 판시하였다. 그 후 대법원이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 주목되었는데, 앞의 IV.1.(1)에서 본 대로 그 간의 재판실무가 전개해 온 법리를 총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大判 2002.1.22, 2000다37521(공보

21) 앞의 주 17도 참조.

상, 522)에서도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의 「유보」는 오래 가지 못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나오기 4년여가 지난 후 大判 2003.7.8. 2002다61381(공보 하, 1683)은, 전라북도 지사(원고 유종근)의 집에서 현금 3,500만원과 보석류 5점이 도난당하였는데 그 범인이 그 외에 미화 12만불도 훔쳤는데 “이 사실이 축소·은폐”되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 한나라당의 대변인(피고 안택수)이 “핵심실세라는 전북지사가 IMF 사태로 10\$, 20\$를 은행에 내고 있는 시점에서 12만\$를 (현금 3,500만 원 외에) 집에다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정권의 양심의 실상이 어땠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 도덕성이 완전과파된 김대중 정권은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내자, 원고가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이를 파기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임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정을 원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소위 1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정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성명의 발표에 위법성을 설볼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판결에서 물고를 튼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정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준은 그 후에도 大判 2003.7.22. 2002다62494(공보 하, 1770)(국회의원 최병렬이 검사가 편파·보복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 검사가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안); 大判 2003.9.2. 2002다63558(공보 하, 1936)(MBC가 대전지검의 검사들이 소위 대전범조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한 사건), 그리고 최근의 大判 2004.2.27. 2001다53387(공보 상, 394)(MBC가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검사)가 이미 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고 불법구속하였다고 보도한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하여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앞의 (2) 이하에서 본 4개의 대법원 판결이 모두 원심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을 파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록 「공적 인물」 전반에 대한 기준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²²⁾ 공직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경우에 한정하여 위법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V. 결 론

언론·출판의 자유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의 보호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에 속한다. 그렇게 보면 양자가 부득이 하게 충돌하는 경우에, 그 허용의 법적 한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마련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법분제이다. 이

에 대한 그 사이에 나온 재판례의 궤적을 위에서와 같이 추적하여 보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양상과 미묘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언론권력의 남용을 우려하여 보다 넓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 근자에는 역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다시 부각되어,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공적수행의 적절성, 나아가 정치적 평론 등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왔다는 이론적 연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

22) 판례는 大判 2003.9.2. 2002다33558(공보 하, 1936); 大判 2001.2.27. 2001다53387(공보 상, 391) 등에서 보듯이,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¹⁾

정 상 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 개 관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컴퓨터들 사이를 전자통신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통신을 출현시켰고, 이어 컴퓨터 네트워크 상호간을 개방적으로 연결한²⁾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불러지는 인터넷³⁾을 출현시켰다. 나아가 이제는 컴퓨터기술과 무선통신기술이 결합하여 휴대용 컴퓨터나 휴대 전화를 통해서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에 의해 형성된 사이버스페이스⁴⁾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전세계적 규모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출판, 영상

등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쌍방향성, 시간적·공간적 비제약성, 접근 및 전파의 용이성, 탈통제성, 익명성 등에 기반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표현, 무제한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다른 한편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침해,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인간들이 다른 의사소통 공간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익명성과 규제기술의 한계 등은 이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인터넷의 대표적 역기능 중 하나인 명예훼손 등

1) 이 글은 필자가 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원 내 연구모임인 언론법 컴퓨터에서 2004. 12. 1.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약간 변화한 부분을 추가하는 등으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2) 인트라넷(intranet)은 사설 인터넷(private internet)으로 다른 네트워크와 상호개방적이지 아니고, 인트라넷에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통제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터넷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점들은 명예훼손에 있어 인터넷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다.

3)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가 1969년 정전시에도 네트워크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작한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ARPAnet"로 약칭)를 그 시초로 하고, 1980년대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한 NSFnet이 대학 연구기관들과 연결되면서 ARPAnet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기 시작하여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1981년에는 300개 정도의 컴퓨터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90,000개 이상의 컴퓨터로 구성되었고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박용주,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미국의 새로운 경향 및 이론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103집, 법원도서관, 2003. 304면 참조.

4) 공상과학소설가인 William Gibson이 만들어 낸 신조어인데, 인터넷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인간들이 현실세계와 유사한 내용으로 만들어낸 가상공간을 통칭하는 말이다. 박용주, 앞의 논문(주3), 303면 참조.

인격권침해(이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약칭)는 그 배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출판매체나 영상매체에서 발생했던 인격권침해와는 그 침해유형이나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 권리구제의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과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인터넷 언론기관의 책임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안티사이트의 문제 등과 그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논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헌법상 기본권적 측면에서의 접근이지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기하여 사인간의 민사책임에 관련된 논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off line에서 위법한 것은 on line에서도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종래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견해와 새로운 환경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더 많은 통제 및 책임을 요구하는 견해, 새로운 환경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더 많은 자유 및 면책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⁵⁾

일단,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사이버스페이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사이버스페이스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은 다른 의사소통

공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 사상의 자유시장(a marketplace of free ideas) 이론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모든 사람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 사상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marketplace)을 마련하고 언론의 자유를 실현케 함으로써, 정신적 표현의 옳고 그름이 특정한 판단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 속에서 “사유 자체가 지니는 힘(the power of the thought)”의 소장(消長)에 의한다는 이론이다.⁶⁾ 여기서의 시장의 경쟁은 자유로운 토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관념은 전세계 자유주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그 이념적 근거로 들고 있는 이론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하여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매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실시한 바 있다.⁷⁾

그렇지만, 종래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던 사상의 시장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표현자들 사이의 힘의 우열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시장이었고,⁸⁾ 이에 따라 사상의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의 규제장치들을 부과하여 왔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 표현자들 사이의 힘의 우열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 1인 1표가 행사되는 거의 완전해 가까운

5) 박용주, 앞의 논문(주3), 312면 참조.

6) 강경근,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언론중재 2003년 여름호 참조.

7)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180 결정 참조.

8) 사상의 자유시장의 시장실패 원인으로 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 언론의 대기업화와 독과점화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권영성, 신관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489면 참조.

시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문화의 초기 형성기에는 "사이버스페이스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어야 하고 사이버스페이스에 현실의 법이 침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주장이 팽배하였다.⁹⁾ 그러나, 과도한 자유가 질제의 비덕을 빚을 잃게 만들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인터넷의 기능에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인터넷의 역기능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 영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하여 법이 방임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나. 매체특성분석(medium-specific analysis) 이론

이 이론은 일단, 의사소통(Communication) 매체를 인쇄매체(print media : 신문, 서적, 잡지 등),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통신매체(Common Carrier : 전화, 정보, 우편 등)로 구분한 후, 각 매체별 특성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나 정도를 달리 하자는 이론이다.

미국의 판례는 이러한 매체특성분석을 통하여 인쇄매체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더 폭넓은 보호를

받는 반면,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scarcity), 방송의 침투성(invasion, 가정에 대한 침투성, 보편성), 정보수용자의 통제능력의 결여(자녀들에 의한 액세스가 쉽다) 때문에 국가에 의한 규제가 폭넓게 허용되고, 피해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에서 더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¹⁰⁾

전화도 인쇄매체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받고,¹¹⁾ 케이블TV도 채널이 무제한적이고 TV에 비해 침투성이 낮고 자녀들의 액세스를 차단하기 쉽다는 이유로 인쇄매체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¹²⁾고 하였다.¹³⁾

그런데,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인터넷방송은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매체특성분석이론에 중대한 난점을 야기하고 있다.¹⁴⁾ 한편,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는 1 대 다수 형태의 정보전달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인터넷은 전자메일, 메일 리스트(mail list), 인터넷 채팅,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 등을 통하여 1 대 1 또는 1 대 다수의 정보교환, 실시간 정보교환, 원격지 정보에 대한 검색과 전달 등의 형태도 가능하다.¹⁵⁾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은 공중파방송에서의 주파수 제한, 일방적 영향력, 독점적 지위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까지 발견된 매체 중에서 가장 참여적인 형태인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가장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인터넷은 인쇄물에 부여된 표현의 자유와 같거나 보다 강한 표현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9)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3호(2000, 11), 87면은;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쓴 John Perry Barlow, 카피레프트 운동을 제창한 Richard Stoleman을 예로 들고 있다.

10)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 739-740.

11) Sable Communication of California, Inc. v. FCC, 492 U.S. 115 (1989).

12)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v. FCC, 520 U.S. 180 (1997).

13) 김민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법적 분해-수정헌법 제1조와 CDA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1집 2호, 2002, 245면 참조.

14) 이해완, 앞의 논문(주9), 94-95면 참조.

15) 김유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재판자료 96집 : CYBER LAW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2003, 82면 참조.

16) Reno v. ACLU, 521 U.S. 844 (1997).

우리 헌법재판소도 구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불온통신 규제의 대상 중 하나인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고,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공중파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불온통신 규제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¹⁷⁾

매체특성분석이론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체에 대한 규제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아주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 역시 기본적으로는 매체 특성분석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기타 이론

미국에서는 이외에도 공적광장(public forum)의 이론¹⁸⁾, 국가행위론(State Action Doctrine, 국가작용설)¹⁹⁾, Village Green이론²⁰⁾ 등에 관한 논의가 있다.

라. 익명성의 제한에 관한 논의

인터넷은 익명성에 정보전달의 편리함이 결합함으로써, 의사표현의 과정에서 일반대중의 조급하고 사려깊지 못한 표현, 즉 부적절한 비유, 과장된 표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문의 적시, 공격적 발언, 허위 사실의 무제한의 게시를 야기하기도 한다.²¹⁾ 게다가 사이버스페이스는 성도착자, 정신질환자 등이 훨씬 높은 강도로 다른 특징인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익명성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²²⁾ 미국의 몇몇 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터넷상 익명의 의사소통을 규제하거나 익명에 의한 상업적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²³⁾ 우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에 관한 의견표명에 있어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였으나,²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17)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결정.

18)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민배, 앞의 논문(주13), 250-251면 참조.

19)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김영수·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적 기준과 언론권" 미국헌법연구 11호(2000), 한국헌법학회, 180-182면 참조.

20)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민배, 앞의 논문(주13), 251-252면 참조.

21) 나아가, 인터넷의 익명성이 음란물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음란물에 접근하는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를 명예훼손에 제한하고자 한다.

22) 마용주, 앞의 논문(주3), 316면·주18)에 소개된 견해 참조.

23) 이 부분에 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마용주, 앞의 논문(주3), 315-316면 참조. 실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서명인증제도 등에 기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명제가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위 법 제82조의6은 '인터넷언론사 게시관·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관·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은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관·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부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부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1조 제1항은 "제82조의6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인터넷상 익명의 발언자는 통상 자신이 야기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자로서는 익명의 발언자를 밝히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익명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표되는 과정에 기여한 자,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ISP를 통해 익명의 표현행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ISP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익명성은 정보발신자(특히,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²⁶⁾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사건²⁷⁾에서 익명으로 된 정치적 의견 표방을 금지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면서 익명성이란 다수의 폭력(tyranny of majority)으로부터의 방어막인데, 이는 관대하지 못한 사회적 결과에 따라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복을 받거나 또는 이들의 사상이 억압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를 담고 있고, 표현자의 인적사항은 표현 내용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드러내거나 숨기는 것 역시 표현자의 자유라고 판시하였다.²⁸⁾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실명제나 회원제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문에 대한 진실확인을 위한 네티즌들의 노력에 의해 익명에 의한 표현의 해악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인터넷의 독자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제한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마. 적대적 표현의 규제에 관한 논의

인터넷상의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개인, 단체에 대하여 증오 발언이나 헐박 발언을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웹사이트(pro-life website)에 낙태시술 의사들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Nuremberg Files' 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어 손해배상 소송²⁹⁾이 제기되고 위 리스트에 올라 있던 의사가 실제로 저격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³⁰⁾

또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25) Lyrrisa Barnett Lidsky, "Silencing John Doe: Defamation & Discourse in Cyberspace", Duke Law Journal 49권 4호(2000, 2), 855면 참조.
 26) 황찬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 "저스티스 34권 1호(2001, 2), 10면; 이광진, "인터넷 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 8호(2001, 9), 법무부, 71면 등 참조.
 27) 514 U.S. 334, 115 S.Ct. 1511 (1995).
 28) 이 부분에 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이재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권 4호(2000, 겨울): 마용주, 앞의 논문(주3), 310-311면 참조.
 29) Planned Parenthood of the Columbia/Willamette, Inc. v. American Coalition of Life Activities, 200 F. 3rd 1058 (9th Cir. 2002) (en banc).
 30)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유진, 앞의 논문(주15), 129-130면 참조.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적대적 의사를 가진 표현행위(적의적 표현행위)란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 종교적이거나 성적인 차별,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아왔거나 다수가 되지 못한 특정 집단을 괴롭히고 혐오하며 폄하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를 지칭하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의에 의해 초래된 범죄행위의 형을 가중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하였지만,³¹⁾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Holmes 대법관에 의해 정립된 '해악의 긴급한 위협(Imminent Threat of Harm) 이론', '내용에 대한 규제(Content Based Regulation) 이론'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핍박받아 온 집단(outgroups)에 대한 적의적 표현행위를 처벌하고자 한 법률을 위헌이라고³²⁾ 판결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여러 나라들은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회에 해악이 된다거나, 개인과 단체의 존엄권이 파괴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이익보다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등의 인식 하에 적의적 표현활동의 전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³³⁾

바.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³⁴⁾

사이버스페이스 공동체는 사이버에티켓(cyber - etiquette), 또는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자체 내의 규범, 기준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질서를 형성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위반자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자체 규범을 인정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이다.

자체 규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문제 있는 표현물이 게시되는 경우,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론을 게시하거나 항의 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또 다른 수단은 운영자들에 의한 통제이다. 많은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룸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표현이나 토론의 주제를 제한하고 있는데, 운영자들은 게시물들을 살펴 보면서 특정 표현물이 목적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거나 방법을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고, 나아가 일정 기간 이용을 중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접속을 금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수단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방법인데, 가입 전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비로소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표현이 허용되는 형태이다.

3.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책임³⁵⁾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가. 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 명예훼손적 표현정도의 완화 여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접하는 인터넷이용자는 그 발언이 익명성에 바탕을 둔 부책임한 발언일 것

31) Wisconsin v. Mitchell, 508, U.S. 176 (1993)

32) R.A.V. v. St. Paul, 505 U.S. 377 (1992)

33)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조소영, "Cyberspace에서의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관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8집 2권(통권 12호, 2002, 2), 연세법학회, 2002, 249-270면 및 마용주, 앞의 논문(주3), 313-314면 참조.

34)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마용주, 앞의 논문(주3), 330-332면 참조.

35)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2항)",고 규정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사례] 팬클럽 회원 인터넷 비방 사건 1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5. 25. 선고 99가단42644 판결
항소기각 확정

임을 전제로 이를 일정한 여과작업을 거쳐 받아들일 것이므로 인터넷에서의 표현범위를 다른 매체에서보다 조금 더 넓게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고³⁶⁾ 유사한 이유로 누가 보아도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의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³⁷⁾ 인터넷상 게시판을 통한 즉각적인 반론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³⁸⁾ 한편 회원제 게시판과 같은 비공개 게시판³⁹⁾의 경우, 일정한 주제 아래 토론과 논쟁을 할 것을 예상한 것이어서 충분한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⁴⁰⁾

그러나, 실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오프라인에서도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을 그 표현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서 사회적 평가의 저해 여부를 논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또한,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반론권만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해 표현이 적시하는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그에 기초한 평가적 표현에 있어 앞서의 견해들은 논평의 자유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을 참작함이 적절할 것이다.

피고가 PC통신 게시판에 특정 가수에 대한 비난, 모욕의 글을 계속적으로 올리자, 위 가수의 팬클럽 회원인 원고가 그에 대한 경고의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위 게시판에 올렸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글이 위 가수와 관련된 논쟁의 일환에서 게시된 글이라는 점에서 다소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조의 수밖에 없다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표현의 정도가 PC통신을 이용하는 통상의 이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란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PC통신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글의 표현 수준이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통상인이 수인·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 역시 그러한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위자료 인정금액 2,000,000원) 판결을 하였다.

나. 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쌍방향성(interactivity) 때문에 특정인이 인터넷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이 게시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는 그 즉시로 인터넷에 그에 관한 반론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여 그 책임요건을 달리하는 기존의 오프라인 명예훼손법⁴¹⁾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인터넷의 쌍방향적인 매체 특성상 접근성(accessibility) 측면에서 명예훼손적 글에 응답(reply), 반박(counter speech)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모두 공인으로 취급하여 피해자가 사이버

36) 김유진, 앞의 논문(주15), 123면.

37) 마용주, 앞의 논문(주3), 311면 참조.

38)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원 1호(2000. 봄), 29-30면 참조.

39) 그러한 임회 실시와 사후 회원 통제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인 것은 제외.

40)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마용주, 앞의 논문(주3), 311-312면 참조.

41) 주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i.e., 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of falsity)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판결 이래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있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⁴²⁾ 우리나라에서도 공적 인물의 이론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언론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갔다는 점과 이들은 통상 미디어에의 접근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면 피해자 본인이 평소에 인터넷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표현활동을 행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표현으로 인한 해악에 대한 기본적인 구제수단은 대항언론(more speech)⁴³⁾이라는 이유로 면책의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이 있다.⁴⁴⁾

한편, 인터넷 게시판을 공개 게시판과 비공개 게시판으로 나누어,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 관공서 게시판 등 공개 게시판을 사실상 제한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개 게시판을 게시물이 그 목적에 외관상 부합한다면(단,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제외), 비방이나 영업방해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게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만 있다면 일응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⁵⁾

접근용이성이나 반론권에 기한 공익성 확장논의는 미국의 특유한 공적인불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이나 관례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은 아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인터넷에의 접근수단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라는 당사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⁴⁶⁾ 또한,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적 글보다 자신의 글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불확실한 심증과 사실인식에 기초한 논쟁이나, 가해의 태양이 사생활에 밀접한 내용인 경우에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무책임한 게시자에게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이 더욱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다.⁴⁷⁾ 따라서,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그에 기한 반론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효적절한 반론권의 행사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최초로 논쟁을 유발한 장본인으로서 반론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이거나 당해 표현의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논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반론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손해의 확대를 저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시장이 이상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라는 점, 인터넷이 표현촉진적이고 참여적인 매체라는 점, 인터넷을 통하여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42) 이해완, 앞의 논문(주9), 102-103면 및 이재진, 앞의 논문(주28) 참조.

43) 대항언론이론은, 언론의 폐해에 대하여는 또 다른 언론으로 대항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대항언론에 의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명예회복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언론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44) 이해완, 앞의 논문(주9), 102-103면 참조.

45) 마용주, 앞의 논문(주3), 310면 참조.

46) 이재진, 앞의 논문(주28) 참조.

47) 위와 같은 논거들에 관하여는 이인석,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저스티스 67호(2002. 6.), 197-198면 및 그에 인용된 글들 참조.

감안하여 공익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넓게 해석하자는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 결 : 확 정

피고인 갑은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출근길에 시청에 근무하는 상습 교통법규위반자를 목격하여 고발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을이 그의 인적사항을 추측한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글들이 여러 건 게시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형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글이 주로 시청과 관련한 문이나 건의사항 등을 개진하기 위하여 시청이 개설한 공공 사이트에 게시된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고, 행위가 엄격적이라는 등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다소 사용되었지만, 위 글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일반시민들의 교통질서의 확립과 교통안전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사적 목적이나 감정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게시된 글들의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점, 그 표현에서도 비난이나 욕설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게시의 목적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는 명예의 침해 정도와 교통질서와 안전의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후자의 공익성이 전자에 비하여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중요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게재한 위 글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글로 보기 어렵다.

다. 전파자의 책임

인터넷상 명예훼손적 표현은 복제의 용이성으로 순

식간에 인터넷의 수용자들에 의하여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어 전파되거나¹⁶⁾ 이메일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파자는 통상 당해 표현이 명예훼손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일응, 전파자가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인 몇몇에 대하여만 전파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러한 전파는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할 것이지만, 다른 게시판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게시하거나, 다수에게 이메일로 전송한다면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파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초 표현행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글이 독자들에게 의하여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 게시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이므로 최초 표현행위자에게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전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전파자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행위자와 주관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평신의칙상 전파자의 책임은 전파자 자신의 전파행위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한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라면 전파자에 대하여 원래의 표현행위자보다 더 큰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전파자의 책임을 독립한 불법행위책임을 보면서 최초 표현행위자에게 명예훼손에 관련된 전체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당해 표현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

16) 소위 '떠온 글'

적의 진실한 표현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적법한 표현인 경우에는 이를 전파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전파자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고 단순한 일반 전파자에게 진실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입증책임을 전파자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전파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타에 공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보도와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파자는 원래의 표현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진실확인 의무가 있고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파행위가 단순한 전파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적 표현이 추가되는 등 원래의 표현행위와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새로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전파자에 대하여 전파자로서의 책임이 아닌 통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다면, 전파자는 자신이 전파자임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겠다.

라. 온라인의 오프라인화

인터넷의 영향력 확장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표현이 오프라인 언론기관을 통해 공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기관의 진실확인 의무와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전파행위를 넘어 새로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언론기관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도 통상 오프라인 언론기관이 인터넷 언론기관보다 그 신뢰도가 높고 그 표현의 기억도 오래 유지

되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언론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하급심 판결이다.

[사례] 사생아 때문 이혼 사건

- ①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 (원고 일부승소) [언론중재 2000. 봄]
서울고등법원 2001. 5. 31. 선고 2000나11081 판결 (피고 항소기각) : 확정
- ②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84277, 974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31. 선고 11098, 11104 판결 (항소기각) : 확정

방송사의 앵커우먼이었던 원고의 이혼배경을 둘러싸고 구구한 소문이 나돌다가 A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국내 PC통신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근래 이혼한 유명 여성 앵커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상대는 모 방송사 고위 간부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 기자와 피고 스포츠신문사는 원고가 법적 대응 전까지 기사화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1면에 원고의 사진과 함께 위 A의 홈페이지의 사진영상과 소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위 ①사건), 기자들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하면서 피고 기자를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유전자감정에 의하여 전 남편의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기자와 피고 스포츠신문사는 원고의 발언으로 피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별개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위 ②사건). 법원은 위 ①, ②사건에 관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기사의 독자는 원고에 대한 모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혼배경과 관련한 사이버 테러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 헛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원고의 이혼과 관련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공인의 경우 가족관계의 일정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 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인데 원고 의 이혼사유 및 그 배경에 관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혼인 중 출생자가 배우자 아닌 타인의 자녀라는 소문에 관한 내용은 남녀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 의 호기심에 불과하여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 판도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과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의 경우 개인이 홈페이지나 PC통신을 통하여 퍼뜨린 정보는 다른 설득력 있는 정보의 뒷받침이 없으면 머 지 않아 정보로서 가치를 상실한 채 사라져 버리지만, 만일 그 '소문'이 공신력이 있는 언론에 게재되어 퍼진다면, 그 '소문'의 피해는 PC통신의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하여 더욱 확산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 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인터넷 언론기관의 책임

1991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CNN과 Chicago Tribune이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개설한 이래 전세계 적으로 온라인 뉴스매체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3월 중앙일보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각 일간지들 도 자회사 등의 형식으로 온라인 뉴스매체를 만들었고, 현재는 뉴스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온라인 사업들도 부가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 언론을 뒤이어 1999년에는 기존 언론매체를 비판하

고 패러디하는 독립형 인터넷 언론인 '판지일보'가 등장하였고, 2000년에는 본격적인 시사형 종합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뉴스서비스를 시작하였다.⁴⁹⁾

인터넷 신문 외에 인터넷 방송도 등장하였는데 지 상파인 KBS가 1995년 처음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이래 국내 방송사들이 전부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독립 인터넷 방송이 이후 문을 열었다.⁵⁰⁾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단기간에 새로운 영향력 있는 매체로 등장하였고, 특히 '오마이뉴스', '프레이 안'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언론은 대안언론으로서의 위치를 넘어 주요 언론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⁵¹⁾ 현재는 다수의 인터넷 언론이 상호간 또는 기존의 언론매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의 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가. 인터넷 언론의 특징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조직 또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편의상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 언론, 독립형 인터넷 언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 언론은 뉴스의 생산방식에 있어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독립형 인터넷 언론이다.

(1) 신속성과 그로 인한 정확성의 미흡

인터넷 언론은 기존의 언론매체에 비해 신속한 보도에 강점이 있다. 현장의 상황변화를 그때그때 곧바로 반영하여 지속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은 신속성을 위해 충분한 검증과

49) 강경근, 앞의 논문(주6, 주21);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언론중재 23권 2호(2003, 여름호) 등 참조.

50) 이재진, 앞의 논문(주19) 참조.

51) 이재진, 앞의 논문(주19) 참조.

뉴스가치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서 정확성의 결여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인다. 클린턴 성추문에 대한 폭로보도로 유명해진 인터넷사이트인 Drudge Report의 편집장인 Matt Drudge도 자신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80% 정도만이 정확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한다.⁵²⁾

(2) 풍부한 자료 및 검색 기능의 제공과 한계

인터넷 언론은 오프라인 언론처럼 신문의 지면상 제약이나 방송의 시간적 제약이 없고 기사와 사진, 동영상, 오디오 등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해설 및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검색기능, 하이퍼링크, 데이터베이스 연결기능 등을 통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기사의 관련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언론은 독자들에게 필요한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들의 낮은 수익성에 연유하는 재정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취재인력의 부족, 취재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빈곤은 심층취재나 기획기사의 작성을 어렵게 하고 있고, 정보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 다양한 정보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전문성 미흡

인터넷의 쌍방향성으로 인터넷 언론의 수용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언제든지 인터넷 언론에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인터넷 언론은 이들을 뉴스

의 생산에 동참시키고 있고 심지어 뉴스의 대부분이 이러한 시민기자들에 의하여 생산되기도 한다.⁵³⁾ 이들은 일반 기자들처럼 스스로가 발굴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의 인권,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거론하기 힘든 주제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로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의 받지 않은 비전문 시민기자들이 작성한 정보에서는 정확한 사실검증을 거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⁵⁴⁾

(4) 오보로 인한 피해회복의 곤란

오보나 인격권 침해적인 기사가 발생한 경우, 오프라인 언론들은 발행주기에 따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거나 전면배포 전 가관의 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의 확산을 차단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 기사는 누구나 매우 쉽게 복사가 가능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전파되어 정정보도와 같은 수단이 실효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⁵⁵⁾

(5) 다양한 형태의 존재

인터넷 언론은 현재 종합형 시사 인터넷 언론만이 아닌 기존 오프라인 언론의 패러디를 추구하는 언론, 가족신문, 각종의 단체에서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웹진(Webzine)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상존하고 있다.

(6) 영향력의 증대와 지속적인 변화

52) 장하용,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23권 1호(2003, 봄호) 참조.

53)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는 이들을 뉴스 개릴라라고 부르며 이들에 의해 기사의 90%가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위 시민기자에 의한 작성된 기사의 개세는 독립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재진, 앞의 논문(주50); 장경근, 앞의 논문(주46) 등 참조.

54) 황용석, “이슈지향적, 정보원 다양화, 미디어 워터 구실 : 시사형 인터넷 언론의 특성”, 신문과 방송 2003년 2월호 참조.

55) 이 때문에 오보나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으로 하여금 화면의 한쪽에 정정 및 반론을 위한 고정코너를 설치하여 접속자들이 정정된 내용과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장하용, 앞의 논문(주52) 참조.

현재 인터넷 언론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언론매체의 대안적인 언론으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나름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사실상 그 영향력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⁵⁶⁾ 나아가, 이제는 인터넷 언론에서 오프라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을 점점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터넷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언론 역시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인터넷 언론의 규율에 관한 논의

인터넷 언론은 영향력 있는 언론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자통신망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공적 책임이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종래 인터넷 언론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으로서 규율되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규율되어 왔다.⁵⁷⁾ 인터넷 언론이 이처럼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규율됨으로써 언론기관으로서의 법률상, 사실상의 특권⁵⁸⁾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격

권침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제도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앞서 본 기존 언론과 구별되는 인터넷 언론의 다양한 특징은 그 규율의 방향을 어렵게 하였으나, 인터넷 언론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노력이 진행된 결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 1. 1.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5. 1. 27. 공포됨으로써 2005. 7. 28.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정기간행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는바,⁵⁹⁾ 이는 앞서 본 매체특성분석이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인터넷 언론의 책임

앞서 본 대로 인터넷 언론의 경우 오프라인 언론에 비해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만, 종래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법령이 없었다. 인터넷 언론은 쌍방향적 매체라는 특성상 오프라인

56) 2003. 10. 21.자 시사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디어리서치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2003년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조사한 결과 오마이뉴스가 전체 언론매체 중 6위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57) 다만, 문화관광부는 2002. 2. 9. 오마이뉴스에 대하여 법률상의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그간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급속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고, 대법원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의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참조).

58) 여러 형태의 세계해택이나 기자들의 무료교육,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이나 유사기관에서 언론에 제공하는 대학원 진학이나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 같은 특혜, 정부기관의 브리핑물 출입 등 유력한 취재원예의 접근, 선거관련 후보자토론회 개최(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마10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

59) 위 법률은 종래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규율을 기본틀로 유지하면서도 편집의 자유와 독립(제3조),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제4조), 독자의 권익보호(제8조), 등록(제12조), 설각사유 등(제13조), 필요적 게재사항(제19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및 직권등록취소와 관련 절차(제21조 내지 제25조),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제27조 내지 제36조) 등에 관련된 조문들에서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언론과는 달리 보도공간을 통상 편집권을 행사하는 공간과 행사하지 않는 공간⁶⁰⁾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접근이용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편집권을 행사하는 공간과 행사하지 않는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편집권을 행사하는 공간에서의 책임

인터넷 언론이 편집권을 행사하는 보도공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책임에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책임 등을 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언론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인터넷 언론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언론에 비하여 그 보도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 오프라인 언론과의 영향력 차이, 재정적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종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법에는 인터넷 언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적용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⁶¹⁾ 법률개정시 인터넷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2005. 1. 1.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 1. 27. 공포됨으로써 2005. 7. 28.부터 시행될 예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앞서의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함과 아울러 인터넷 신문⁶²⁾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⁶³⁾ 또한, 위 법률은 종래의 반론

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이외에 간이한 요건과 절차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이 시행되면, 인터넷 신문에 의하여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민법상의 피해회복수단 이외에도 위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장래 정정보도의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어떠한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현출시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책임

인터넷 언론이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간(자유게시판, 독자의견란 등)에 있어서는 명예훼손 등 인격권침해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독자가 자유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인터넷 언론기관이 이를 방치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인터넷 언론이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이 외형상 실질상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시장소와 열람기회를 제공한 인터넷 언론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동일하게 그 책임을 논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언론기관은 이에 관하여 면책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해서도 뒤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논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60) 오마이뉴스는 '생나무'라는 공간을 두어 생나무는 편집부가 정식기사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서 생나무목록을 누르면 볼 수 있음과 생나무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가자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61)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등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62) 인터넷 방송이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장래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다.

63) 제2조 제1호는 "언론이라 함은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도 중재신청처리 등 주요 업무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4년도 한 해 동안 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인 총 759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하여 사건처리건수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합의율 37.3%(283건), 취하율 33.6%(255건), 중재결정률 8.9%(68건), 중재불성립결정률 18.5%(140건)를 기록했다. 합의율은 전년에 이어 30% 후반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상 처음으로 30% 초반대로 하락함으로써 2년 연속 취하율보다 합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사전조정을 통한 취하보다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재위원회가 중재결정권 행사를 통해 언론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중재결정률이 전년의 41%(30건)에 비해 18%p 증가한 8.9%(68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66.1%로 나타나 2000년 이후 5년 연속 6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04년 한 해 동안 113개 매체의 보도내용을 심의, 283건의 심의기준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2004년 4월 1일 위원회 내에 설치된 민간언론포해상담센터에서는 출범 후 12월까지 9개월 동안 총 1,816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언론사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1. 중재처리결과현황

중재처리결과는 합의 283건(37.3%), 중재결정 68건(8.9%), 중재불성립결정 140건(18.5%), 기각 13건(1.7%), 취하 255건(33.6%)으로 나타났다.

중재신청사건의 청구사건별 신청건수는 신청사건 총 759건 중 반론보도청구 301건(39.7%), 정정보도청구 414건(54.5%), 추후보도청구 44건(5.8%)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론보도청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와 2002년의 경우 정정보도청구가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각각 2배와 1.5배 많았던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선호경향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신청사건의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은 합의가 96.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중재결정 70.6%, 중재불성립결정 8.6%, 취하 58.0%로 전체 피해구제보도율은 63.8%를 기록했다.

피해구제보도율을 각각의 청구사건별로 살펴보면, 반론보도청구가 61.5%(194건), 정정보도청구가 61.1%(253건), 추후보도청구가 81.8%(36건)로 나타났다.

청구사건별 합의율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이 41.5%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36.9%보다 4.6% 높게 나타났다. 또 청구별 취하율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이 29.3%로 정정보도청구사건 31.4% 보다 낮았다.

한편, 취하 후 피해구제보도율은 반론보도청구 사건이 48.9%, 정정보도청구사건이 57.7%로 예년과 달리 정정보도청구사건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재결정은 총 68건으로 전년도의 30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청구권별로는 반론보도청구가 29건, 정정보도청구가 38건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론보도청구보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중재결정권 행사가 더 많았다.

중재부별로는 서울이 63건, 지방이 5건으로 여전히 서울중재부에서 중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의 경우 전년도 27건에 비해 약 2.3배 증가한 것이지만 지방은 2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중재결정사건 68건 중 22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고, 이의신청된 반론보도청구사건 중 3건이 법원에 제소되었으며 3건 모두 인용되었다.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중재신청인의 유형으로는 개인신청사건이 265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이 190건(25.0%),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이 98건(12.9%), 조합·협회가 신청한 사건이 69건(9.1%), 일반단체가 신청한 사건이 31건(4.5%), 공공단체가 신청한 사건이 30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일반단체가 신청한 사건이 37건(5.3%p) 감소한 반면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이 27건(3.1%p),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이 26건(2.3%p) 증가하였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가가 56건(21.1%)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부 33건(12.5%), 회사원 29건(10.9%), 국회의원 22건(8.3%),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이 각각 19건(7.2%), 군인/경찰 13건(4.9%), 교육자 11건(4.2%) 등의 순이었다. 주부가 신청한 사건은 전년도의 6건(2.4%)에서 27건(10.1%p)이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뒤를 이어 문화예술인이 14건(5.2%p).

국회의원이 10건(3.1%p)씩 증가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전년도에는 2002년에 비해 14.6%p가 증가한 53건(21.5%)이었으나 2004년에는 14.1%p가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중재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율은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이 75.8%,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61.9%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57.6%로 전년 대비 11.1%p가 증가하였으나, 조합 및 협회가 신청한 사건의 경우는 57.9%로 25.4%p 감소하였다.

한편, 신청인이 주장한 언론침해의 유형으로는 명예훼손이 718건(9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신용훼손이 39건(5.1%), 기타 2건(0.3%)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의 경우 전년도 보다 1.8%p가 감소한 반면 신용훼손은 3.7%p 증가했다.

III.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의 유형별로 중재신청사건을 분류해 보면 신문매체 552건(72.7%), 방송매체 176건(23.2%), 잡지매체 19건(2.5%), 통신 10건(1.3%), 기타 2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신문매체를 상대로 한 신청사건이 가장 많았다.

각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사건 324건(42.7%), TV 155건(20.4%), 지방일간지 125건(16.5%), 주간신문 103건(13.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방일간지는 전년도 172건(23.8%)에 비해 17건(7.3%p) 감소한 반면 주간신문은 43건(5.3%p)이 증가했다.

또, 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비율은 2002년에는 0.3%p, 2003년에는 0.8%p 각각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04년에 들어서는 1.8%p로 상당 폭의 증가를 보였다. 방송매체 내에서는 TV가 차지하는 비율이 88.1%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각각의 피해구제보도율은 중앙일간지가 72.5%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일간지의 피해구제보도율은 68.8%로 전년대비 5.4%p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간신문의 피해구제보도율은 62.1%로 전년 대비 11.2%p 감소하였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율을 살펴보면, 신문매체 69.7%, 잡지매체 57.9%, 통신매체 70.0%, 방송매체 45.5%로 각각 나타났다.

Ⅳ. 중재대상기사 현황

중재대상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 등 사회관련 기사가 356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관련 기사 223건(29.4%), 경제관련 기사 90건(11.9%), 문화관련 기사 20건(2.6%), 종교관련 기사 14건(1.8%), 의료·건강관련 기사의 경우 12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사회관련 기사는 12건(3.9%p), 의료·건강관련 기사는 11건(1.6%p)이 감소한 반면 정치관련 기사가 35건(3.4%p), 경제관련 기사가 18건(2.0%p) 증가했다.

중재대상기사의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294건(61.1%)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전년도 425건(85.3%)에 비해서는 21.2%p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해설이 69건(15.0%)으로 전년도 1건(0.8%)에 비해 14.2%p의 비교적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 외 논단 및 칼럼 31건(6.8%), 심층조사기사 30건(6.6%)으로 각각 전년도의 23건(4.6%), 13건(2.6%)보다 소폭 증가했다.

방송의 경우에는 뉴스·해설 프로그램이 전년도 89건(66.9%)보다 39건(5.8%p) 증가한 128건(72.7%),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전년도의 21건(15.8%)보다 8건(0.7%p) 증가한 29건(16.5%)이었다. 그러나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11건(6.3%)으로 전년도보다 8건(8.7%p) 감소하였다.

기사의 취재원으로는 민원 및 제보에 의한 기사가 365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도자료 발표가 156건(20.6%),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123건(16.2%), 민·형사 사건 기록이 88건(11.6%)

등으로 나타났다.

Ⅴ. 중재부별 처리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는 서울의 5개 중재부가 558건(73.5%), 지방 10개 중재부가 201건(26.5%)을 처리하여 서울중재부에서 처리한 사건이 지방보다 2.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41건(5.4%), 광주중재부 32건(4.2%), 부산중재부와 전북중재부가 각각 27건(3.6%), 경남중재부 20건(2.6%), 대구중재부 17건(2.2%), 대전중재부 15건(2.0%), 강원중재부 13건(1.7%) 순으로 신청건수가 많았다.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율은 서울중재부 358건(64.2%), 지방중재부 126건(6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Ⅵ.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 현황

반론보도청구사건 중 법원제소건수는 총 12건으로 중재불성립결정된 반론보도청구사건 52건 중 9건, 중재결정 후 이의신청된 반론보도청구사건 9건 중 3건이 각각 법원에 제소되었다.

법원제소결과 총 12건 중 6건이 인용판결을 받았고 기각된 사건이 3건 그리고 취하된 사건이 1건이며 나머지 2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 시정권고 현황 ◇

2004년에는 일간지 92종, 주간지 8종, 주간신문 5종, 월간지 6종, 뉴스통신 2종 등 총 113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283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표기사가 114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 공표기사가 68건(24.0%)으로 뒤

를 이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표기사는 지난해의 41건(17.3%)에 비해 73건(23.0%p)이 증가한 반면,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 공표기사는 101건(40.6%p)이 감소,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 외에 항정신성의약품 용량·용법·효능 공표기사가 52건(18.4%)으로 전년도 대비 32건(10.0%p)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 및 타살 관련 상제기사가 29건(10.2%)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는 2004년에 처음 등장한 유형이다.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I. 상담처리결과 현황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총 1,816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다.

상담신청유형은 전화상담이 1,346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실시간상담 177건(9.7%), 방문상담 176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실시간상담 177건(9.7%), 인터넷 게시판 상담 77건(4.2%), 이메일상담 15건(0.8%) 등 총 269건(14.7%)으로 나타났다.

상담신청의 유형은 중재신청 관련 상담이 1,151건(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소송제기 등의 법적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533건(25.7%), 타기관 안내 183건(8.8%), 상담종결 103건(5.0%), 재상담 예정 91건(4.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상담건수 1,816건 중 중재신청으로 이어진 사건은 318건(17.5%)으로 법원 소송제기방법 안내 등을 제외한 순수 중재신청 관련 상담 1,151건 중 실제로 중재신청이 이뤄진 건수는 318건(27.6%)이다. 이는 중재신청에 관한 상담 3~4건 중 1건 정도가 중재신청접수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989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훼손이 152건(8.1%), 초상권 등 침해가 87건(4.8%),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45건(2.5%), 사생활 침해 11건(0.6%)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매체 826건(42.9%), 방송매체 565건(29.4%), 인터넷 103건(5.4%), 잡지매체 51건(2.7%), 통신 33건(1.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문매체 내에서는 일간신문이 641건(7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잡지매체 내에서는 월간지가 35건(68.6%)으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교육 현황

2004년 한 해 동안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총 44건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을 상대로 한 교육이 21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론사 12건(27.3%), 사기업 5건(11.4%), 공단 및 공기업 3건(6.8%), 시민단체 2건(4.5%) 순이었다. □

◇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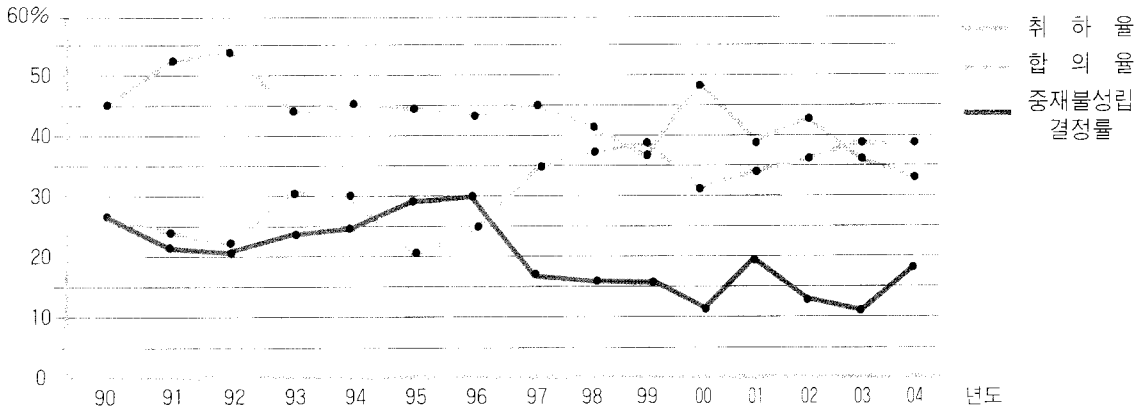
1. 중재신청처리현황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안은 %

| 구 분 | 처 리 결 과 | | | | | |
|------|---------------|-------------|---------------|-------------|------------|---------------|
| | 합 의 | 중재결정 | 중재불성립 결정 | 기 각 | 각 하 | 취 하 |
| 신청건수 | 283 (37.3) | 68 (8.9) | 110 (18.5) | 13 (1.7) | 0 (0.0) | 255 (33.6) |

1990년 이후 합의율·취하율·중재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안은 %

| 구 분 | 처리 건수 | 피 해 구 제 보 도 내 용 | | | | | | | | | | | |
|-------------|----------|-----------------|------------|--------|--------|-----------------|-----------------|--------|--------|-----------------|-----------------|------------------|---------------|
| | | 보도 건수 | 보도율 (%) | 반 보 | 문 보 | 반문 및 사과보도 | 반문 및 PR보도 | 정 보 | 정 보 | 정정 및 사과보도 | 정정 및 반문보도 | 추 후 보 도 | P R 보 도 |
| 합의 | 283 | 276 | (97.5) | 201 | | 2 | 51 | 3 | 6 | | 4 | 2 | 1 |
| 중재결정 | 68 | 18 | (26.6) | 39 | | 1 | 2 | 6 | | | | | |
| 중재불성립 결정 | 110 | 12 | (8.6) | 8 | | | | 1 | | 1 | 2 | | |
| 기각 | 13 | 0 | 0 | | | | | | | | | | |
| 각하 | 0 | 0 | 0 | | | | | | | | | | |
| 취하 | 255 | 148 | (58.0) | 65 | | 2 | 30 | 4 | 1 | | 29 | 15 | 2 |
| 계 | 759 | 484 | (63.8) | 316 | 1 | 6 | 88 | 7 | 8 | | 35 | 17 | 6 |

중재신청사건청구별 처리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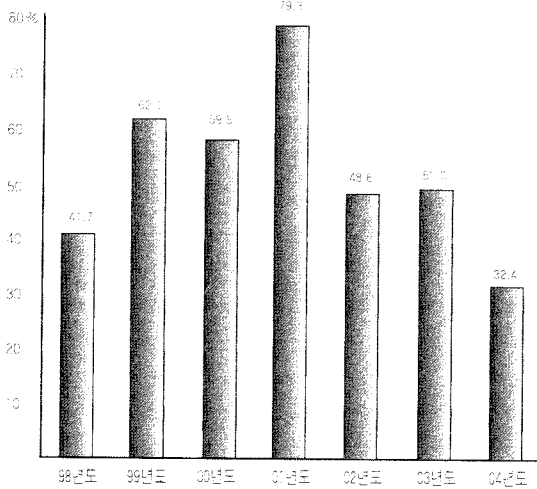
| 처리결과 청구명 | 신청 건수 | 합의 | 중재결정 | 중재불성립 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반론보도청구 | 301 | 125 (41.5) | 29 (9.6) | 52 (17.3) | 7 (2.3) | | 88 (29.3) |
| 정정보도청구 | 111 | 153 (36.9) | 38 (9.2) | 87 (21.0) | 6 (1.5) | | 130 (31.4) |
| 추후보도청구 | 41 | 5 (11.4) | 1 (2.3) | 1 (2.3) | | | 37 (81.0) |
| 계 | 759 | 283 (37.3) | 68 (8.9) | 140 (18.5) | 13 (1.7) | 0 (0) | 255 (33.6) |

중재신청사건청구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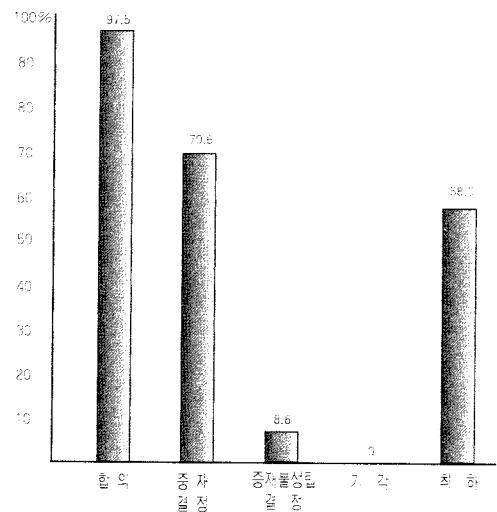
(단위: %)

| 청구명 | 신청 건수 | 피해구제 보도건수 (보도율) | 피해구제보도내용 | | | | | | | | | |
|--------|----------|-----------------------|----------|-----------------|-----------------|----------|-----------------|-----------------|----------|----------|----|---|
| | | | 반론 보도 | 반론 및 사과보도 | 반론 및 PR보도 | 정정 보도 | 정정 및 사과보도 | 정정 및 반론보도 | 추후 보도 | PR 보도 | 기타 | |
| 반론보도청구 | 301 | 191 (63.5) | 176 | 1 | 2 | 7 | 1 | | | 5 | 2 | |
| 정정보도청구 | 114 | 251 (61.4) | 140 | | 1 | 80 | 6 | 8 | | 1 | 11 | 1 |
| 추후보도청구 | 41 | 36 (81.8) | | | | 1 | | | | 31 | 1 | |
| 계 | 759 | 481 (63.8) | 316 | 1 | 6 | 88 | 7 | 8 | | 35 | 17 | 6 |

중재결정 이의신청률 추이



중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신청인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단위: 명)

| 신청인 유형 | 구분 | 신청 건수 | 침해 유형 | | | 처리 결과 | | | | | |
|-----------------|----|---------------|--------------|-------------|------------|---------------|-------------|---------------|-------------|----------|---------------|
| | | | 명예 훼손 | 신용 훼손 | 기타 | 합의 | 중재 결정 | 중재 불성립 결정 | 가각 | 각하 | 취하 |
| 개 인 | | 265 (34.9) | 265 | | | 88 | 16 | 45 | 3 | | 113 |
| 국가기관 | | 190 (25.0) | 190 | | | 87 | 27 | 32 | 7 | | 37 |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 | 33 (4.3) | 32 | | 1 | 11 | 1 | 5 | | | 13 |
| 공공단체 | | 30 (3.9) | 30 | | | 7 | 3 | 7 | | | 13 |
| 정 당 | | 3 (0.4) | 3 | | | 1 | 1 | | | | 1 |
| 의료기관 | | 2 (0.3) | 2 | | | 2 | | | | | |
| 조합 및 협회 | | 69 (9.1) | 68 | | 1 | 25 | 1 | 15 | 2 | | 23 |
| 일반단체 | | 34 (4.5) | 34 | | | 16 | 3 | 4 | 1 | | 10 |
| 종교단체 | | 11 (1.5) | 11 | | | 6 | 1 | 3 | | | 1 |
| 기업체 | | 98 (12.9) | 59 | 39 | | 30 | 6 | 21 | | | 41 |
| 언론사 | | 15 (1.9) | 15 | | | 4 | 1 | 7 | | | 3 |
| 금융기관 | | 1 (0.1) | 1 | | | 1 | | | | | |
| 교육기관 | | 8 (1.0) | 8 | | | 5 | 2 | 1 | | | |
| 계 | | 759 (94.6) | 718 (7.1) | 39 (5.1) | 2 (0.3) | 283 (37.3) | 68 (8.9) | 140 (18.5) | 13 (1.7) | 0 (0) | 255 (33.6) |

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단위: 명)

| 신청인 유형 | 구분 | 신청 건수 | 보도 건수 (보도율) | 반론 보도 | 반론 및 사과보도 | 반론 및 PR보도 | 징정 보도 | 징정 및 사과보도 | 징정 및 반론보도 | 추후 보도 | P R 보도 | 기 타 |
|-----------------|-----|------------|-------------|-------|-----------|-----------|-------|-----------|-----------|-------|--------|-----|
| | | | | | | | | | | | | |
| 국가기관 | 190 | 144 (75.8) | 115 | | 2 | 17 | 3 | 4 | | | 1 | 2 |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 33 | 19 (57.6) | 12 | | | 3 | | | | | 1 | |
| 공공단체 | 30 | 17 (56.7) | 14 | | | 3 | | | | | | |
| 정 당 | 3 | 3 (100) | 1 | | | 2 | | | | | | |
| 의료기관 | 2 | 2 (100) | 1 | | | 1 | | | | | | |
| 조합 및 협회 | 69 | 40 (57.9) | 27 | | | 9 | | | | | 2 | 2 |
| 일반단체 | 34 | 20 (58.8) | 14 | | | 5 | | 1 | | | | |
| 종교단체 | 11 | 7 (63.6) | 6 | | | 1 | | | | | | |
| 기업체 | 98 | 55 (56.1) | 29 | | 1 | 15 | | | | | 7 | |
| 언론사 | 15 | 6 (40) | 3 | | | 2 | | | 1 | | | |
| 금융기관 | 1 | 1 (100) | 1 | | | | | | | | | |
| 교육기관 | 8 | 6 (75.0) | 5 | | | | | 1 | | | | |
| 계 | 759 | 484 (63.8) | 316 | 1 | 6 | 88 | 7 | 8 | 35 | 17 | 6 | |

신청인(개인의 경우) 직업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단위: %

| 신청인 직업 | 신청 건수 | 침해유형 | | | 처리결과 | | | | | |
|----------------|----------------|----------------|------------|------------|--------------|-------------|--------------|------------|------------|---------------|
| | | 명예훼손 | 신용훼손 | 기타 | 합의 | 중재결정 | 중재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국회의원 | 22 (8.3) | 22 | | | 6 | 3 | 8 | | | 5 |
| 법조인 | 1 (0.1) | 1 | | | | | 1 | | | |
| 공무원 | 19 (7.2) | 19 | | | 7 | 2 | 9 | | | 1 |
| 교원/강사 | 13 (4.9) | 13 | | | 9 | | | 1 | | 3 |
| 기초·광역단체장/의원 | 6 (2.3) | 6 | | | 2 | | 2 | | | 2 |
| 상당성지인 | 5 (1.9) | 5 | | | 2 | | | | | 3 |
| 의료인 | 3 (1.1) | 3 | | | 1 | | 1 | | | 1 |
| 문화예술인 | 19 (7.2) | 19 | | | 2 | | | | | 17 |
| 종교인 | 1 (1.5) | 1 | | | 2 | | 1 | | | 1 |
| 회사원 | 29 (10.9) | 29 | | | 7 | 2 | 3 | 1 | | 16 |
| 인플루언서 | 7 (2.6) | 7 | | | 2 | 1 | 3 | | | 1 |
| 교육자 | 11 (4.2) | 11 | | | 5 | | 1 | | | 5 |
| 개인사업자 | 56 (21.1) | 56 | | | 11 | 3 | 7 | | | 35 |
| 제1차산업종사자 | 5 (1.9) | 5 | | | 2 | | | | | 3 |
| 연예인 | 3 (1.1) | 3 | | | 2 | | 1 | | | |
| 학생 | 1 (1.5) | 1 | | | 2 | | | | | 2 |
| 시민활동가 | 2 (0.8) | 2 | | | 1 | | | | | 1 |
| 공공기관장/중립대표위원이상 | 6 (2.3) | 6 | | | 3 | | 1 | | | 2 |
| 주부 | 33 (12.5) | 33 | | | 16 | 3 | 3 | | | 11 |
| 무직 | 1 (0.1) | 1 | | | 1 | | | | | |
| 기타 | 16 (6.0) | 16 | | | 5 | 2 | 4 | 1 | | 1 |
| 계 | 265 (100.0) | 265 (100.0) | 0 (0.0) | 6 (0.0) | 88 (33.2) | 16 (6.0) | 15 (17.0) | 3 (0.1) | 0 (0.0) | 113 (4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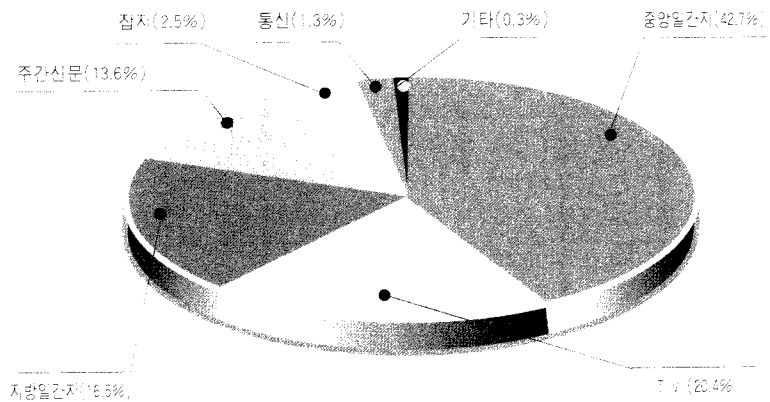
III.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단위: %)

| 매체유형 | 처리결과 | 신청 건수 | 중재 결정 | | | | |
|------|-------|----------|---------------|--------------|---------------|-------------|---------------|
| | | | 합의 | 불성립 결정 | 각각 하위 | 이하 | |
| 신문 | 중앙일간지 | 321 | 135 (41.7) | 39 (12.0) | 48 (14.8) | 9 (2.8) | 93 (28.7) |
| | 지방일간지 | 125 | 47 (37.6) | 3 (2.4) | 21 (16.8) | | 54 (43.2) |
| 신문 | 주간신문 | 103 | 46 (44.7) | 7 (6.8) | 20 (19.4) | | 30 (29.1) |
| | TV | 155 | 38 (24.5) | 16 (10.3) | 40 (25.8) | 4 (2.6) | 57 (36.8) |
| 방송 | 라디오 | 6 | 3 (50.0) | | 1 (16.7) | | 2 (33.3) |
| | CATV | 15 | 6 (40.0) | | 3 (20.0) | | 6 (40.0) |
| | 잡지 | 19 | 5 (26.3) | 3 (15.8) | 6 (31.6) | | 5 (26.3) |
| | 통신 | 10 | 2 (20.0) | | 1 (10.0) | | 7 (70.0) |
| | 기타 | 2 | 1 (50.0) | | | | 1 (50.0) |
| | 계 | 759 | 283 (37.3) | 68 (8.9) | 110 (18.5) | 13 (1.7) | 255 (33.6) |

매체별 중재신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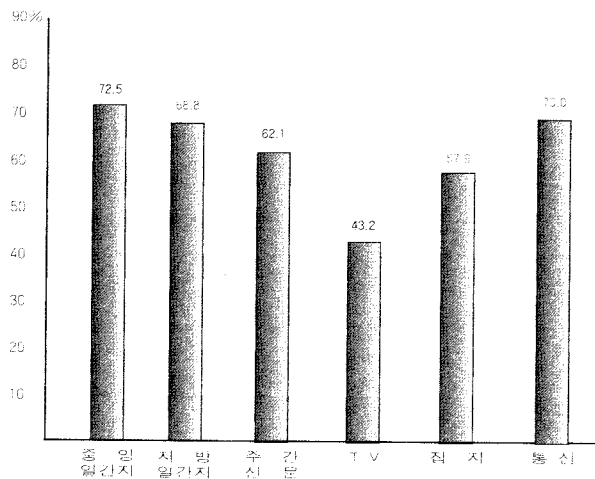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단위: %)

| 매체유형 | 구분 | 신청건수 | 보도건수 (보도율) | 피해구제보도내용 | | | | | | | | |
|--------|-------|-----------|---------------|----------|--------------|--------------|----------|--------------|--------------|----------|-----------|----|
| | | | | 반론 보도 | 반론 및 사과보도 | 반론 및 PR보도 | 정정 보도 | 정정 및 사과보도 | 정정 및 반론보도 | 추후 보도 | P R 보도 | 기타 |
| 신 분 | 중앙일간지 | 324 | 235 (72.5) | 171 | | 2 | 31 | 2 | 4 | 12 | 10 | 3 |
| | 지방일간지 | 125 | 86 (68.8) | 46 | | | 21 | 2 | 2 | 9 | 3 | |
| | 주간신문 | 103 | 64 (62.1) | 41 | | | 19 | | 2 | 1 | 1 | |
| 방 송 | TV | 155 | 67 (43.2) | 40 | 1 | 4 | 8 | 1 | | 7 | 3 | 3 |
| | 라디오 | 6 | 4 (66.7) | 4 | | | | | | | | |
| | CATV | 15 | 9 (60.0) | 5 | | | 2 | | | 2 | | |
| 잡 지 | 19 | 11 (57.9) | 7 | | | 2 | 2 | | | | | |
| 동 신 | 10 | 7 (70.0) | 2 | | | 1 | | | 4 | | | |
| 기 타 | 2 | 1 (50.0) | | | | 1 | | | | | | |
| 계 | | 759 | 484 (63.8) | 316 | 1 | 6 | 88 | 7 | 8 | 35 | 17 | 6 |

매체별 피해구제보도율 비교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 대체유형 | 구분 대체명 | 신청 건수 | 침해유형 | | | 처리결과 | | | | | | |
|---------------------------------|-----------|----------|----------|----------|----|------|----------|----------|---------|--------|--------|--------|
| | | | 명예 훼손 | 신용 훼손 | 기타 | 합의 | 중재 결정 | 중불성 결 | 재립 정 | 가 각 | 하 취 | 하 취 |
| | | | | | | | | | | | | |
| 중앙 일간 지 | 경향신문 | 17 | 17 | | | 10 | 3 | 1 | | | | 3 |
| | 국민일보 | 6 | 16 | | | 9 | 2 | 3 | | | | 2 |
| | 내일신문 | 4 | 1 | | | 2 | | 2 | | | | |
| | 동아일보 | 11 | 39 | 2 | | 14 | 4 | 12 | 1 | | | 10 |
| | 문화일보 | 27 | 25 | 2 | | 12 | 3 | 3 | 2 | | | 7 |
| | 서울신문 | 11 | 11 | | | 5 | | 2 | | | | 4 |
| | 세계일보 | 14 | 11 | | | 6 | 2 | 1 | | | | 5 |
| | 조선일보 | 38 | 37 | 1 | | 11 | 10 | 4 | 3 | | | 7 |
| | 중앙일보 | 27 | 25 | 2 | | 7 | 4 | 3 | 1 | | | 12 |
| | 한겨레 | 23 | 21 | 2 | | 9 | | 3 | | | | 11 |
| | 한국일보 | 32 | 32 | | | 15 | 4 | 5 | 1 | | | 7 |
| | 소계 | 250 | 241 | 9 | 0 | 103 | 32 | 39 | 8 | 0 | | 68 |
| 서울 부산 대구 지방 일간 지 | 시민일보 | 3 | 3 | | | 1 | 1 | 1 | | | | |
| | 국제신문 | 6 | 6 | | | 1 | | | | | | 5 |
| | 부산일보 | 6 | 6 | | | | | | | | | 6 |
| | 경북대일 | 1 | 1 | | | | | | | | | 1 |
| | 경북일보 | 1 | 1 | | | | | | | | | 1 |
| | 대구신문 | 2 | 2 | | | 1 | | | | | | 1 |
| | 대구일보 | 1 | 1 | | | 1 | | | | | | |
| | 대일신문 | 1 | 1 | | | | | | | | | 1 |
| | 영남일보 | 1 | 1 | | | | | | | | | 1 |
| | 모닝뉴스 | 2 | 2 | | | 1 | | | | | | 1 |
| | 한동일보 | 1 | 1 | | | | | | | | | 1 |
| | 경북뉴스 | 1 | 1 | | | | | | | | | 1 |
| 광주 전주 지방 일간 지 | 광남일보 | 2 | 2 | | | | | 1 | | | | 1 |
| | 광주대일 | 1 | 1 | | | | | | | | | 1 |
| | 광주일보 | 2 | 2 | | | | | 1 | | | | 1 |
| | 광주타임스 | 2 | 2 | | | | | 1 | | | | 1 |
| | 대한일보 | 1 | 1 | | | 1 | | | | | | |
| | 부동일보 | 1 | 1 | | | | | | | | | 1 |
| | 전남대일 | 2 | 2 | | | 2 | | | | | | 2 |
| | 전남일보 | 4 | 4 | | | | | 1 | | | | 1 |
| | 호남대일 | 1 | 1 | | | | | 1 | | | | |
| | 호남일보 | 4 | 4 | | | 1 | | 2 | | | | 1 |
| | 중도일보 | 5 | 5 | | | 1 | | | | | | 1 |
| | 대전·경기 | 경기도민일보 | 1 | 1 | | | 1 | | | | | |
| 경기대일 | | 2 | 2 | | | 2 | | | | | | |
| 경기일보 | | 3 | 3 | | | 1 | | | | | | 2 |

2004년도 중재신청처리 등 주요 업무 처리현황

| 대체 유형 | 구분 대체명 | 신청 건수 | 진해 유형 | | | | 처리 결과 | | | | | | | | |
|--|-------------|----------|-------------|-------------|--------|--------|------------------|-----------------------|-------------|--------|--------|--------|--|----|---|
| | | | 명 해 손 | 신 용 손 | 기 타 | 합 의 | 중 재 결 정 | 중 불 성 결 정 | 재 립 정 | 기 각 | 각 하 | 취 하 | | | |
| 인 건 기 재 방 인 소 시 제 주 정 제 스 포 즈 지 수 원 간 지 | 경인 대일 | 1 | 1 | | | | | | | | | | | | 1 |
| | 경인 일보 | 7 | 7 | | | | 1 | | | 1 | | | | | 2 |
| | 도민 일보 | 2 | 2 | | | | 1 | | | 1 | | | | | |
| | 경호 일보 | 1 | 1 | | | | | | | | | | | | 1 |
| | 서울 일보 | 1 | 1 | | | | 1 | | | | | | | | |
| | 수도권 일보 | 2 | 2 | | | | 1 | | | | | | | | 1 |
| | 인천 일보 | 2 | 2 | | | | 2 | | | | | | | | |
| | 충부 일보 | 1 | 1 | | | | 2 | | | | | | | | 2 |
| | 전국 대일 | 1 | 1 | | | | 1 | | | | | | | | |
| | 상원 강원 일보 | 3 | 3 | | | | | | | 1 | | | | | 2 |
| | 대일 전보 | 1 | 1 | | | | | | | | | | | | 1 |
| | 재석복신문 | 8 | 8 | | | | 3 | | | 5 | | | | | |
| | 산라 일보 | 3 | 3 | | | | 1 | 1 | | 1 | | | | | |
| | 조선 일보 | 1 | 1 | | | | 1 | | | | | | | | |
| | 전보 일보 | 5 | 5 | | | | 3 | 1 | | | | | | | 1 |
| 신보중앙신문 | 4 | 4 | | | | 3 | | | 1 | | | | | | |
| 전주 대일 | 1 | 1 | | | | | | | 1 | | | | | | |
| 경남도민일보 | 1 | 1 | | | | 1 | | | | | | | | | |
| 경남 대일 | 1 | 1 | | | | 1 | | | | | | | | | |
| 경남신문 | 6 | 6 | | | | 1 | | | 2 | | | | | 3 | |
| 경상 일보 | 1 | 1 | | | | | | | | | | | | 1 | |
| 울산 대일 | 3 | 3 | | | | 1 | | | | | | | | 2 | |
| 새해 일보 | 2 | 2 | | | | 1 | | | | | | | | 1 | |
| 제주 일보 | 1 | 1 | | | | | | | | | | | | 1 | |
| 소 계 | 122 | 122 | 0 | 0 | | 15 | 3 | | 21 | 0 | | 0 | | 53 | |
| 정 제 소 스 포 즈 지 수 원 간 지 | 대일 경제 | 15 | 15 | | | | 2 | 2 | | 4 | | | | | 7 |
| | 머니투데이 | 2 | 2 | | | | | | 1 | | | | | | 1 |
| | 서울 경제 | 9 | 8 | 1 | | | 6 | | | 1 | 1 | | | | 1 |
| | 코리아경제 | 10 | 9 | 1 | | | 6 | | | 1 | | | | | 3 |
| | 한국 경제 | 10 | 10 | | | | 5 | 1 | | 4 | | | | | 3 |
| | 해럴드 경제 | 15 | 11 | 4 | | | 8 | 2 | | 2 | | | | | 3 |
| 소 계 | 61 | 58 | 3 | 0 | | 27 | 6 | | 9 | 1 | | 0 | | 18 | |
| 스 포 즈 지 수 원 간 지 | g o o g l e | 2 | 2 | | | | 1 | 1 | | | | | | | |
| | 스포츠서울 | 1 | 1 | | | | | | | | | | | | 1 |
| | 스포츠조선 | 2 | 1 | 1 | | | 1 | | | | | | | | 1 |
| | 스포츠부활 | 1 | 1 | | | | | | | | | | | | 1 |
| | 일간스포츠 | 2 | 2 | | | | 1 | | | | | | | | 1 |
| 소 계 | 8 | 7 | 1 | 0 | | 3 | 1 | | 0 | 0 | | 0 | | 1 | |
| 수 원 간 지 | 동민 전보 | 2 | 2 | | | | 1 | | | | | | | | 1 |
| | 경제일보 | 1 | 0 | 1 | | | | | | | | | | | 1 |

| 매체 유형 | 구분 | 매체명 | 신청 건수 | 침해 유형 | | | 처리 결과 | | | | | |
|---------------|------------------|-----------|----------|---------|---------|--------|--------|------------------|---------------------------------|--------|--------|--------|
| | | | | 명 훼손 | 신 훼손 | 기 타 | 합 의 | 중 재 결 정 | 중 재 결 정 불 성 결 | 기 각 | 삭 하 | 취 하 |
| 특수 일간지 | 환경일보 | 1 | 1 | | | | | | | | 1 | |
| | 부여일보 | 1 | 1 | | | | 1 | | | | | |
| | A M 7 | 1 | 1 | | | | | | | | 1 | |
| | 진리이해협회 소 계 | 7 | 6 | 1 | 0 | 3 | 0 | 0 | 0 | 0 | 4 | |
| 중앙 방송 | KBS-1TV | 49 | 43 | 6 | | 10 | 5 | 16 | 2 | | 16 | |
| | KBS-2TV | 5 | 4 | 1 | | | | 1 | | | 4 | |
| | MBC-TV | 49 | 41 | 5 | | 11 | 7 | 12 | 2 | | 17 | |
| | SBS-TV | 27 | 21 | 6 | | 13 | 3 | 4 | | | 7 | |
| | EBS-TV | 2 | 2 | | | 2 | | | | | | |
| | CBS-R | 3 | 3 | | | 1 | | 1 | | | 1 | |
| | 소 계 | 135 | 117 | 18 | 0 | 37 | 15 | 34 | 4 | 0 | 45 | |
| | 지 방 방 송 | 광주KBS-1TV | 2 | 2 | | | | | 1 | | | 1 |
| | | 충천KBS-1TV | 1 | 1 | | | | | | | | 1 |
| | | 장원KBS-1TV | 3 | 3 | | | | | 3 | | | |
| 제주KBS-1TV | | 1 | 1 | | | | | | | | 1 | |
| 삼천MBC-TV | | 2 | 2 | | | | | | | | 2 | |
| 원주MBC-TV | | 1 | 1 | | | | | | | | 1 | |
| 춘천MBC-TV | | 1 | 1 | | | 1 | | | | | | |
| 청주MBC-TV | | 1 | 1 | | | | | | | | 1 | |
| 대구MBC-TV | | 1 | 1 | | | | | | | | 1 | |
| 부산MBC-TV | | 2 | 1 | | 1 | | | | | | 2 | |
| 울산MBC-TV | | 1 | 1 | | | | | | | | 1 | |
| 제주MBC-TV | | 1 | 1 | | | | | 1 | | | | |
| 여수MBC-R | | 1 | 1 | | | | | 1 | | | | |
| 부산CBS-R | | 1 | 1 | | | | | | | | 1 | |
| 지역 민방 송 | | 진남CBS-R | 2 | 2 | | | 2 | | | | | |
| | 소 계 | 21 | 20 | 0 | 1 | 3 | 0 | 6 | 0 | 0 | 12 | |
| | PSB-TV | 5 | 5 | | | 1 | 1 | 1 | | | 2 | |
| | 소 계 | 5 | 5 | 0 | 0 | 1 | 1 | 1 | 0 | 0 | 2 | |
| | 불교TV | 1 | 1 | | | | | 1 | | | | |
| 케이블 TV | 한국경제TV | 1 | 1 | | | 1 | | | | | | |
| | YBN-TV | 1 | 1 | | | | | | | | 1 | |
| | Y T N | 12 | 8 | 1 | | 5 | | 2 | | | 5 | |
| | 소 계 | 15 | 11 | 1 | 0 | 6 | 0 | 3 | 0 | 0 | 6 | |
| | 통 신 | 뉴스스 | 1 | 1 | | | | | | | 1 | |
| 주간지 | 연합뉴스 | 9 | 8 | 1 | | 2 | | 1 | | | 6 | |
| | 소 계 | 10 | 9 | 1 | 0 | 2 | 0 | 1 | 0 | 0 | 7 | |
| | 뉴스메이커 | 2 | 2 | | | 2 | | | | | | |
| | 뉴스위클리 | 2 | 2 | | | 1 | | 1 | | | | |

2004년도 중재신청처리 등 주요 업무 처리현황

| 매채유형 | 구분 매채명 | 신청 건수 | 침해유형 | | | 처리결과 | | | | | |
|--------|-----------|----------|---------|--------------|--------|--------|------------------|---------------------------------|--------|--------|--------|
| | | | 명 훼손 | 신 용 훼손 | 기 타 | 합 의 | 중 재 결 정 | 중 재 불 성 립 결 정 | 기 각 | 각 하 | 취 하 |
| 주간지 | 시사저널 | 3 | 3 | | | | 1 | | | | 2 |
| | 주간동아 | 3 | 3 | | | 1 | 1 | 1 | | | |
| | 주간조선 | 1 | 1 | | | 1 | | | | | |
| | 한겨레21 | 3 | 3 | | | 1 | | 1 | | | 1 |
| | 소계 | 11 | 11 | 0 | 0 | 6 | 2 | 3 | 0 | 0 | 3 |
| 시사주간신문 | 일요서울 | 2 | 2 | | | | | | | | 2 |
| | 일요신문 | 1 | 1 | | | | | 1 | | | |
| 지역 | 소계 | 3 | 3 | 0 | 0 | 0 | 0 | 1 | 0 | 0 | 2 |
| | 연수타임스 | 1 | 1 | | | 1 | | | | | |
| | 화순신문 | 1 | 1 | | | 1 | | | | | |
| | 북포투데이 | 1 | 1 | | | | | 1 | | | |
| | 평택신문 | 2 | 2 | | | 2 | | | | | |
| | 진도타임스 | 1 | | | 1 | | | | | | 1 |
| | 김포뉴스 | 1 | 1 | | | | | | | | 1 |
| | 포천타임스 | 1 | 1 | | | 1 | | | | | |
| | 죽림광진뉴스 | 1 | 1 | | | | | | | | 1 |
| | 의정부신문 | 1 | 1 | | | 1 | | | | | |
| | 여주신문 | 3 | 3 | | | | | 2 | | | 1 |
| | 하동신문 | 1 | 1 | | | 1 | | | | | |
| | 보령신문 | 2 | 2 | | | 2 | | | | | |
| | 뉴스서전 | 3 | 3 | | | | | | | | 3 |
| | 신문 | 한산신문 | 1 | 1 | | | | 1 | | | |
| 금산저널 | | 1 | 1 | | | | | | | | 1 |
| 새어수신문 | | 1 | 1 | | | 1 | | | | | |
| 화양신문 | | 1 | 1 | | | 1 | | | | | |
| 양산신문 | | 3 | 3 | | | | | 2 | | | 1 |
| 연기신문 | | 1 | 1 | | | 1 | | | | | |
| 진안신문 | | 2 | 2 | | | 2 | | | | | |
| 포항시당신문 | | 1 | 1 | | | | | | | | 1 |
| 상정광대신문 | | 2 | 2 | | | 2 | | | | | |
| 당진저대 | | 1 | 1 | | | 1 | | | | | |
| 신문 | 남해신문 | 1 | 1 | | | | | 1 | | | |
| | 강원신문 | 3 | 3 | | | 2 | | | | | 1 |
| | 부안동림신문 | 1 | 1 | | | | | | | | 1 |
| | 노원신문 | 1 | 1 | | | 1 | | | | | |
| | 한중일보 | 1 | 1 | | | 1 | | | | | |
| | 상주신문 | 1 | 1 | | | | | | | | 1 |
| | 광명지역신문 | 2 | 2 | | | | 1 | 1 | | | |
| | 문충청리뷰 | 3 | 3 | | | 2 | | | | | 1 |
| | 사하신문 | 2 | 2 | | | 1 | | | | | 1 |

| 대체 유형 | 구분 대체명 | 신청 건수 | 집해 유형 | | | 처리 결과 | | | | | | |
|------------|-----------|----------|----------|----------|----|-------|----------|-----------------|----|----|----|---|
| | | | 병역 혜손 | 신용 혜손 | 기타 | 합의 | 중재 재결 | 중재 불성립 결정 | 기각 | 감하 | 취하 | |
| 지역주관 신청 | 주간외교신청 | 1 | 1 | | | | | | 1 | | | |
| | 분양신청 | 1 | 1 | | | 1 | | | | | | |
| | 소액 | 50 | 19 | 0 | 1 | 25 | 2 | 8 | 0 | 0 | 15 | |
| | 기타타입 | 1 | 1 | | | 1 | | | | | | |
| | 재판제외 | 1 | 1 | | | 1 | | | | | | |
| | 합계 | 3 | 3 | | | 1 | | | | | | 2 |
| 부 | 약장신청 | 1 | 1 | | | | | 1 | | | | |
| | 근로소득공제 | 1 | 1 | | | | | 1 | | | | |
| | 익산회경신청 | 1 | 1 | | | | | | | | | 1 |
| | 한국기동공보 | 1 | 1 | | | 1 | | | | | | |
| | 건설특수 | 1 | 1 | | | | | | | | | 1 |
| | 전기신청 | 2 | 2 | | | | | 1 | | | | 1 |
| 수 | 기타협회 | 1 | 1 | | | 1 | | | | | | |
| | 법보신청 | 2 | 2 | | | 1 | | 1 | | | | |
| | 나이렌탈 | 1 | 1 | | | | | | | | | 1 |
| | 자외선 | 2 | 2 | | | | | 1 | | | | 1 |
| | 경관신청 | 1 | 1 | | | 1 | | | | | | |
| | 대학내외 | 1 | 1 | | | | | | | | | 1 |
| 사 | SJ부대 | 1 | 1 | | | 1 | | 1 | | | | 1 |
| | 한국기동신청 | 1 | 1 | | | | | | | | | |
| | 한국광업신청 | 1 | | 1 | | 1 | | | | | | |
| | 주간교육신청 | 1 | 1 | | | 1 | | | | | | |
| | 기동교신청 | 1 | 1 | | | 1 | | | | | | |
| | 텍스헤럴드 | 1 | 1 | | | 1 | | | | | | |
| 청 | 방법신청 | 2 | 2 | | | 1 | | 1 | | | | |
| | 다타어오출 | 2 | 2 | | | 2 | | | | | | |
| | 중앙경찰신청 | 1 | 1 | | | | | 1 | | | | |
| | 코리아신청 | 1 | 1 | | | | | 1 | | | | |
| | 유단과약 | 1 | | 1 | | | | 1 | | | | |
| | 중공기동신청 | 1 | 1 | | | 1 | | | | | | 1 |
| 위 | 소액 | 37 | 35 | 2 | 0 | 16 | 3 | 8 | 0 | 0 | 10 | |
| | 별종 | 1 | 1 | | | | | 1 | | | | |
| | 역비 | 1 | 1 | | | | | | | | | 1 |
| | 광부 | 1 | 1 | | | | | | | | | 1 |
| | 신공 | 1 | 1 | | | | | 1 | | | | 2 |
| | 신청 | 1 | 1 | | | 1 | | | | | | |
| 자 | 원간 | 2 | 2 | | | 1 | | 1 | | | | |
| | 다타어오출 | 1 | 1 | | | | | 1 | | | | |
| | 한강비대 | 2 | 2 | | | 1 | | | | | | 1 |
| 합계 | 1 | 1 | | | 1 | | | | | | | |

| 매체 유형 | 구분 | 신청 건수 | 침해 유형 | | | | 처리 결과 | | | | | |
|-------|---------|-------|-------|-----|----|-----|-------|---------|----|----|-----|--|
| | | | 병해손 | 신용손 | 기타 | 합의 | 중재결정 | 중재불성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일간지 | 현대 | 1 | 1 | | | | | | 1 | | | |
| | 월간 | 1 | 1 | | | | | 1 | | | | |
| | 대형 | 2 | 2 | | | | | | 2 | | | |
| | 소계 | 18 | 18 | 0 | 0 | 1 | 3 | 6 | 0 | 0 | 5 | |
| 기타 | 역사비평 | 1 | 1 | | | 1 | | | | | | |
| | M부대어 | 1 | 1 | | | | | | | | 1 | |
| | 화랑문화회주보 | 1 | 1 | | | 1 | | | | | | |
| 총계 | 소계 | 3 | 3 | 0 | 0 | 2 | 0 | 0 | 0 | 0 | 1 | |
| | 총계 | 759 | 718 | 39 | 2 | 283 | 68 | 140 | 13 | 0 | 255 | |

Ⅳ. 중재대상 기사 현황

매체유형별 중재대상기사 내용 분류

| 매체 유형 | 구분 | 기사 내용 | 신청 건수 | 정치 행정 | 경제 | 사회 | 과학 환경 | 문화 | 종교 | 의료 건강 | 스포츠 연예 | 노동 인권 | 교육 | 언론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지방지 | | 125 | 29 | 5 | 81 | 1 | 6 | | 1 | 1 | 1 | | | | |
| 경제지 | | 61 | 28 | 25 | 6 | | 2 | | | | | | | | |
| 스포츠지 | | 8 | | 1 | 2 | | | | 1 | 3 | | | | 1 | |
| 방송 | | 8 | 1 | 2 | 2 | | | | | | | | | | |
| 통신 | | 19 | 1 | 2 | 7 | | | | | | | | | | |
| 방송 | 소계 | | 156 | 182 | 71 | 171 | 3 | 13 | 1 | 1 | 1 | 2 | 3 | 5 | 2 |
| | 전국방송 | | 133 | 15 | 6 | 89 | 3 | 3 | | 7 | 1 | | 2 | 2 | |
| | 지역방송 | | 28 | 1 | 1 | 18 | 3 | 2 | | | | | | | |
| | CATV | | 15 | | 1 | 13 | | | | | | | | 1 | |
| 총계 | 소계 | | 176 | 19 | 8 | 129 | 6 | 3 | 6 | 7 | 1 | 0 | 2 | 3 | 3 |
| | 지사종합지 | | 17 | 7 | 3 | 3 | | | 1 | | | 1 | | | |
| 주간지 | 지역생활정보지 | | 19 | 11 | 2 | 33 | | | 2 | | | 1 | | | |
| | 종교지 | | 10 | | | 1 | | 1 | 7 | 1 | | | | | |
| | 교육/인타넷관련지 | | 2 | | | 1 | | | | | | | | | |
| | 경제/산업관련지 | | 13 | | 3 | 9 | | | | | | | | | 1 |
| | 언론관련지 | | 3 | | | | | | | | | | | | 3 |
| | 환경관련지 | | 1 | | | 1 | | | | | | | | | |

| 매체 유형 | 구분 | 기사 내용 | 신 청 건 수 | | | | | | | | | | | | | |
|-------|----------|-------|---------|-----|-----|-------|----|----|-------|--------|-----------|----|----|----|---|---|
| | | | 정치 행정 | 경제 | 사회 | 과학 환경 | 문화 | 종교 | 의료 건강 | 스포츠 연예 | 부고 및 인물동향 | 교육 | 언론 | 기타 | | |
| 주간신문 | 의약간담지 | | 1 | | | 3 | | | | | | | | | | 1 |
| | 법률/상업관련지 | | 3 | | | 3 | | | | | | | | | | |
| | 기타 | | 1 | | | | | 1 | | | | | | | | |
| | 총계 | | 163 | 18 | 10 | 54 | 0 | 2 | 10 | 4 | 0 | 2 | 1 | 1 | 1 | 1 |
| | 지사종합지 | | 8 | 1 | | 1 | | | | | | | | | | |
| 잡지 | 지역생활정보지 | | 1 | | | 1 | | | | | | | | | | |
| | 문화/교육관련지 | | | | | | | | | | | | | | | |
| | 여성지 | | 1 | | | | | | | | | 1 | | | | |
| | 종교지 | | 3 | | | | | | 3 | | | | | | | |
| 지 | 경제/상업관련지 | | 3 | | 1 | 2 | | | | | | | | | | |
| | 기타 | | 3 | | | 2 | | | | | | | | | | 1 |
| | 총계 | | 19 | 1 | 1 | 9 | 0 | 0 | 3 | 0 | 0 | 1 | 0 | 0 | 0 | 1 |
| | 기타 | | 2 | | | 2 | | | | | | | | | | |
| 총계 | | 759 | 221 | 190 | 336 | 0 | 20 | 11 | 12 | 5 | 5 | 6 | 10 | 9 | 9 | |

매체유형별 중재대상 기사의 종류

| 매체 | 구분 | 기사종류 | | | | 신 청 건 수(%) | |
|---------|--------|------|----|----|-----|------------|--------|
| | | 스포츠 | 레이 | 정치 | 기타 | 건수 | 비율 |
| 일간신문·통신 | 해설 | | | | | 291 | (61.1) |
| | 사설 | | | | | 69 | (15.0) |
| | 논단 | | | | | 8 | (1.7) |
| | 칼럼 | | | | | 31 | (6.8) |
| | 가십 | | | | | 3 | (0.7) |
| | 인물·동정 | | | | | 2 | (0.4) |
| | 사설·기자 | | | | | 2 | (0.4) |
| | 심층조사 | | | | | 30 | (6.6) |
| | 특종 | | | | | 1 | (0.2) |
| | 비평 | | | | | 16 | (3.5) |
| | 만화·만평 | | | | | 1 | (0.2) |
| | 사설 | | | | | 2 | (0.4) |
| | 계 | | | | | 159 | |
| 방송 | 뉴스·해설 | | | | | 128 | (72.7) |
| | 시사교류 | | | | | 29 | (16.5) |
| | 교양·생태 | | | | | 11 | (6.3) |
| | 토크프로그램 | | | | | 2 | (1.1) |
| | 오락프로그램 | | | | | 2 | (1.1) |
| | 다큐멘터리 | | | | | 1 | (2.3) |
| 계 | | | | | 176 | | |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안은 %

| 매체유형 | 취재원 계 | 직접인자 취재 | 민원 및 재보 | 민·형사 사건 기록 | 보도자료 발표 | 통신·타언론 매체 | 기 타 |
|---------|----------|---------------|---------------|---------------|---------------|--------------|-------------|
| | | | | | | | |
| 방 송 | 176 | 27 | 103 | 26 | 16 | 1 | 3 |
| 주 권 신 문 | 103 | 21 | 65 | 5 | 7 | | 5 |
| 삼 시 | 19 | 1 | 12 | | 2 | 1 | 3 |
| 기 타 | 2 | | 2 | | | | |
| 계 | 759 | 123 (16.2) | 365 (48.1) | 88 (11.6) | 156 (20.6) | 4 (0.5) | 23 (3.0) |

V.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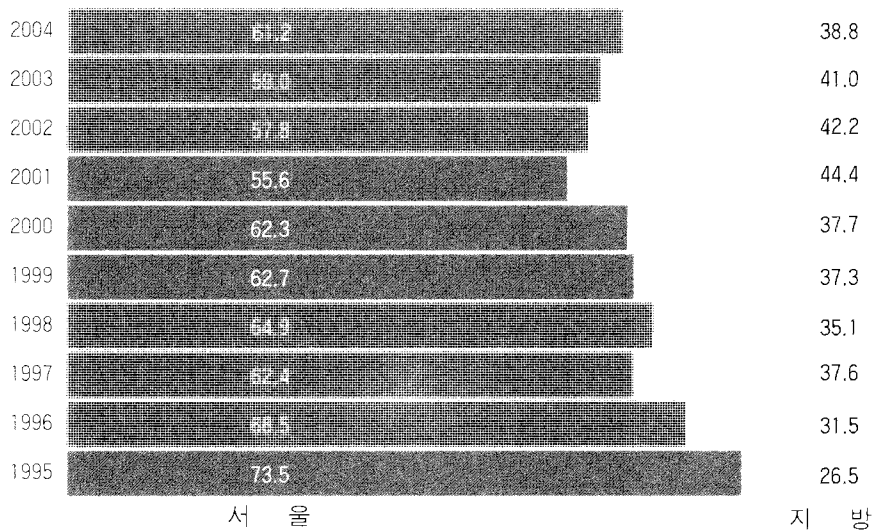
| 중 재 부 | 구 분 신청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비 고 |
|-------|-----------------|---------------|-------------|-------------|---------------|-------------|------------|---------------|-----|
| | | 합 의 | 중 재 결 정 | | 중재 불성립결정 | 기 각 | 각 하 | 취 하 | |
| | | | 동 의 | 이 의 | | | | | |
| 서울중재부 | 558 | 208 | 42 | 21 | 101 | 13 | | 170 | |
| 부산중재부 | 27 | 5 | 1 | | 1 | | | 20 | |
| 대구중재부 | 17 | 3 | | | | | | 14 | |
| 광주중재부 | 32 | 10 | | | 11 | | | 11 | |
| 대전중재부 | 15 | 8 | | | 1 | | | 6 | |
| 경기중재부 | 41 | 23 | | 1 | 5 | | | 12 | |
| 강원중재부 | 13 | 4 | | | 1 | | | 8 | |
| 충북중재부 | 4 | 2 | | | | | | 2 | |
| 전북중재부 | 27 | 14 | 2 | | 8 | | | 3 | |
| 경남중재부 | 20 | 5 | 1 | | 8 | | | 6 | |
| 제주중재부 | 5 | 1 | | | 1 | | | 3 | |
| 계 | 759 | 283 (37.3) | 46 (6.0) | 22 (2.9) | 110 (18.5) | 13 (1.7) | 0 (0.0) | 255 (33.6) | |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단위:안은%)

| 중재부 | 신청 건수 | 보도 건수 | 보도율 | 피해구제내용 | | | | | | | | |
|-------|-------|-------|---------|--------|-----------|-----------|-------|-----------|-----------|-------|-------|----|
| | | | | 반론 보도 | 반론 및 사과보도 | 반론 및 PR보도 | 성정 보도 | 성정 및 사과보도 | 성정 및 반론보도 | 추후 보도 | PR 보도 | 기타 |
| 서울중재부 | 358 | 358 | (61.2) | 244 | 1 | 6 | 55 | 5 | 1 | 24 | 13 | 6 |
| 부산중재부 | 27 | 19 | (70.4) | 19 | | | 1 | | | 3 | 2 | |
| 대구중재부 | 17 | 11 | (64.7) | 5 | | | 1 | 1 | | | 1 | |
| 광주중재부 | 32 | 22 | (68.8) | 8 | | | 1 | | 1 | 8 | 1 | |
| 대전중재부 | 15 | 10 | (66.7) | 7 | | | 3 | | | | | |
| 경기중재부 | 41 | 32 | (78.0) | 20 | | | 11 | | 1 | | | |
| 상위중재부 | 13 | 2 | (15.4) | 2 | | | | | | | | |
| 충북중재부 | 1 | 2 | (200.0) | 2 | | | | | | | | |
| 전북중재부 | 27 | 18 | (66.7) | 10 | | | 5 | 1 | 2 | | | |
| 경남중재부 | 20 | 7 | (35.0) | 5 | | | 2 | | | | | |
| 제주중재부 | 5 | 3 | (60.0) | 3 | | | | | | | | |
| 계 | 750 | 481 | (63.8) | 316 | 1 | 6 | 88 | 7 | 8 | 35 | 17 | 6 |

서울·지방간 중재신청 구성비율추이



Ⅶ.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현황

| 배 체 명 | 구 분 | 제소건수 | 1 심 결 과 | | | | | |
|---------------|-----|------|---------|-----|-----|-----|-----|-----|
| | | | 인 용 | 기 각 | 각 하 | 화 해 | 취 하 | 계 류 |
| 동 아 일 보 | | 2 | 2 | | | | | |
| 조 선 일 보 | | 2 | 2 | | | | | |
| 시 민 일 보 | | 1 | 1 | | | | | |
| 여 주 신 문 | | 1 | | | | | 1 | |
| 국 법 일 보 | | 1 | | | | | | 1 |
| S P 투 데 이 | | 1 | | 1 | | | | |
| K B S - I T V | | 2 | | 1 | | | | 1 |
| M B C - T V | | 1 | 1 | | | | | |
| S B S - T V | | 1 | | 1 | | | | |
| 계 | | 12 | 6 | 3 | 0 | 0 | 1 | 2 |

◇ 2004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

| 배 체 | 시정권고 건수 | 침해유형 | 침 해 유 형 | | | | | | | |
|---------|---------|------|---------------|--------------|---------------|--------------------|----------|-------------------|-----------------|-----|
| | | |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 | | 공중도덕침해 | | | | |
| | | |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 사생활 침해 등 | 항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 차살 및 타살 관련 상세보사 | 기 타 |
| 중 앙 | 경 향 신 문 | 2 | | | 1 | | | | | 1 |
| | 국 민 일 보 | 1 | | | 1 | | | | | |
| | 내 일 신 문 | 0 | | | | | | | | |
| | 동 아 일 보 | 0 | | | | | | | | |
| | 분 화 일 보 | 0 | | | | | | | | |
| 양 지 | 서 울 신 문 | 2 | | | 1 | | | | | 1 |
| | 서 울 일 보 | 2 | | | 2 | | | | | |
| | 세 계 일 보 | 1 | | | | 1 | | | | |
| 지 | 시 민 일 보 | 1 | | | | | | | | 1 |
| | 신 아 일 보 | 1 | | | | | | 1 | | |
| | 조 선 일 보 | 4 | | | | 2 | | 1 | 1 | |
| 중 앙 일 보 | 1 | | | 1 | | | | | | |

| 매체 | | 시정권고 건수 | 침해유형 | 침 해 유 형 | | | | | | | |
|----|---------|------------|------|------------------------|-----------------------|---------------------|------------------------------|-------------|----------------------------|----------------------------|--------|
| | | | |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 | | | 공중도덕침해 | | | |
| | | | |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 목적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 사생활 침해 등 | 항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 자살 및 타살 관 련 상세 묘사 | 기 타 |
| 중 | 한겨레 | 2 | 1 | | 1 | | | | | | |
| | 한국일보 | 1 | | | | 1 | 1 | | | 1 | 1 |
| | 굿네이 | 1 | | | | | | | | | 1 |
| | 일간스포츠 | 0 | | | | | | | | | |
| | 스포츠서울 | 1 | | | | | | | | 1 | |
| | 스포츠조선 | 0 | | | | | | | | | |
| | 스포츠부데이 | 2 | | | | | | | | 1 | 1 |
| | 스포츠한국 | 1 | | | | | 1 | | | | |
| 양 | 매일경제 | 1 | | | 1 | | | | | | |
| | 서울경제 | 1 | | | 1 | | | | | | |
| | 한국경제 | 0 | | | | | | | | | |
| | 헤럴드경제 | 0 | | | | | | | | | |
| 지 | 굿모닝서울 | 1 | | | | | | | 1 | | |
| | 더데일리포커스 | 0 | | | | | | | | | |
| | 데일리줌 | 0 | | | | | | | | | |
| | 메트로 | 0 | | | | | | | | | |
| | 에이엠세븐 | 1 | | | | | | | | | 1 |
| | 소속개 | 30 | 1 | 0 | 10 | 5 | 0 | 3 | 4 | | 7 |
| 대 | 부산일보 | 2 | | | 1 | 1 | | | | | |
| 구 | 경북매일신문 | 5 | | | 1 | | | 4 | | | |
| · | 경북일보 | 11 | | | 1 | 1 | | 5 | 1 | | |
| 지 | 대구일보 | 3 | | | 3 | | | | | | |
| | 매일신문 | 1 | | | 3 | 1 | | | | | |
| 경 | 영남일보 | 3 | | | 2 | | | 1 | | | |
| 북 | 광남일보 | 2 | | | 1 | 1 | | | | | |
| | 광주매일 | 1 | | | | 1 | | | | | |
| 방 | 광주일보 | 7 | | | 3 | 3 | | 1 | | | |
| | 광주타임스 | 4 | | | 2 | 1 | | | | 1 | |
| | 대한일보 | 1 | 1 | | 1 | | | | | 2 | |
| 주 | 부흥일보 | 6 | | | 2 | 2 | | 1 | 1 | | |
| · | 전남도민일보 | 3 | | | | 1 | | 2 | | | |
| 지 | 전남매일 | 5 | | | 2 | 1 | | 1 | 1 | | |
| | 전남일보 | 4 | | | 2 | 1 | | | | 1 | |
| 남 | 호남매일 | 2 | | | 1 | | | | | 1 | |
| | 호남일보 | 1 | | | 1 | | | | | | |
| | 대전매일 | 1 | | | 1 | | | | | | |

| 시정권고 건수 | | 침해유형 | 침해유형 | | | | | 공중도덕침해 | | |
|---|--------|------|------------------------|-----------------------|---------------------|-----------------------------|-------------|----------------------------|----------------------------|--------|
| | | |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 | | | | | | |
| | | |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 복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 사생활 침해 등 | 항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 자살 및 타살 관 련 상세 조사 | 기 타 |
| 내 선 · 충 남 | 대전일보 | 1 | | | | | | 1 | | |
| | 중도일보 | 1 | 1 | | | | | | | |
| 인 · 지 · 천 · 경 · 기 · 성 · 기 · 방 | 충남일보 | 2 | | | | | | 1 | 1 | |
| | 경기도민일보 | 7 | | | 3 | 2 | | 2 | | |
| | 경기매일 | 6 | | | 3 | 3 | | | | |
| | 경기신문 | 6 | | | 2 | 3 | 1 | | | |
| | 경기일보 | 9 | | | 5 | 2 | | 2 | | |
| | 경노일보 | 2 | | | 1 | 1 | | | | |
| | 경인매일 | 2 | | 1 | 1 | | | | | |
| | 경인일보 | 5 | | | 2 | 2 | | | 1 | |
| | 기호일보 | 4 | | | 1 | 2 | | 1 | | |
| | 도민일보 | 3 | | | 2 | | | 1 | | |
| 기 · 방 | 수도권일보 | 2 | | | 1 | 1 | | | | |
| | 시대일보 | 5 | | | 3 | 1 | | 1 | | |
| | 아세아일보 | 2 | | | 1 | | 1 | | | |
| | 우리일보 | 3 | | | | 3 | | | | |
| | 인천일보 | 1 | | | 1 | | | | | |
| | 충부일보 | 7 | | | 4 | 2 | | 1 | | |
| | 전국매일 | 2 | | | 2 | | | | | |
| | 현대일보 | 3 | | | 2 | 1 | | | | |
| | 강원도민일보 | 6 | | | 3 | 3 | | | | |
| | 강원일보 | 5 | | | 1 | 3 | | 1 | | |
| 중 · 북 · 지 · 북 · 강 · 남 | 동양일보 | 1 | | | 1 | | | | | |
| | 충부매일 | 4 | 1 | | 2 | | | 1 | | |
| | 충북일보 | 1 | | | | | | 1 | | |
| | 충청일보 | 4 | | | 2 | | | 1 | | |
| | 한빛일보 | 1 | | | 1 | | | | | |
| | 새선북신문 | 2 | | | | 1 | | 1 | | |
| | 선라일보 | 3 | | | 2 | | | 1 | | |
| | 전민일보 | 4 | 1 | | 1 | 1 | | 1 | | |
| | 전북도민일보 | 3 | | | 1 | | | 1 | 1 | |
| | 전북일보 | 3 | | | 1 | | | 1 | 1 | |
| 강 · 남 | 선북중앙신문 | 3 | | | | 1 | | | 2 | |
| | 전주매일 | 4 | | | 1 | | | 3 | | |
| | 경남도민일보 | 4 | | | 2 | 1 | | | 1 | |
| | 경남매일 | 1 | | | 1 | | | | | |
| | 경남신문 | 8 | | | 6 | 1 | | | 1 | |

| 시정권고 건수 | | 침해유형 | | | | | | | | |
|------------------|-------------|------------------------|-----------------------|---------------------|-----------------------------|-------------|----------------------------|----------------------------|--------|----|
| | | 병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 | | | | | 공중도덕침해 | | |
| | |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 사생활 침해 등 | 항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 자살 및 타살 관 련 상세 묘사 | 기 타 | |
| 배 체 | 경 남 일 보 | 2 | | | 1 | | | | 1 | |
| | 경 상 일 보 | 1 | | | | 1 | | | | |
| | 광 역 일 보 | 1 | | | | | | | 1 | |
| 방 제 | 울 산 매 일 | 3 | | | 2 | | | 1 | | |
| | 재 민 일 보 | 6 | | | 1 | 2 | | 3 | | |
| | 재 주 일 보 | 2 | | | | 1 | | 1 | | |
| 지 주 | 한 라 일 보 | 4 | | | | 1 | | 3 | | |
| | 소 계 | 217 | 5 | 1 | 93 | 53 | 2 | 45 | 18 | 0 |
| | 연 합 뉴 스 | 17 | | | 6 | 7 | | 1 | 2 | 1 |
| 통 신 | 뉴 시 스 | 4 | | | 1 | 1 | | 1 | | 1 |
| | 소 계 | 21 | 0 | 0 | 7 | 8 | 0 | 2 | 2 | 2 |
| | 뉴 스 메 이 커 | 1 | | | | | | | 1 | |
| 주 간 지 | 시 사 저 널 | 0 | | | | | | | | |
| | 주 간 동 아 | 1 | | | | | | | 1 | |
| | 주 간 조 선 | 0 | | | | | | | | |
| 주 간 신 문 | 주 간 한 국 | 0 | | | | | | | | |
| | 한 셔 레 2 1 | 0 | | | | | | | | |
| | 민 주 신 문 | 3 | | | | | | 1 | 1 | 1 |
| 월 간 지 | 월 요 신 문 | 1 | | | | | | | | |
| | 일 요 시 사 | 0 | | | | | 1 | | | |
| | 일 요 신 문 | 0 | | | | | | | | |
| 주 간 신 문 | 주 간 현 대 | 0 | | | | | | | | |
| | 나 주 투 데 이 | 1 | | | 1 | | | | | |
| | 담 양 신 문 | 1 | | | | | | | 1 | |
| 월 간 지 | 전 남 타 임 스 | 1 | | | 1 | | | | | |
| | 진 도 타 임 스 | 2 | | | 1 | 1 | | | | |
| | 충 청 리 뷰 | 1 | 1 | | | | | | | |
| 월 간 지 | 호 남 뉴 스 라 인 | 1 | | | 1 | | | | | |
| | 화 순 신 문 | 1 | | | | | | | 1 | |
| | 소 계 | 14 | 1 | 0 | 4 | 2 | 0 | 1 | 5 | 1 |
| 월 간 지 | 신 동 아 | 1 | | | | | | 1 | | |
| | 월 간 조 선 | 0 | | | | | | | | |
| | 월 간 중 앙 | 0 | | | | | | | | |
| 총 계 | 소 계 | 1 | 0 | 0 | 0 | 0 | 0 | 1 | 0 | 0 |
| | 총 계 | 283 | 7 | 1 | 114 | 68 | 2 | 52 | 29 | 10 |

* 심의대상매체 : 일간지 92종, 주간지 8종, 주간신문 5종, 월간지 6종, 통신 2종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1. 언론피해상담 처리현황

상담신청유형

(단위: 건)

| 월 | 상담건수 | 방문 | 전화 | 인터넷실시간 | 인터넷계시판 | 이메일상담 | 기타 |
|----|----------------|--------------|-----------------|--------------|-------------|-------------|-------------|
| 1 | 201 | 22 | 143 | 26 | 7 | 3 | 0 |
| 5 | 211 | 27 | 152 | 14 | 10 | 5 | 3 |
| 6 | 265 | 25 | 189 | 21 | 22 | 2 | 6 |
| 7 | 221 | 20 | 151 | 32 | 11 | 2 | 5 |
| 8 | 180 | 17 | 132 | 16 | 8 | 1 | 6 |
| 9 | 183 | 19 | 146 | 14 | 2 | 0 | 2 |
| 10 | 193 | 11 | 155 | 17 | 7 | 0 | 3 |
| 11 | 179 | 17 | 131 | 20 | 7 | 1 | 0 |
| 12 | 183 | 18 | 144 | 17 | 3 | 1 | 0 |
| 합계 | 1,816 (100) | 176 (9.7) | 1,346 (74.1) | 177 (9.7) | 77 (4.2) | 15 (0.8) | 25 (1.4) |

상담처리결과

(단위: 건)

| 월 | 상담건수 | 총계 | 중재신청안내 | 법적절차안내 | 재상담예정 | 타기관안내 | 상담종결 | 기타 | 중재신청접수 |
|----|----------------|----------------|-----------------|---------------|-------------|--------------|--------------|-------------|---------------|
| 1 | 201 | 250 | 124 | 63 | 20 | 13 | 30 | 0 | 31 |
| 5 | 211 | 235 | 127 | 52 | 13 | 22 | 20 | 1 | 20 |
| 6 | 265 | 290 | 175 | 69 | 9 | 23 | 14 | 0 | 50 |
| 7 | 221 | 259 | 144 | 64 | 11 | 26 | 11 | 0 | 80 |
| 8 | 180 | 197 | 108 | 50 | 6 | 16 | 16 | 1 | 41 |
| 9 | 183 | 207 | 119 | 55 | 11 | 19 | 3 | 0 | 21 |
| 10 | 193 | 217 | 117 | 62 | 6 | 24 | 4 | 4 | 21 |
| 11 | 179 | 205 | 120 | 49 | 6 | 25 | 2 | 3 | 23 |
| 12 | 183 | 212 | 117 | 69 | 6 | 15 | 3 | 2 | 31 |
| 합계 | 1,816 (100) | 2,072 (100) | 1,151 (55.6) | 533 (25.7) | 91 (4.4) | 183 (8.8) | 103 (5.0) | 11 (0.5) | 318 (17.5) |

언론피해유형

단위: %

| 월 | 상담건수 | 명예훼손 | 신용훼손 | 조상권 침해 |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및 조상권침해 | 신용훼손 및 조상권침해 | 사생활 및 조상권침해 | 기타 |
|----|---------|--------|-------|--------|--------|--------------|--------------|-------------|--------|
| 4 | 201 | 105 | 28 | 9 | 1 | 8 | 0 | 0 | 50 |
| 5 | 211 | 114 | 19 | 11 | 1 | 6 | 1 | 0 | 59 |
| 6 | 265 | 176 | 1 | 14 | 3 | 7 | 0 | 0 | 61 |
| 7 | 221 | 147 | 7 | 9 | 0 | 3 | 0 | 0 | 55 |
| 8 | 180 | 94 | 25 | 5 | 1 | 2 | 0 | 0 | 53 |
| 9 | 183 | 96 | 15 | 6 | 2 | 1 | 0 | 2 | 61 |
| 10 | 193 | 96 | 10 | 10 | 1 | 6 | 0 | 1 | 69 |
| 11 | 179 | 73 | 26 | 11 | 0 | 2 | 0 | 0 | 67 |
| 12 | 183 | 88 | 18 | 12 | 2 | 10 | 0 | 1 | 52 |
| 합계 | 1,816 | 989 | 152 | 87 | 11 | 45 | 1 | 4 | 527 |
| | (100.0) | (54.5) | (8.4) | (4.8) | (0.6) | (2.5) | (0.1) | (0.2) | (29.0) |

매체유형별 언론피해상담

단위: %

| 월 | 상담건수 | 총계 | 신문 | 주간신문 | 시사주간지 | 방송 | 월간지 | 통신 | 인터넷 | 기타 | 불명 |
|----|---------|--------|-------|-------|-------|--------|-------|-------|-------|-------|--------|
| 4 | 201 | 216 | 67 | 27 | 2 | 70 | 1 | 4 | 15 | 1 | 26 |
| 5 | 211 | 215 | 78 | 13 | 3 | 64 | 7 | 5 | 11 | 1 | 33 |
| 6 | 265 | 285 | 106 | 23 | 4 | 80 | 2 | 7 | 9 | 2 | 52 |
| 7 | 221 | 223 | 64 | 30 | 2 | 58 | 1 | 2 | 15 | 1 | 47 |
| 8 | 180 | 182 | 62 | 20 | 0 | 45 | 3 | 0 | 15 | 4 | 33 |
| 9 | 183 | 203 | 67 | 21 | 1 | 62 | 5 | 3 | 13 | 1 | 30 |
| 10 | 193 | 209 | 86 | 10 | 0 | 62 | 1 | 3 | 9 | 1 | 37 |
| 11 | 179 | 193 | 56 | 23 | 0 | 62 | 3 | 5 | 9 | 1 | 34 |
| 12 | 183 | 198 | 55 | 18 | 1 | 62 | 6 | 1 | 7 | 1 | 41 |
| 합계 | 1,816 | 1,921 | 641 | 185 | 16 | 565 | 35 | 33 | 103 | 13 | 333 |
| | (100.0) | (33.3) | (9.6) | (0.8) | (0.8) | (29.1) | (1.8) | (1.7) | (5.1) | (0.7) | (17.3) |

◇ 연도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1. 언론중재신청 처리현황

연도별 중재처리결과

(단위: %)

| 구분 연도 | 신청 건수 | 치 리 결 과 | | | | | | | 비 고 |
|----------|-------------------|------------------|---------------|---------------|------------------|---------------|--------------|------------------|-----|
| | | 합 의 | 중재결정 | | 중재불성립 결정 | 기 각 | 각 하 | 취 하 | |
| | | | 동 의 | 이 의 | | | | | |
| 1981 | 41 | 9 | | | 12 | 1 | 2 | 20 | |
| 1982 | 50 | 19 | | | 19 | | 2 | 10 | |
| 1983 | 71 | 21 | | | 22 | 1 | 1 | 26 | |
| 1984 | 54 | 12 | | | 29 | 3 | | 10 | |
| 1985 | 59 | 12 | | | 28 | 4 | | 15 | |
| 1986 | 49 | 11 | | | 10 | 1 | | 21 | |
| 1987 | 47 | 10 | | | 9 | 1 | | 27 | |
| 1988 | 55 | 16 | | | 12 | | 1 | 26 | |
| 1989 | 121 | 29 | | | 35 | | 6 | 51 | |
| 1990 | 159 | 42 | | | 43 | 1 | 2 | 71 | |
| 1991 | 220 | 52 | | | 48 | 3 | 1 | 116 | |
| 1992 | 381 | 81 | | | 79 | 19 | | 202 | |
| 1993 | 423 | 132 | | | 96 | 8 | 2 | 185 | |
| 1994 | 541 | 162 | | | 127 | 7 | | 245 | |
| 1995 | 528 | 111 | | | 150 | 26 | 3 | 238 | |
| 1996 | 556 | 129 | 2 | 7 | 169 | 9 | 1 | 239 | |
| 1997 | 490 | 161 | 10 | 5 | 79 | 8 | 1 | 223 | |
| 1998 | 602 | 226 | 11 | 10 | 97 | 5 | | 250 | |
| 1999 | 641 | 244 | 11 | 18 | 102 | 24 | 5 | 237 | |
| 2000 | 607 | 198 | 10 | 15 | 66 | 11 | 2 | 302 | |
| 2001 | 659 | 229 | 6 | 23 | 132 | 18 | 2 | 249 | |
| 2002 | 511 | 182 | 18 | 17 | 62 | 8 | 1 | 223 | |
| 2003 | 721 | 287 | 15 | 15 | 101 | 27 | 3 | 276 | |
| 2004 | 759 | 283 | 46 | 22 | 140 | 13 | | 255 | |
| 계 | 8,351 (100.0%) | 2,661 (31.9%) | 132 (1.6%) | 132 (1.6%) | 1,667 (20.0%) | 201 (2.4%) | 38 (0.5%) | 3,520 (42.2%) | |

연도별 실질적 피해구제율

| 구분 연도 | 신청 건수 | 중재 건수 | 처리결과 | | | | | 피해 구제율 (%) | |
|----------|----------|----------|-------|------|-----|-------------|-------|------------------|------|
| | | | 합의 | 중재결정 | | 중재불성립 결정 | 취하 | | 소계 |
| | | | | 동의 | 이의 | | | | |
| 1981 | 44 | 41 | 9 | | | 12 | 20 | 41 | 39.0 |
| 1982 | 50 | 48 | 19 | | | 19 | 10 | 48 | 58.3 |
| 1983 | 71 | 69 | 21 | | | 22 | 26 | 69 | 52.2 |
| 1984 | 54 | 51 | 12 | | | 29 | 10 | 51 | 49.0 |
| 1985 | 39 | 55 | 12 | | | 28 | 15 | 55 | 43.6 |
| 1986 | 49 | 48 | 11 | | | 10 | 21 | 48 | 56.3 |
| 1987 | 47 | 46 | 10 | | | 9 | 27 | 46 | 31.8 |
| 1988 | 55 | 54 | 16 | | | 12 | 26 | 54 | 63.0 |
| 1989 | 121 | 115 | 29 | | | 35 | 51 | 115 | 52.2 |
| 1990 | 159 | 156 | 42 | | | 43 | 71 | 156 | 59.0 |
| 1991 | 220 | 216 | 52 | | | 48 | 116 | 216 | 48.1 |
| 1992 | 381 | 362 | 81 | | | 79 | 202 | 362 | 55.2 |
| 1993 | 423 | 413 | 132 | | | 96 | 185 | 413 | 56.2 |
| 1994 | 541 | 534 | 162 | | | 127 | 245 | 534 | 56.2 |
| 1995 | 528 | 499 | 111 | | | 150 | 238 | 499 | 52.1 |
| 1996 | 536 | 546 | 129 | 2 | 7 | 169 | 239 | 546 | 53.1 |
| 1997 | 490 | 478 | 161 | 10 | 5 | 79 | 223 | 478 | 61.3 |
| 1998 | 602 | 597 | 226 | 14 | 10 | 97 | 250 | 597 | 59.6 |
| 1999 | 641 | 612 | 244 | 11 | 18 | 102 | 237 | 612 | 59.6 |
| 2000 | 607 | 591 | 198 | 10 | 15 | 66 | 302 | 591 | 63.6 |
| 2001 | 639 | 639 | 229 | 6 | 23 | 132 | 249 | 639 | 62.3 |
| 2002 | 511 | 502 | 182 | 18 | 17 | 62 | 223 | 502 | 62.1 |
| 2003 | 724 | 694 | 287 | 15 | 15 | 101 | 276 | 694 | 68.0 |
| 2004 | 759 | 746 | 283 | 46 | 22 | 140 | 255 | 746 | 66.4 |
| 계 | 8,351 | 8,112 | 2,661 | 132 | 132 | 1,667 | 3,520 | 8,112 | 59.3 |

중재부별 중재신청건수

(단위: 건)

| 연도 \ 구분 | 신청건수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경기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남 | 제주 |
|---------|------------------|-----------------|--------------|--------------|--------------|--------------|--------------|--------------|--------------|--------------|--------------|-------------|
| 1981 | 44 | 37 | 5 | 1 | | | | | 1 | | | |
| 1982 | 50 | 44 | 3 | | 1 | | 1 | 1 | | | | |
| 1983 | 71 | 61 | 8 | | 1 | | 1 | | | | | |
| 1984 | 54 | 46 | 3 | | 1 | 2 | 1 | 1 | | | | |
| 1985 | 59 | 48 | 3 | 2 | | 1 | 1 | 1 | 1 | | 2 | |
| 1986 | 49 | 38 | 3 | | | | 1 | 3 | 2 | | 2 | |
| 1987 | 47 | 42 | 1 | 1 | 1 | | 1 | | 1 | | | |
| 1988 | 55 | 41 | 2 | 1 | 3 | 1 | | 2 | 3 | 1 | 1 | |
| 1989 | 121 | 78 | 14 | 2 | 8 | 1 | 6 | | 3 | 2 | 4 | 3 |
| 1990 | 159 | 110 | 12 | 3 | 7 | 3 | 10 | 1 | 5 | 2 | 4 | 2 |
| 1991 | 220 | 137 | 20 | 7 | 9 | 5 | 10 | 3 | 3 | 10 | 12 | 4 |
| 1992 | 381 | 233 | 21 | 7 | 15 | 11 | 41 | 6 | 12 | 14 | 19 | 2 |
| 1993 | 423 | 236 | 32 | 25 | 23 | 15 | 37 | 9 | 9 | 16 | 19 | 2 |
| 1994 | 541 | 348 | 21 | 19 | 23 | 21 | 46 | 5 | 16 | 17 | 19 | 6 |
| 1995 | 528 | 323 | 27 | 9 | 15 | 23 | 55 | 14 | 16 | 25 | 13 | 8 |
| 1996 | 556 | 328 | 27 | 13 | 35 | 23 | 66 | 8 | 17 | 18 | 18 | 3 |
| 1997 | 490 | 283 | 29 | 24 | 23 | 15 | 46 | 14 | 22 | 11 | 20 | 3 |
| 1998 | 602 | 335 | 24 | 22 | 61 | 18 | 62 | 14 | 23 | 19 | 18 | 6 |
| 1999 | 641 | 402 | 27 | 18 | 43 | 13 | 62 | 10 | 16 | 28 | 16 | 6 |
| 2000 | 607 | 378 | 23 | 29 | 28 | 27 | 52 | 14 | 21 | 18 | 15 | 2 |
| 2001 | 659 | 428 | 21 | 18 | 32 | 19 | 62 | 9 | 16 | 36 | 17 | 1 |
| 2002 | 511 | 307 | 15 | 11 | 39 | 16 | 45 | 7 | 16 | 25 | 20 | 7 |
| 2003 | 724 | 496 | 18 | 20 | 40 | 20 | 64 | 10 | 6 | 25 | 16 | 9 |
| 2004 | 759 | 558 | 27 | 17 | 32 | 15 | 41 | 13 | 4 | 27 | 20 | 5 |
| 계 | 8,351 (100.0) | 5,337 (63.9) | 386 (4.6) | 252 (3.0) | 440 (5.3) | 249 (3.0) | 711 (8.5) | 145 (1.7) | 213 (2.6) | 291 (3.5) | 255 (3.1) | 69 (0.8) |

II.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 현황 (1심)

(단위: 회)

| 연도 | 제소건수 | 인용 | 각각 | 각하 | 화해 | 취하 | 계류 |
|------|----------------|---------------|--------------|------------|-------------|---------------|------------|
| 1981 | 4 | | 2 | | 2 | | |
| 1982 | 3 | 2 | 1 | | | | |
| 1983 | 7 | 4 | 2 | | | 1 | |
| 1984 | 8 | | 4 | | | 4 | |
| 1985 | 12 | | 2 | | 1 | 9 | |
| 1986 | 2 | 1 | | | | 1 | |
| 1987 | 4 | 1 | | | | 3 | |
| 1988 | 7 | 3 | 1 | | | 3 | |
| 1989 | 10 | 7 | 1 | | | 2 | |
| 1990 | 12 | 3 | 2 | 2 | 1 | 4 | |
| 1991 | 6 | 3 | 1 | | | 2 | |
| 1992 | 33 | 4 | 11 | | 3 | 15 | |
| 1993 | 20 | 9 | 2 | 3 | 1 | 5 | |
| 1994 | 30 | 14 | 1 | | 2 | 13 | |
| 1995 | 53 | 20 | 14 | 1 | 4 | 14 | |
| 1996 | 30 | 9 | 1 | | | 20 | |
| 1997 | 10 | 5 | 3 | | | 2 | |
| 1998 | 22 | 15 | 2 | | | 5 | |
| 1999 | 31 | 21 | | 2 | | 8 | |
| 2000 | 8 | 4 | 1 | | 1 | 2 | |
| 2001 | 37 | 17 | 9 | | 2 | 9 | |
| 2002 | 12 | 8 | | | 1 | 3 | |
| 2003 | 10 | 8 | 1 | | | 1 | |
| 2004 | 12 | 5 | 3 | | | 1 | 3 |
| 계 | 383 (100.0) | 163 (42.6) | 61 (16.7) | 8 (2.1) | 18 (4.7) | 127 (33.2) | 3 (0.8) |

Ⅲ. 시정권고 현황

(단위:건, %)

| 연도 | 구분 시정권고건수 | 침해유형 | | | | | | | | | 간별 | | | | | | |
|------|------------------|---------------|--------------|-----------------|--------------------|--------------|------------|---------------|----------------|-------------|-------------|-----------------|-------------|-------------|---|---|--------------|
| | |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 | | | | 사회질서침해 |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침해 | | | 일간신문 | 주간지/주간신문 | 월간지 | 통신 | | | |
| | |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 사생활 침해 등 | | 다량·용량·용법 등 공개 | 자살 및 타살관련사상세보사 | 기타 | | | | | | | |
| 1981 | | | | | | |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 | | | | |
| 1983 | 3 | | | | | | | | | | | 3 | 1 | 2 | | | |
| 1984 | | | | | | | | | | | | | | | | | |
| 1985 | | | | | | | | | | | | | | | | | |
| 1986 | 3 | | | | | 3 | | | | | | | | | | 3 | |
| 1987 | 6 | 2 | | | | | 4 | | | | | | 3 | 2 | 1 | | |
| 1988 | 37 | 9 | | 3 | | | 16 | | | 1 | 8 | 29 | 2 | 2 | 1 | | |
| 1989 | 180 | 52 | | 92 | | | 36 | | | | | 173 | 1 | | | | 6 |
| 1990 | 311 | 63 | | 169 | 12 | | 67 | | | | | 301 | 1 | | | | 9 |
| 1991 | 264 | 70 | | 140 | 16 | | 34 | | 1 | | 3 | 247 | 8 | 3 | | | 6 |
| 1992 | 390 | 123 | | 227 | 3 | | 34 | | | | 3 | 379 | | | | | 11 |
| 1993 | 344 | 106 | | 228 | | | 10 | | | | | 336 | 1 | | | | 7 |
| 1994 | 204 | 58 | | 132 | | | 7 | | 7 | | | 195 | 1 | | | | 8 |
| 1995 | 282 | 29 | | 131 | | | | | 121 | | 1 | 271 | 1 | | | | 10 |
| 1996 | 310 | 26 | 8 | 122 | 22 | | 11 | | 117 | 4 | | 301 | | 1 | | | 5 |
| 1997 | 469 | 21 | 78 | 76 | 182 | 2 | | 1 | 109 | | | 461 | 1 | | | | 7 |
| 1998 | 348 | 16 | 14 | 29 | 151 | | | | 137 | 1 | | 336 | 2 | 2 | | | 8 |
| 1999 | 240 | 17 | 11 | 20 | 126 | | | | 66 | | | 234 | | | | | 6 |
| 2000 | 234 | 51 | 6 | 8 | 67 | 2 | | | 97 | | | 213 | 4 | | | | 17 |
| 2001 | 231 | 22 | 10 | 9 | 70 | 1 | | | 119 | | | 211 | 7 | | | | 13 |
| 2002 | 142 | 9 | | | 88 | 1 | | | 41 | | | 129 | 1 | | | | 12 |
| 2003 | 237 | 13 | 1 | 41 | 153 | 2 | | | 20 | 6 | 1 | 219 | 2 | | | | 16 |
| 2004 | 283 | 7 | 1 | 114 | 68 | 2 | | | 52 | 29 | 10 | 247 | 14 | 1 | | | 21 |
| 계 | 4,518 (100.0) | 697 (15.4) | 129 (2.9) | 1,541 (34.1) | 958 (21.2) | 232 (5.1) | 1 (0.1) | | 890 (19.7) | 41 (0.9) | 29 (0.6) | 4,289 (94.9) | 50 (1.1) | 13 (0.3) | | | 166 (3.7) |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장 호 순

대전중재위원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3월 4일 대전에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장호순 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상곤 위원(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토론내용을 각각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언론중재법의 제정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빈번해지는 분쟁 중의 하나가 언론자유와 인격권간의 충돌이다. 언론자유와 보장법위가 확대되는 만큼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요구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언론의 민주적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개인의 인격권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민주주의 사회로서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정간물법·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절차로 하고, 중재절차를 새로이 규정

현행 중재절차가 그 실제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에 가까워 법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고유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조정과 중재로 그 절차를 이분화 함으로써 혼란의 여지를 없앴으며



청구인들이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대 상화를 통한 중재위를 통한 일회적 피해구제 가능
현행은 중재위가 반론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 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재위가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당사자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충장치를 위원회에 둬으로써 언론사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절차를 피하고 비용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 무제한적 배포성으로 인해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루어짐에도 여태껏 인터넷 매체에 대한 법적 장치 미비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피해자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언론의 보도도 지나친 신속성보다는 보도의 신중함에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개 기로 간주

현행 법률은 중재결정에 대해 언론사가 이의신청할 경우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언론사의 이의신청 남발을 억제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정정보도청구요건의 완화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청구인들의 제도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정보도청구를 구대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입증요건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절차를 따르도록 해 민법 제764조가 인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예외적 원상회복 조치와도 다른 새로운 권리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청구방법을 다양하고 쉽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향후 접수절차의 편리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하자있는 청구남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시정권고는 자체심의를 통해 실정법상 문제가 되는 보도에 한해 이뤄졌으나, 향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특정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들이 시정요구해 올 경우 심의기

준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준위반여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언론피해 구제나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언론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고, 관례로 형성된 언론의 변칙범위를 일률적으로 축소하고, 언론피해의 구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윤리적 판단사항들이 법으로 강요되고 있다.

▶공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 매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피해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단일화되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을 판정하기에는 전문지식이 없고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중재위 원래의 설립취지, 즉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라는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시정권고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고, 시정권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후검열이 될 수 있다.

4. 마치며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과거 정간법과 방송법에 담겨있던 언론중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해 언론중재제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고, 혼란스러웠던 용어를 정비하고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중재제도의 중재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중재위의 기능에 새로이 포함되었거나 대폭 강화된 제도, 즉 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기능을 강화시키고, 조성이나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 소재지로 간주하는 제도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중재제도를 보다 적극 홍보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언론계에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언론중재법 제정을 계기로, 언론계 스스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론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개인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토 론

사회한상곤

대전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회자 :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과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일북요연하게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신 장호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법률은 언론피해구제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도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의 토론 주제 외에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전반에 대해 갖고 계신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금산저널 발행인) :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지역언론은 주로 개인에 대한 보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 공인에 대한 보도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언론중재제도를 악용하여 언론을 압박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재처리과정에서 중재심리에 참여하다 보면 피신청인인 언론사를 피고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희(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 제정법이 언론 피해구제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언론분쟁에서의 약자인 시민이 법률적 조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피해상담소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도입되지 못해 어렵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 일반인이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새 법률이 중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며, 중재위원회가 이미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상담 직원을 두어 모든 절차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본인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중이지만 신청인이 언론의 잘못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절차 또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언론소송에서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언론이 스스로의 보도가 공정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별로 없고 공인이 제기하는 소송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언론을 압박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력이 약한 소규모 언론의 존립기반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공인의 소송제기를 제한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강

화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김래호(대전방송 편성제작국 팀장) : 방송사는 자체 심의실과 방송법상 설치가 규정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법률에서는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의 신분 등에 대한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언론인 취업제한 규정이 배임수증죄만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법률에 고충처리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언론사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자격을 규정하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제한 규정은 형법상 배임수증뿐만 아니라 손지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철(보령시청 공보담당관) : 언론사가 난립하면서 언론보도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질이 부족한 언론인이 잘못된 기사를 보도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기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사실로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 현행 법률은 오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보도에 있어 공익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정법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조각사유를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로 제한하고 있어 언론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법이 중재위가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언론보도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 정정·반론보도청구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보도시 고의, 과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박봉준(대전문화방송 보도국장) : 대전MBC는 몇 년 전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 왔던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여 법조계의 바람직하지 못한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반론,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위를 거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행하고 나서도 소송으로 이어져 법정에 출두까지 하게 되어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서 반론,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도 중재를 함으로써 언론보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권익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실명보도도 가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법이 개인권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어 언론보도를 위축시켜 알권리를 제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 하여,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의 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은수(우석대 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 법률 제 32조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청구가 가능한데 이 조항을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이 악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새법은 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표자 : 제3자 시정권고 청구에 대해 언론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파적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적대적 언론에 대해 압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가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위가 실무적으로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보도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양의 언론 보도를 빠짐없이 스크린 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시정권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반론보도 청구 등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정간법 체제 하에서 이미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규정도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당부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세영 (월간 청풍 회장) : 고충처리인 자격 규정과 관련하여 언론사 내부 출신으로 해도 되는지 외부인을 고용해야 하는지 등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 아직까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터 등 해당 언론사내에 자체적인 옴부즈맨을 두어 독자의 사소한 불만까지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른 언론사 출신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일반 직원과는 다른 직위를 부여하여 현지에서 불만을 수렴하기도 하고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내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만 기존 조직과 전혀 융화되지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좋은 발표와 진지한 토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언론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피신청인 측이 중재에 참석할 시 법정의 피고 같은 느낌을 갖는 등 약간 불편했다는 지적은 깊이 염두에 두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여러분의 다양한 견해를 중재제도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주신 장호순 교수님과 한상곤 부장관사님,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예인 X파일' 사건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이 효 성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교수

시작하며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아 기업은 물론 다양한 조사기관들이 개인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적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집된 정보는 철저히 상품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대표적 디지털 매체인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과 이용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미취학 어린이나 노인 등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유용한 정보의 수집·교환 등 현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은 무수히 많다. 현대인들은 이제 인터넷 없이는 전문적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가히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인터넷이 열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 역시 만만치 않다. 커뮤니티 내 사람들간의 인간적 관계가 더욱 건조해지고 산과 들에서 뛰고 뒹굴어야 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에 매몰돼 심신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이런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예기치 않게

종종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짐(burden)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2005년 새해 벽두부터 소위 '연예인 X파일' 사건이 터져 나와 관련자들이 소송에 연루됨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한바탕 소동을 벌인 바 있다. 해당 연예인들은 파일 제작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함은 물론 광고 출연거부 등으로 맞서기도 했다. 또한 일반인들은 공인에 해당하는 연예인들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

을 충족시키는 한편 인터넷 시대에 개인의 사적 정보 노출이 초래하고 있는 크나큰 사회적 과장을 실감하게 되었다. 연예인 X파일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광고기획사와 리서치사에서 연예인에 대해 떠도는 소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적 프로파일 이 사이버상에서 일과만과로 퍼져나가 당사자 연예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 다툼으로 비화된 사건이었다. 일부 관계자들이 논의한 내용을 분별없는 개인이 인터넷 상에 올리면서 해당 연예인과 관련 업체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걸잡을 수 없는 과장을 몰고 온 셈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무차별적 정보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번 연예인 X-파일 사건은 단번에 다수의 개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측면에서 유례없는 파문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당사자나

다른 형태의 공인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 개인 누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디지털 환경 하에서 심각하지 않은 차원의 개인정보수집과 부주의한 인터넷 게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과장을 일으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이번 사건

미국법정에서조차 공인의 사적 관심에 대해서 만큼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있어

은 정보화시대에 필수불가결한 매체가 돼버린 인터넷이 그릇되게 이용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가해혐의자에게는 부거운 법적 사회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상기시킨 사건이었다.

수용자와 송신자의 구분이 따로 없고 다차원적, 무차별적 정보의 확산이 가능한 사이버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진지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를 당한 개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와 희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명예훼손과 현실적 악의 원칙의 변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초기 미국 판례의 특징은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아끼려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정립된 바 있다. 지난 196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공직자(public official)의 경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적 언사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작성되었는지를 증명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단초가 된

판결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후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공직자 외에 공적인물(public figure)로 확대 적용시키고 계속해서 명예훼손적 언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을 경우(공인이든 사인이든)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결하게 된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다시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공인으로 한정하는 판례를 남기게 된다. 또한 더 나아가 1971년의 둔 앤 브래드스트리트 대 그린모스 빌더스(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사건에서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사의 경우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시한다. 즉 원고가 공적인물일지라도 사적 관심에 관련된 이슈의 경우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언론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미국법정에서조차 공인의 사적 관심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원칙으로 삼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과 판례

우리나라의 헌법 및 각종 법률들은 전반적으로 언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도 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미국의 연방수정헌법과 달리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여타 개인의 기본권보다 특별히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정기간행물법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동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보도에 대한 반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의 명예훼손적 언사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비교적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개인이 사회생활

에서 가지는 인격적 가치와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리키는 개념의 명예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동조 제2항)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된다. 명예에 관한 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되는 것이다(임병국, 2002).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서로 상충되는 개인의 기본권들 간의 갈등을 상황적 여건(공공이익의 추구정도)에 따라 해결한다는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88년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나, 명예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권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권리들이 서로 상충될 때 그 해결은 어떠한 권리가 사회정의와 복지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8.10.11.선고다카29판결).

이러한 우리나라 법정의 비교형량의 기본 원칙은 언론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란 절대적 우월적 자유라기보다는 여타 기본권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권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임병국, 2002). 즉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공하여 언론매체에 보도케 한 경우, 그 기사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형법 제309조 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4. 4. 12선고 93도3535판결).

대법원은 판결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

309조 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등장

전통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개념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미공개 기록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어

법적 토대가 형성된 것은 오늘날과 같은 도시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으로 그 역사가 일천하다(임병국, 2002). 수세기에 걸쳐 발전된 보통법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프라이버시권 개념과 법제는 매우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 법제는 유럽의 산업혁명이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의 비밀이 많아지고 일차적 인간관계보다는 이차적 인간관

계가 보편화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사적 맥락에서 프라이버시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중반이후 거세지기 시작한 옐로우 저널리즘 풍조가 만연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의 흥미에 집착해 개인적 비리 등을 들추어내는 업을 주로 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인해 개인의 사적 생활 등 은밀한 면면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정적 저널리즘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의 정립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등장한 개념이 프라이버시권이다.

지난 19세기 말 미국의 워렌과 브렌다이즈(Warren & Brandeis) 판사는 프라이버시권을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처음 명시했다. 이후 좀더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부당하게 공개 당하지 않을 인간의 권리 또는 개인이 자신과 소유재산에 대하여 공적으로 엄격한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된

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1990년대 들어 점차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외부적 압력없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완전한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은 명예권의 확대해석을 통해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이재진, 2002). 즉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미공개 기록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하겠다.

‘연예인 X파일’ 사건의 책임규명

이상 ‘연예인 X파일’ 사건의 법적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존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판례와 법조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현상은 기존 매체에서의

그것들과 법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의 공인과 사인의 구분, 서비스 제공자(ISP)와 이용자의 이익형량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이재진, 2002). 특히 사이버 서비스 공급자가 단순한 정보 배포자인지 아니면 재량권을 가진 편집자인지, 인터넷 이용자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버 사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있어, 앞에서 제시한 기존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나 법 조항들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사이버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은 바로 현실 속의 삶(reality)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예인 X파일사건’과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우선 파일 작성자에게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병섭, 2005년 1월 28일, www.

etnews.co.kr). 특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적시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최초 발설자 및 일정 범위의 배포자들에게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그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힘들것이다. 특히 ‘X파일’에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다. 명예훼손죄는 적시 내용이 진실이나 허위이냐에 따라서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에서도 사실의 진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파일을 배포한 익명의 네티즌들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란 말로 표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

고,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을 배포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자신이 전송하는 파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전송했다면 그는 명예훼손책임을 질 수 있다(신병섭, 2005 1월 28일, bizmekalawmarket.co.kr).

맺으며

이번 ‘연예인 X파일’ 사건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개인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무분별한 유출이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얼마나 쉽사리 침해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게 된다. 기존 오프라인 매체에서의 사과나 정정보도와 같은 방식의 반론권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다. 소송에 휘말린 가해 혐의자들 역시 크나큰 유·부형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한류열풍’에

타격을 입는 등 손해가 지대할 것임은 불어볼 필요조차 없다.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들 역시 이번 사건을 흥미위주로 다룸으로써 당장은 수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관심을 끌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보다 소중한 차원의 수용자 신뢰를 잃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체들이 소

사이버상에서의 순간의 실수가 개인은 물론, 언론사 혹은 해당 기업의 존폐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

송에 연루될 경우 변호사선임 비용 등 과중한 법정비용,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치러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관련 법정 비용이나 손해배상액은 구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액수에 불과했으나 점차 부담금액이 거액 수준이 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이재진, 2002). 사이

버상에서의 순간의 실수가 개인은 물론, 언론사 혹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존폐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는 물론 온라인 매체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역할을 도외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옥죄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연예인 X파일사건을 계기로 매체와 기업체는 물론 다양한 수용자들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이용 행태가 한 차원 성숙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이재진(2002). 한국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신병섭(2005년 1월 28일). /bizmekalawmarket.co.kr.
신병섭(2005년 1월 28일). www.etnews.co.kr.
임병국(2002). 언론법제와 보도. 남남출판.

중재단상

신 명 중

서울제4중재부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라고 함)의 위상은 실로 대단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재위는 2004년 한해 동안 모두 759건의 중재신청을 접수 처리했다. 이는 중재위가 출범한 후 가장 많았던 전년도 724건보다도 35건이 늘어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처리결과를 보아도 합의 283건(37.3%), 중재결정 68건(8.9%), 중재불성립결정 140건(18.5%), 기각 13건(1.7%), 취하 255건(33.6%) 등으로 실질적 피해구조율도 전년도에 비하여 조금 낮아 지기는 했지만 66.4%를 기록했다고 하니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중재결정건수 또한 지난 96년 중재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중재결정에 대한 동의율도 67.6%(46건)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수치 못지않게 중재위는 소송에 이르기 전에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중재위를 통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어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보도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이하 '만족도 연구' 라고도 함)에 의하면, 이용자의 거의 대부분인 신청인의 96.1%, 피신청인의 92.2%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재위원들이 적극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리에 임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대와 우려

국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의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중재위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하여 기대 못지않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중재제도를 '조정' 과 '중재' 로 구분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도 중재위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제18조 및 제24조), 중재위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했고(제22조),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중재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제26조 및 제27조) 등 지나치게 소송 일변도의 해결방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법 규정은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중재위의 위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중재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중재전치를 임의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위 만족도 연구에 의하면 신청인의 76.3%가 법원에서의 직접적인 청구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제도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하니 선분부터 걱정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위 응답의 이유로 든 시간절약 43.9%, 중재절차 자체가 필요 18.9%, 비용부담이 없다 15.2% 등은 언론중재제도가 반론보도청구를 위한 간편하고도 저렴한 사법적 전치제도도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중재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수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정정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원의 관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정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그 사안 자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액의 객관화, 계량화도 어렵고 정립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14일, 길어야 21일인 심리기간 내에 제대로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에 앞서 중재위원들의 준비가 더욱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재서기도 지금과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 임의적 전치기구인 국가배상심회의의 간사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가 결들여진 정정보도 등의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의 청구가 수반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중재실무와는 아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선호하거나 중재결정에 대한 동의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등 실질적 피해구조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진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내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유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재단하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중재위는 짧은 심리기간의 제약 속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변화에 대비해 나간다면 개정법 하에서도 예상되는 우려를 불식하고 중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원고가 승소한 판결 내용이 널리 보도 되었더라도 피고가 불복한 내용이면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선데이매일’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보석감정회사 「AGTジェムラボラトリー」가 발행원인 매일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의 도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2004년 12월 7일 「기사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매일신문사에 330만엔의 지불과 ‘선데이매일’ 차례 면에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한 1심 도쿄지법 판결(2004년 3월)을 지지. 매일신문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상고가 없어 확정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선데이매일’ 2002년 4월 22일 호 기사. 「조작적 “속임표시” 적발」등의 제목으로 AGT가 ‘다이아몬드’ 감정서에 기재한 독자표시(獨自表示)는 국내규정보다도 낮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실제보다 고가로 판매하는데 악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만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신문사측은 「1심 판결 내용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므로 사죄광고의 필요성은 없어졌으며 배상의 필요성도 대폭 감소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판결을 보도한 각지(各紙)의 기사는 매일신문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1월 18일자)

□

현직경찰관의 ‘스토커’ 혐의를 고발한 여성의 얼굴사진을 방영한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일본의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 산하의 「방송과 인권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BRC)는 2004년 12월 10일 경찰관에게 ‘스토커’ 행위를 당했다는 여성이 「名古屋TV가 약속을 위반하고 ‘얼굴 방영(放映)’을 했다」고 신청한 사안에 관해 「방송윤리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BRC의 결정은 15사안(事案) 24건째이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은 5건째이다.

이 여성은 ①경찰서에 피해계를 제출했을 때의 인터뷰에서, 동 TV가 얼굴을 노출시켜 방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고 ②윤리성이 결여된 보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동 TV측은 인터뷰 때 얼굴을 방영하는데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RC는 얼굴 방영의 승낙유무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 판례를 근거로 검토를 한 결과, 동 TV의 보도는 현직 경찰관의 ‘스토커’ 혐의를 고발한 공익을 도모할 목적의 내용으로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판

단했다.

보도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취재는 사람을 속이는 수법이나 불공정한 수법이 아니어서 방송윤리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취재하여 방송하기까지 3일간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중한 배려가 바람직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1월 18일자) 二

광고 게재에서 신문사는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를 조사·확인할 의무 없다”

2001년에 경영이 파탄된 저당증권회사 「大和都市管財」가 판매한 저당증권의 구입자 280여명이, 파탄 직전까지 동사의 광고를 게재해온 中日신문사에 대해 「파탄에 이른 사실을 알면서 광고를 게재했다」고 구입대금의 일부로 총 1억9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名古屋지방법원 민사5부는 2001년 12월 9일 「일본코-호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1989년)을 인용, 「中日신문사는 독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大和都市管財」는 그룹회사와 일체가 되어 출자법 위반의 의심이 가는 수형상법(手形商法)을 이용하는 등 결국 파탄을 면할 수 없는 경영내용이었다.

1997년 10월 31일에는 대장성 近畿재무국(당시)

이 현장조사 끝에 저당증권 구입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른 신문 등에서 보도되었다. 中日신문은 1997년 이후 파탄 직전까지 동사의 광고를 총 109회 게재했다.

원고측은 「광고내용이 과대표현되고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데도 진실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저야할 의무에 대해 「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독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관시한 「일본코-호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신문사측에 「특별한 사정」이나 「손해예견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했다.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中日신문은 93년 ‘大和都市管財’의 저당증권이 타사와 비교하여 이자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사명(社名)을 숨기고 지적인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나, 동사는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불과 원금의 상환을 계속하고 있어 과대표시라는 의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동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도 「동사의 저당증권 등록에 관해, 유효기간의 갱신과 갱신의 보류라는 사실에서는 近畿재무국이 동사를 재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신문사에 광고에 관한 불평·불만이나 ‘클레임’이 들어

온 사실도 인정될 수 없어, 과탄할 우려가 있다고 신문사측이 판단하는 일은 어려웠다"고 인정했다.

(신문협회보 2004년 12월 14일자)

□

객관적 사실이 결여된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은 광고주와 원안대로 게재한 매체의 공동책임

허위광고 게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화장품제조회사 「粘土サイエンス」(이하 '점토사'로 한다) 등이 광고주인 화장품판매회사「クラブフレージン」(이하 '클럽'로 한다)와 中部경제신문사를 상대로 총 6백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15부는 2005년 1월 25일 「게재된 광고내용은 모두 진실이라는 '클럽'사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클럽'사의 광고를 中部신문이 그대로 게재했기 때문에 양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고 판단. 양피고에게 모두 2백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2003년 4월 25일자 지면에 게재된 문제의 광고는 '멀티상법'(다단계판매방식의 속칭)으로 화장품 판매를 해온 '클럽'사가 화장품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점토사'와의 거래정지 이유에 관해 「'점토사' 사장이 '클럽'사의 사원에게 '클럽'사를 비방증상하는 발언을 되풀이하는 등 '클럽'사 탈취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게재했

었다.

中部경제신문사측은 「'클럽'사가 제작한 광고를 그대로 게재했으며 광고내용까지는 체크하지 않았다. 원래 이러한 광고의 게재는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2월 1일자)

□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제도 도입예정"

아일랜드에도 신문평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더블린에서 개최된 사생활보호법 관련 회의에 참석한 맥도웰(McDowell)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것으로, 그에 따르면 신문평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명예훼손법 수정안이 2004년 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는 이 법에 따르면 신문평의회는 정부가 아닌 독립된 절차에 의해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평의회는 언론사, 기자, 언론사 소유주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언론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적 소송이 아닌 신문평의회를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맥도웰은 앞으로도 언론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보도하거나 논평할 권리를 갖게 되며, 반면 신문평의회는 부정확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4년 10월 29일자)

□

소송비용 없는 명예훼손 판결 언론자유 위협

AP, BBC 등 영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손해 배상금도 없고, 소송비용도 없는” 현재의 명예훼손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의회에 경고했다.

정부 조사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사들은 현재의 사법 체계가 표현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판결 경향을 악용, “손해 배상금도 없고, 소송비용도 없다”면서 사건을 수입하며, 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언론으로 하여금 배 이상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사라 콕스(DJ Sara Cox)는 퍼플지를 상대로 한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5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변호사는 소송비용으로 27만 2천 파운드를 언론사측에 요구했다.

MGN지 법조면 책임자인 마커스 퍼팅튼(Marcus Partington)은 “현재의 사법 체제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오직 변호사들만이 수입을 두 배로 늘릴 것이다. 변호사들이 손해 배상금도 없고 소송비용도 없다면 사건을 수입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체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두 배로 늘리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4년 10월 1일자)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판사의 느낌에 달려 있어”

신문 산업은 상당히 위험한 산업이다. 특히 런던의 상업금융지구에 있는 기관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이는 언론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런던 증권사인 콜린스 스투어트 툴릿(Collins Stewart Tullet)사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상대로 230만 파운드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요구된 사상 최고의 금액으로, 이로 인해 영국 언론계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담당 판사인 터전헛(Tugendhat)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파이낸셜 타임즈는 물론 영국의 전 언론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만약 원고의 주요 주장들이 인정되었다면, 언론의 보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그 결과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해당 기업들 모두가 언론을 상대로 대법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콜린스 스투어트 툴릿사는 부당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전직원이 제기한 해고부효소송 항소심 관련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했다며 수천 파운드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문체의 기사로 콜린스사의 주식은 조금 떨어졌지만, 두 개의 경쟁사의 주식이 상당히 올랐다는 사실을 들어 이와 같은 금액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터전헛 판사는 “이와 같은 금액의 손해 배상액

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또한 원고측의 주장을 손해 배상액 산정의 법률 기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리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고려, 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많은 판례들을 연구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소송에서 완벽하게 이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콜린스사가 거래상의 손실을 이유로 37만 파운드를 요구한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는 확실히 중요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명예 훼손 소송에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이고 사법적인 시도들이 있었다. 인과 관계를 입증하고, 그 입은 손해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는 사건에 대한 판사의 인상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많은 판사들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이번 소송에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 명예 훼손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더전했 판사는 아마도 독단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결정했을 것이다. 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Press Gazette 2001년 11월 5일자)



“‘정보공개법 2000’은 언론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은 모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물론 법에서 공개를 금지한 정보는 예외이다.

정부 내에서 정보공개와 그에 책임을 지는 분화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2000’은 언론인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정보공개법은 MI5, MI6, 그리고 GCHQ와 같은 비밀 문건을 다루는 기관의 정보와 비밀 정보, 개인 정보 그리고 의회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요구한 정보의 존재 여부조차 답해 줄 의무가 없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공적인 업무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정보에 관한 예외규정이다.

안보, 국방, 국제관계, 무역비밀, 행정부의 정책, 환경 등 광범위하게 정보공개 금지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비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정보공개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의 금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슬러(Chancellor)경과 펠코너(Falconer)경은 정

보의 자유가 모든 것을 위한 자유가 아니란 사실을 명확히 했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들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공공기관들이 기관 내에서의 정보공개 문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펠코너경의 입법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언론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자에게는 공공기관의 세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기자에게 주어진 정보와 인터뷰 내용은 보도에 앞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접할 수도 있고, 사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나 기자가 요구한 특별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공개를 금지한 비밀 정보일 수도 있다.

정보공개는 양날을 가진 칼이 될 수도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직 시간만이 정부와 언론이 이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말해 줄 것이다.

(Press Gazette 2004년 12월 10일자) □

“공공기관들은 본연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경우, 정부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법무부장관 펠코너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기관은 600파운드 이상 또는 사흘 반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를 포함한 공

공기관들은 450파운드 또는 이를 반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공공기관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청구권자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지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에 450~600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청구권자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금액 이하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문화부장관인 배로니스 애시튼(Barones Ashton)은 “우리 정부는 그 동안 학교, 병원, 경찰과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요구할 경우 무료로 이를 공개해 왔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그것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그 정보를 원상복귀시키는 데 얼마가 드는가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들은 450~600파운드 이하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우송료, 복사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비용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할 경우, 정보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2000은 2005년 1월에 효력이 발생하며, 100,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 법률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Press Gazette 2004년 12월 17일자)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간관계인들 간익을 위하여
이용할 때는 가주석·가광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단체가 정부예산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55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 승 광)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4. 12. 2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공무원 ‘그들만의 골프장’ 곳곳에』 제하
의 기사 (2004년 12월 8일자 5면)

내 용 : 정부 예산은 엄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지만 그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들을 위한 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원 복지와 수익성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전국 곳곳에 골프장
을 짓는가 하면 청사 건물도 갈수록 대형화·고급화
하고 있다. (중략)

정부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는 기관도 앞

다튀 골프장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경
기 남양주에 골프장을 짓고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내년 1월 제주도에 골프장을
착공한다. 36홀 골프장(뉴서울)을 소유한 한국문화예
술진흥원도 2007년쯤 경기권에 또 한 곳의 골프장을
지를 계획을 갖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 지난 2004년 12월 8일자 5면 『공무원,
그들만의 골프장 곳곳에』 제하의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공제회는 법률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
로서 군인공제회가 추진하는 제반사업에 정부의 예
산을 지원받았거나 또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군인공
제회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
설 중인 남양주 골프장에도 정부 예산을 전혀 사용하
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8일자 5면 『공무원, 그들만
의 골프장 곳곳에』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군인공제회

는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남양주에 건
설중인 골프장은 정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
다고 밝혀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
신문 2005년 1월 14일까지 5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
되, 제목활자 크기(알립니다)는 중재대상 기사의 소
제목(낭비되는 ...) 크기로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중
재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4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조달청중앙보급창이 가구물품의
조달과정에서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55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조달청중앙보급창 (장장 이 영 관)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4. 12.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정부조달서도 중기(中企)는 찬밥』 제하의
기사 (2004년 12월 14일자 A16면)

내 용 : 조달청이 행정물품(정부조달 물품)을 구매

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대하기보다 간편한 방법으
로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구 업종으로 퍼시스, 한국OA,
리바트, 보루네오 등 가구업종 대기업들이 2001년부터
조달청 산하 기관인 중앙보급창을 통해 행정물품 공급
업체로 참여하면서 중소기업들 입지를 좁히고 있다.

퍼시스는 2001년부터 정부조달물품 공급업체로 등
록해 현재 260여종을 납품하고 있으며 리바트는 2002
년부터 시작해 책상, 파티션 등 250여 종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조달 가구 물품중 60~70%를 가구
분야 대기업 4개사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데다 매년 공급 물품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행정물품으로 선택받기 어렵다는 점이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4년 12월 14일자 16면 『정
부 조달서도 중기(中企)는 찬밥』 제목의 기사에서 조
달청이 행정용품(정부조달물품)을 구매하면서 “중소
기업제품을 우대하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중소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조달 가구물품 중
60-70%를 가구분야 대기업 4개사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우수한 제
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행정물품으로 선택받기 어렵
다”, “정부조달서도 중기는 찬밥이다”라고 보도하였
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2004년도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 전체 공급실
적은 총 1,528억원 상당이며 이중 가구업종 대기업

이라고 보도한 4개사 실적은 약 408억원(26.7%) 상당이므로 “가구업종 대기업 4개사가 60~70% 공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기관이 스스로 우수한 물품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용품 선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용품 선정기준은 신청업체의 규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제품이 행정용품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있으며, 이런 기준에 의하여 행정용품으로 선정된 가구업체는 '04년 11월말 기준으로 올해에는 21개 업체가 신청하여 그 중 21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업체 모두 중소기업이며 또한 약 87.5%의 선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행정물품으로 선택받기 어렵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정정한다.

한편, 보도된 가구업종의 경우 조달청은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단계적 수의계약 형태로 중소기업 등과 선량 계약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기관이 우수한 가구류를 선택하기 위한 행정용품 선정업체도 모두 중소기업(보도에서 인용한 퍼시스 등 4개사도 중소기업 업체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조달서도 증기는 찬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분
- 본문 : 12월 11일자 16면 “정부조달서도 증기는 찬밥”기사와 관련, 조달청은 정부조달 가구 물품 중 이른바 가구분야 대기업 4개사(퍼시스, 한국OA, 리마트, 보루네오)가 그 병의로 지점 공급한 비율은 2004년의 경우 전체물량의 28%정도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중소기업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5년 1월 10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반론보도분』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13일자 A1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관세청이 퇴직한 직원들이 주축이 된 '관우회'에 세관 통관 절차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전관세우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관세청 (청장 김 용 덕)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1.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Y T N : 「현장24」 프로그램 (2004년 12월 27일)

내 용 : ▷ 앵커 :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세관의 통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관 절차는 관세청의 퇴직 공무원들이 주축인 ‘관우회’라는 조직이 수 십년동안 대행해 왔는데요.

‘전관세우’ 특혜 속에 한 해 ‘수 십’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략)

▷ 기자 : 관우회는 부산과 목포 등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독점으로 검사하고 운반비와 보관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도 비슷합니다. 역시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턱없이 낮습니다. 이 인도장이 한 해 동안 인천공항사에 내는 임대료는 1억8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특혜 속에 면세점 인도장은 지난달 한국면세점협의회라는 조직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장은 세관장을 지낸 이 모씨가 내정됐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관세청은 YTN 2004년 12월 27일 07:09, 17:22, 20:45 「현장21」 프로그램 '아직도 전관예우'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관우회」는 민법 제32조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2004년 12월 현재 총원 326명 중 관세청 퇴직 공무원은 7명에 불과하여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아니며, 관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지 않다.

통관절차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에 의한 수입신고→세관 공무원에 의한 심사(검사)→세금납부→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등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과정에도 「관우회」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

「관우회」가 화물관리인인 인천공항 지정장치장의 운반 및 경비료는 타 보세창고보다 저렴(약 70% 수준)하며, 2004년 2월 10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04년 10월말까지 약 3억원의 적자상태에 있다.

또한,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공항사에 납부하는 면세점 인도장의 임대료 및 영업료는 2004년 기준 20억 7천여만원이며, 이는 한국면세점 협회와 인천공항 공사가 계약하여 결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2004년 12월 27일 07:08, 17:22, 20:45 「현장21」 '아직도 전관예우' 제하의 보도에서 "통관절차를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축인 「관우회」에서 수 십 년 동안 대행해 왔고, 한 해 수입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사업이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독점으로 검사하고,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깊숙이 관여하여 면세점 인도장이 한 해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는 1억8천여만원에 불과하여 턱없이 낮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관세청은 퇴직 공무원들이 주축인 관우회가 통관절차를 대행하면서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지난 12월 27일 YTN보도와 관련해 관우회에 화물관리인의 업무를 지정했을 뿐 특혜는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YTN 「24시 뉴스」 프로그램에 2005년 1월 26일까지 방송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YTN : 「24시뉴스」 프로그램 (2005년 1월 21일 17: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외국인선수 영입비리를 입증할 자료를 구단이 갖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정 용 철
피신청인 : 한 겨 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1.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단돈 10원도 안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04년 12월 15일자 36면)

내 용 : “나와 내 두 자식의 목숨을 걸고 단돈 10원
한 닢 받지 않았다. 내가 뒷돈을 챙겼다면 당연히 교
도소로 가야 한다.”

일주일여 침묵을 지키던 이장수 전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난 13일 전남구단의 정
용철 홍보팀장이 이 감독의 비리 연루를 주장하는 발
언이 <인터넷한겨레>에 게재되자 이 감독은 이날 밤
긴급 인터뷰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홍보팀장
은 이 기사에서 “이 감독이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에
서 비리와 연관돼 있다는 자료를 구단이 갖고 있다.
검찰과 인권위 등 외부기관의 조사가 끝날 즈음 공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4년 12월 15일자 36면 『“단
돈 10원도 안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전남구단의
홍보팀장이 “이 감독이 외국인 선수 영입과정에서 비
리와 연관돼 있다는 자료를 구단이 갖고있다. 검찰과
인권위 등 외부기관의 조사가 끝날 즈음 공개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홍보팀장은 비리연관자료를

구단이 갖고 있다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검
찰고소와 감사가 끝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해 12월 15일자 36면 기사 중 정용철
전남드래곤즈 홍보팀장이 “이 감독이 외국인 선수 영
입과정에서 비리와 연관돼 있다는 자료를 구단이 갖
고 있다. 외부기관 조사가 끝날 즈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씨는 검찰 등의 조사가 끝
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을 뿐 비리연관자
료를 구단이 갖고 있다고 말한 바는 없다고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5
년 1월 24일자 ‘한겨레’ 스포츠면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24일
자 3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방부가 지난해 군병력 69만여명 중 9천명을 비밀리에 감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시건번호 : 2005서울중재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웅)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국군, 비밀리에 병력 줄였다』 제하의 기사
(2005년 1월 11일자 1면)

내 용 : 국방부가 지난해 군 병력 69만여명 중 9000여명을 은밀히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5000여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며,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력감축 문제를 정밀 검토한 결과 군의 대북억지전력(戰力)에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4만명 이상을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육군 병력을 중심으로 이미 9000여명의 감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같은 계획을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는 병력감축 문제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추진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 지난 1월 11일자 1면 『국군, 비밀리에

병력 줄였다』 제하의 기사는 국방부가 정부 공식 간행물과 국회답변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1월 13일 국방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는 국방정책으로, ‘비밀리에 병력감축을 추진하였다’는 용어는 과도한 표현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비밀리 감축안해”
- 내 용 : 본지 1월 11일자 A1면 『국군, 비밀리에 병력 줄였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방부는 병력 감축 문제는 ‘04년 3월 정부 공식 간행물과 ‘04년 9월 국회 예결위 국방장관답변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비밀리’에 병력감축을 추진하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5년 2월 3일까지 A2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비밀리 감축안해”)는 중재대상 기사의 소제목(“군전력 중대변화” 비공개는 논란 소지)크기로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비밀리 감축 안해”』 제하의 기사 (2005년 2월 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 원고의 주장 기간과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한 불온한 경우 기간판결인의 언론·소위행사, 주소·차량번호 등을 대졸생·유망자라고 표현한 조소현호 원고, 2003가합66450 판결 등 위 인용을 수정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확한 사실적시나 불공정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공적 지위, 표현의 객관적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이탈한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3. 자 판결 (2003가합6645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사가 2003년 7월 28일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 제하의 사실 및 8월 1일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 제하의 기사 등 총 7건의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가·휴일일수가 165-177일이며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임금 구조가 자동차 가격 상승, 협력업체 납품가 하락 및 도산, 국제 경쟁력 하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닌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보도내용 중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165일 또는 177일간의 휴가를 누리면서 연봉을 5,000만원 이상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가 기사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사용가능한 모든 휴가일수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을 부정확하게 과장하여 보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어떤 근로자가 1년에 165일 또는 177일을 휴무하면서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대로 근로대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시간당 고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또한, 재판부는 “휴일수와 시간당 임금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적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들이 휴가일수의 축소 없는 주 40시간 근로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다른 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러한 비판의견은 적시된 사실에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뿐으로서 원고 조합의 규모, 그 사회·경제적 영향력, 원고 조합 자신도 조합원의 임금인상이나 노동

쟁의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중요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 조합으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그 부분 기사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투쟁방향과 관련된 기사 부분과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기사 부분, 주5일제 실시에 관련된 기사 부분, 임금인상에 관련된 기사 부분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다소 부정확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소 불공정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견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합66450 손해배상(기)
원 고 : 현대자동차주식회사노동조합
울산 북구 양정동 700
대표자 위원장 이 현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동 우, 고 재 환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4. 9. 22.

판 결 선 고 : 2004. 11. 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의 1, 2, 갑제9, 12호증, 을제1호증의 1, 2, 4, 을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다음부터 ‘현대자동차’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약 39,000명의 조합원과 90명 정도의 전임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1)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2년도 단체협약이 2003. 3. 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양측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이 조정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2003. 6. 24.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4.8%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원고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부분과업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7월말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마저 겹쳐 업무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03. 7. 30.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도 며칠간 부분과업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2003. 8. 5.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되었다.

(2) 합의 내용(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협약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다)

(가) 임금에 관련된 내용

기본급을 98,000원 일괄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금액을, 2003년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금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나) 근로시간에 관련된 내용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3. 9. 1.부로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경영참여에 관련된 내용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피고의 보도 내용

(1)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사설에 “현대차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부터 ‘제1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부분파업이 5주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중략) 현대차 노조는 해외투자자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사용차측에 요구하고 있다. 생산공장을 국

외로 옮길 경우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투쟁에 나서면 나설수록 기업은 밖에서 활로를 찾게 된다. 노조의 비합법투쟁은 결국 일자리를 제 손으로 없애는 ‘자해행위’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중략) 평균임금이 5,400만원(14년 근속 생산직)인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 기업문턱이 닳도록 직장을 찾아해매는 젊은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차 노조는 노조 전임자 숫자만 100명에 달한다. 이 사람들은 회사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조 일만 하면서 봉급을 타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런 노조가 임금협상은 뒤로 미뤄놓고 주5일제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공장 망한 뒤 월급 오르면 무엇하냐”는 소속 노조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쟁업체인 일본 도요타의 노조는 지난해에 창사후 최대라는 11조원의 경상이익을 올렸는데도 회사측과 기본급 동결에 합의했다. (중략) 회사가 생존해야 고용도 있는 것이라는 너무도 뻔한 이치를 도요타 노조는 알고 있고, 현대차 노조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2) 피고는 다시 2003. 8. 1. 조선일보 사설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부터 ‘제2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전략) 그 동안에도 협력업체들은 현대차 노조가 극렬투쟁을 벌일 때마다 그 대가를 대신 치러왔다. 현대차 생산직 직원의 평균연봉은 5,40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협력업체들은 현대차가 고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매년 5-10%씩 납품가를 내려야 하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결국 현대차 노조원 3만 8,000명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는 20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의 배부른 투쟁이 바로 이들 20만명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후략)」

(3) 피고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2003. 8. 7. 조선일보 1면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 남 165일·여 177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다음부터 ‘제3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득권을 저하하지 않고 주5일 근무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현대차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휴가일수가 1년의 절반에 육박하는 남자 165일, 여자 177일(울산공장 노조원 기준)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 근로자들의 휴일·휴가일수 165~177일은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추석·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한 것이며 여기에 여직원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가 추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실제로 직원들의 휴일·휴가일수는 남자가 170일, 여자가 182일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70~182일은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평균 21일, 약정 휴가 11일에 평균 경조 휴가, 조합원 교육시간, 임단협 타결 시 찬반투표, 대의원선거 등에 따른 비근로일수 5일을 더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휴일·휴가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연월차 휴가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휴일·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중략)”이라고 말했다」

(4) 피고는 같은 날 조선일보 4면에도 “현대차 1인당 연 1,000만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원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해설 기사(다음부터 ‘제4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타결로 현대차 직원들은 올해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중략) 올해 1인당 평균연봉 증가액이 약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9만 8,000원 인상, ▲성과급 200%(통상임금 기준),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통상임금 기준)+현금 1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측이 밝힌 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약 200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임금 상승분을 계산할 경우 우선 기본급이 연간 120만원(9만 8,000원×12개월) 정도 오른다. 여기에 성과급 4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200%)을 더하고,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3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100%)와 현금 100만원)을 합하면 82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임금 삭감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현재 주 42시간 근무가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특근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올해 1인당 평균연봉 증가액은 약 1,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현대차의 일반직·생산직·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은 4,600만원 수준이다. (후략)」

(5)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26면 만물상 코너에서 다음과 같은 박스 기사(다음부터 ‘제5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세계에서 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1940년대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프랑스에선 근로시간이 주 35시간까지로 줄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연간 휴일은 145일에 이르고 신년 휴가 같은 약정 휴가를 더하면 150일을 훌쩍 넘긴다. 프랑스 사람들이 ‘도시가 텅 빈다’는 뜻의 ‘바캉스’를 한꺼번에 5주씩 즐기는 것도 그 덕분이다. (중략) 프랑스가 지닌 세계 최다 휴일기록이 엇그제 한국 울산에서 깨졌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5일 근무에 합의하면서 1년에 남자근로자는 165일, 여자는 177일까지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충분히 늘면서 충분히 월급을 받는 지상천국을 우리 근로자라고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부럽다’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경영여력이 넘치면 차 값부터 내려라”는 야유가 인터넷에 쏟아진다 (후략)」

(6) 피고는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다음

부터 '제6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전략) 현대자동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 협상 결과 현대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다. 평균연봉도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렇고 도 시시각각 흥망성쇠가 판가름나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그건 턱없는 욕심이고 순진한 기대다. 국민들은 현대차 노사가 차려놓은 이런 흥청망청 질펀한 잔칫상이 소비자들과 하도급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략) 현대차 노조의 성공에 한껏 고무돼 있는 노동계는 여세를 몰아 현대차 수준의 주5일제 도입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기업들이 노동계의 공격에 줄줄이 무릎을 꿇는 순간 이 나라 경제는 바닥없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다 (후략)」

(7) 피고는 계속하여 2003. 8. 9. 조선일보 27면 오프니언면에 이준 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의견 기사(다음부터 '제7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철밥통이 따로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얘기가 아니다.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로 임단협을 끝낸 현대자동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구조조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어졌다. 노조의 동의없이 단 한 명도 해고할 수 없고, 해외 공장이전을 이유로 국내 공장을 폐쇄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신기술·신차종 개발도 노조에 사전 통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중략) 현대차의 임단협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회사가 뿜은 건적서에 따르면 (중략) 대략 7,0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략)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도 현대차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회사측은 "비용상승 요인을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 흡수하겠다"고 말한다. (중략) 결국 생산

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은 불가능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른 돌파구는 뻔하다. 자동차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깎아 협력업체에 돌리는 것이다. 현대차가 예전부터 즐겨 써온 방법이다. (후략)」

2. 판 단

가. 판단의 기준·범위

(1)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1, 37531 판결 등 참조), 그 의견이 전제된 사실로부터 유리되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그 전제된 사실에 대한 공익성 또는 진실성 판단과 별도로 그 의견자체의 당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견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언론사는 일반인과 달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를 소유하고 있어 독자들의 의견형성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의견을 표현하는 기사나 논설 등을 게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성할 책무가 있고, 특히 현대민주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사이에서 의견의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방향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기 앞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리거나

그러한 의견을 가진 측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태도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론의 책무는 도의적인 것으로서 법적으로 강제할 성격의 것은 아니며 언론사의 의견표명이 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러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여기에서 독자들의 평가대상은 그 의견의 내용 자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알리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즉 공정한 태도로 보도를 한 것인지 여부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제 1 내지 7의 각 기사는 원고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을 목표로 한 부분과업이 막바지에 이른 2003. 7. 28.부터 2003. 8. 5.자로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 합의가 타결된 직후인 2003. 8. 9.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게재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장노조인 원고의 활동의 당부를 평가하고 그 활동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그 내용을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제1, 2 각 기사)와 그 후의 기사(제3 내지 7의 각 기사)로 나누어 각 기사의 내용별로 그 전제된 사실이 명예훼손적인 것인지 여부, 그러한 경우 그 적시된 사실에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피고의 의견이 원고에 대하여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

피고는 그 각 기사에서 원고의 투쟁 방향이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 수준 등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부분

(가) 피고는 제1 기사에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시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장기간 과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는 '자해행위'라고 평가한 데 이어, 원고의 전입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면 '그런 노조가 임금협상보다도 주5일제나 비정규직 같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부분은 논설 형식의 의견기사로서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외투자에 관한 동의권 행사요구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과업은 정의행위의 허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때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해외투자가 위축되어 수익창출과 고용의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위하여 존재해야 할 원고가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의 비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집착하는 등 노조 본연의 존재의의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그 자체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원고를 지나치게 모멸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기사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노동조합

에 헌법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부여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구조적 요소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의 재산권을 다소간 제약하거나 경제성장과 충돌하더라도 그것은 근로3권의 본질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 대표와 동수의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일정한 경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의·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근로만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원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그 수단도 폭력이나 파괴를 동원하지 않은 부분파업이어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는데도 위 기사에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거나 원고의 요구조건이 단체협약사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원고의 쟁의행위를 '비합법적'이라고 표현하였고 원고 전입자 수의 과다여부는 전체 조합원수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도 단순히 100명에 이른다고 함으로써(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는 90명 정도이나 이를 10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소한 과장에 불과하다) 원고가 근로조건 개선에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투쟁을 일삼는 자기목적적인 조직인 것처럼 비추어지게 한 데서 나아가, 원고가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개선과 같은 사안 또는 일정 범위의 경영에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는 것은 그 목적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임에도 원고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위와 같은 노사관계의 당위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현실의 경제상황이나 경제성장의

논리만을 강조한 불공정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다만 원고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행동'의 예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시에 원고와 협의하는 절차 등이 아닌 원고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 것을 들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한 동의권의 부여가 기업주가 갖고 있는 경영사항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2)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부분

(가) 피고는 제1.2의 각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전부터도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14년 근속 생산직원의 평균임금이 5,400만원(제2 기사에서는 '전체직원'의 평균임금을 5,100만원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제1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부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이라는 예를 들고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율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이에 대하여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통해 더 높은 임금을 쟁취하는 것을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하면서 이는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는 행위라거나 그로써 고임금을 쟁취하는 대가를 그 조합원들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나) 그런데 갑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년 2월 당시 현대자동차의 평균 근속연수 14.1년인 생산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임금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금액은 월 2,251,786원이었고, 여기에 법정 변동수당인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합한 금액(원고는 그 수당을 얻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추가근로시간이 평균 월 157.1시간이라고 하고 있다)은 월 3,346,02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는 변동수당을 제외한 경우 2,465,282원. 그 금액을 합산한 경우 월 3,224,391원이다). 그 월 평균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결국 14년 근속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은 약 4,00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기사에서 그 연봉이 5,400만원을 초과한다고 적시한 부분은 부정확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이원화하여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협력업체들 스스로 납품가를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기사의 내용대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임금 상승 요구로 증가된 비용을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로 적시된 사실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기사 부분 역시 논설 형태의 기사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원고 조합원들이 이미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어 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쟁취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임금을 고루 나눠가져야 할 근로자들 중 일부를 실업자 상태로 남아있게 할 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취지로 비난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피고의 의견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을 어떤 비율로 생산

에 참여한 요소들에 분배할 것인지는 전반적인 금리, 부동산·생산설비나 원재료의 가격 및 임금수준과 업계의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한 부분의 생산요소에 돌아갈 몫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생산요소에 돌아갈 몫을 줄이거나 생산제품의 가격을 높여 매출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증가하는 몫을 보전하게 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임금인상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예컨대 자본에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함에 따라 협력업체나 소비자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하여 위 기사는 그 책임을 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 원고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다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단체협약 타결 후의 기사

피고는 그 각 기사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내용과 그로 인하여 파급될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주5일제 실시에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3, 5의 각 기사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가일수증가에 관하여,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직원들의 연평균 휴일·휴가일수가 남자 165일, 여자 17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휴가일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휴가일수는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성·추석·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산한 것(여직원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를 추가 합산)으로서 일단 토·일요일과 겹치

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잘못이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은 사소한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휴가일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2)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

(가) 피고는 제4 기사에서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로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증가액이 약 1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가액수인 1000만원의 내역을 기본급 연간 약 120만원(98000원×12개월), 성과급 4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200%),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30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100%와 현금 100만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증가되는 휴일의 근무에 따른 특근수당 약 180만원으로 설명하고 있다(같은 기사 말미에서는 지난해 현대차의 일반직·생산직·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4000만원 수준이라고도 보도하고 있어 단체협약 타결 이전의 보도에서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5400만원이라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 그런데 갑제16호종의 기재에 의하면 2002년도 단체협약 체결시에 이미 성과급 200%와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15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로 상승된 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임금상승분을 부정확하게 과장하여 보도한 것에 해당하고(다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는 채수당을 합산한 경우 월 3,221,304원으로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52,728원이므로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표현한 것도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제 연봉이나 연봉상승액을 부풀려 보도하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휴가일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부분

(가) 한편 피고는 제6, 7의 각 기사에서는 휴가일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65~177일로 늘어났고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섰다'라고 함께 언급하고 이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의 협상을 '질퍽한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이는 소비자와 하도급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가 그 전철을 밟아 주5일제 도입을 밀어붙이게 되면 이 나라 경제는 수렁으로 갈러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직원이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 데다가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정년보장에 관하여까지 함께 언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는 뜻에서 그들의 지위를 '철밥통'으로 비유하고,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많은 휴일로 인한 비용증가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자동차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깎아 협력업체에 돌리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마지막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기사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165일 또는 177일간의 휴가를 누리면서 동시에 연봉을 5000만원 이상 받는다는 위 기사 내용에서 추론되는 단위 근로시간당 임금은 공장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으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증인 장규호의 증언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생산직 사원들이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중 실제로 휴부를 하는 일수는 평균 (X)일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수는 근무를 함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에 의하더라도

임금인상 전에 변동수당, 즉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평균 급여는 월 2,405,282원으로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28,833,381원에 불과하고, 임금인상분을 포함하더라도 피고가 기사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사용가능한 모든 휴가일수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을 부정확하게 과장하여 보도한 것에 해당한다(피고는 위 기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일수를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용가능한 휴일수를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기사에서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렬적으로 거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다른 부분에도 기사에 언급된 휴일수를 제도적인 휴일수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여 주는 단서나 표현이 없으며, 피고의 다른 기사에서 나타난 보도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치시킴으로써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소지가 없지 않다). 다만 정년이 58세까지 보장된다고 표현한 부분은 2003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현대자동차가 해외 현지공장을 설립하거나 외국회사와 합작할 때에도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은 잘못된 사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어떤 근로자가 1년에 165일 또는 177일을 휴무하면서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취지대로 근로대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시간당 고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다만 휴일수와 시간당 임금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

적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들이 휴가일수의 축소 없는 주 40시간 근로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다른 업체들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러한 비판의견은 적시된 사실에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뿐으로서 원고 조합의 규모, 그 사회·경제적 영향력, 원고 조합 자신도 조합원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쟁의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중요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 조합으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그 부분 기사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이와 같이 사실적시가 비난의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적시된 사실의 객관적인 의미가 표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적인 의미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표현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은 그에 내포된 의견의 작용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연해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에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가 표명한 의견이 그 비판의 당부를 떠나 다소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

일본 판결 1

발굴된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가 날조된 것이며 이 날조에 사립대학의 전 교수가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는 주간지의 기사는 동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 기사로 인해 자살한 동 교수의 유족들에게 총 920만엔의 위자료와 사죄문을 게재하라

항소인 · 피항소인 (1심 원고) : 甲野花子 외 2명

피항소인 · 항소인 (1심 피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川春男 외 2명

福岡고법2003(ㄴ) 제534호, 사죄광고등청구항소사건

2004.2.23 제3민사부 판결, 변경,

원심 大分지법 2001(ㄱ) 제610호, 2003.5.1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항소인 · 항소인 (1심 피고) 등은 연대하여 항소인 · 피항소인(1심 원고) 甲野花子에게 400만엔, 동 甲野 一郎 및 甲野 三郎에게 각각 230만엔씩, 그리고 이에 대한 2001년3월8일부터 지불할 때까지 연 5부의 이자를 지급하라.

(2) 피항소인 · 항소인(1심 피고) 등은 연대하여 피항소인 · 항소인(1심 피고) 주식회사(○) 발행의 주간지 「주간××」에 별지 1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 2 기재의 게재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항소인 · 피항소인(1심 원고) 등의 그 밖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항소인 · 항소인 (1심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해 이를 5등분하여 그 3을 항소인 · 피항소인(1심 원고) 등의, 그 나머지를 피항소인 · 항소인(1심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1)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항소의 취지

1. 항소인 · 피항소인(이하 「1심 원고」로 한다) 등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항소인 · 항소인 (이하 「1심 피고」로 한다) 등은 연대하여 1심 원고 甲野花子에 대해 1,650만엔, 동 甲野 一郎 및 甲野 三郎에 대해 각각 825만엔씩, 그리고

이에 대한 2001년3월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이자를 지급하라.

(2) 1심 피고 등은 연대하여 1심 피고주식회사00(이하 「1심 피고회사」로 한다) 발행의 주간지「주간××」에 <별지 1>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 3> 기재의 게재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2. 1심 피고 등

- (1) 원판결 중 1심 피고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1심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2. 사안의 개요

1. 본건은 1심 피고회사 발행의 주간지에 게재된 기사가 甲野太郎교수(이하 「甲野 전 교수」로 한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甲野 전 교수의 상속인인 1심 원고 등이, 동기사를 집필한 기자인 1심 피고 C(이하 「1심 피고 C」로 한다) 및 편집자인 동 B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근거하여, 1심 피고 C 및 동 B의 사용자인 1심 피고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사죄광고의 게재 및 각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사안이다.

또한 1심 원고 등은 원심에서는 총액 5,500만엔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원심은 그 중 총액 600만엔을 인용) 당심(當審)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총액을 3,300만엔으로 감축하고 사죄광고문의 내용 및 게재장소의 청구 일부를 변경했다(변경한 광고문의 내용은 원심 인용분과 같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등 및 쟁점은 다음과 같이 바뀐 것 외에는 원판결 「제2 사안의 개요」의 1 및 2에 게재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원판결 2쪽 18행의 「초대회장」의 다음에 「1998년」을 추가한다.

(2) 원판결 15쪽 20행의 「제1차 조사단」의 다음에

「및 그 주변의 인물」을 추가한다.

(3) 원판결 15쪽 22행의 말미에 「더욱이 진실성의 증명대상은 『甲野 전 교수가 날조에 관여한 혐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며 『甲野 전 교수가 날조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4) 원판결 16쪽 1행의 「해야만 한다」의 다음에 「이 점, 1심 원고 등이 인용하는 『성악동굴(聖嶽洞窟) 유적 검증보고』는 일본고고학협회의 당사자성(當事者性)에 의거한 제약을 받은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빈약하며 제2차조사단의 연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5) 원판결 20쪽 17행 다음에 줄을 바꾸어 「ヶ 일본고고학협회의 조사위원회에 의한 2003년10월25일자 『聖嶽동굴유적검증보고』에 의해서도 본건 각 기사에 진실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를 추가한다.

(6) 원판결 21쪽 4행의 「F라는 인물과 만나」를, 「甲野 전 교수의 일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인 A씨(이하 「A씨」로 한다)와 만나」로, 동「F씨」를 「A씨」로 각각 고친다.

(7) 원판결 21쪽 11행 및 12행을 「본건은 이른바 뉴스보도는 아니므로, 1심 피고들에게는 본건 각 기사를 게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취재경위에 의하면 1심 피고들은 E, F, G에 대한 간단한 취재만으로 성악동혈(聖嶽洞穴)유적을 날조로 단정하고, 반대사실이 기재된 자료는 권위가 없다고 안이하게 물리쳤다.

또한 A씨에 대한 취재에서도 신용성을 확인하는 입증취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쉽게 할 수 있었던 본인에 대한 취재도 하지 않았으므로, 甲野 전 교수가 단장이던 제1차조사단에 의해 聖嶽동굴유적이 날조되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로 고친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1. 쟁점(1) (본건 각 기사가 甲野 전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

당 법원도 본건 각 기사는 제1차 조사 때 聖嶽동혈유적에서 발굴된 석기가 날조된 것이었으며, 이에 甲野 전 교수가 관여했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 甲野 전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한편 원판결 「제3 당 법원의 판단」의 1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원판결 24쪽의 1행부터 2행까지의 「동 유적으로부터 발굴된 석기는 다른 유적으로부터 발굴된 석기를 미리 묻어두었다고 한 날조」를 「동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는 발굴에 참여한 자 자신이 다른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를 미리 묻어두었다는 날조」로, 「날조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암암리에 준 내용」을, 「날조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암암리에 주고 동시에 더 나아가 그 관여 없이는 날조가 곤란하다는 것까지도 시사하는 내용」으로 각각 고친다.

(2) 원판결 30쪽 3행의 다음에 행을 바꾸어 「1심 피고 등은, 본건 각 기사는 성아도혈유적이 유적으로서 고고학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불과하며 그 이상 甲野 전 교수가 유적의 작출(作出)에 관여했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피고 회사는 甲野 전 교수가 자살한 후에 발매한 「주간××」 3월22일호의 「『성악』 유적의혹 소지(小誌) 취재반은 이렇게 보도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지는 유적이 『날조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기사로 소개했다」고 기재했으며(甲5), 또한 본건 각 기사를 취재하고 집필한 1심피고 C도 「본건 각 기사는 聖嶽유적이 날조된 유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기사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乙27) 동 유적이 날조된 유적이라고 보도했음은 명백하다.

본건 각 기사는 날조자에 대해 명기하고 있지는 않

으나 「날조」라는 말 자체가 유적을 발견한 사람이 날조했다는 인상을 줄 뿐 아니라 D에 의한 구석기 날조사건을 여러 곳에 인용함으로써, 聖嶽동혈유적에서 발견된 석기(石器)도 D사건과 같이 발굴자들이 미리 묻어두었던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또 본건기사 2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언제 『신의 손』을 구사(驅使)했는가」라는 기사에 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甲野 전 교수와 H교수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물론 그들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기재하고, 본건기사3에서는 「(고고학자의 말이라면서) 大分현내에는 현내(縣内)에서 구석기유적을 발견하면 주물을 받게 되고 학술예산도 따른다고 생각하는 고고학자가 많았다. 『성악(聖嶽)의 세석인(細石刃)은 후쿠이동혈(福井洞穴)에서 출토된 것과 너무나 닮았다. … 성악의 발굴 전 △△대학 관계자의 손에는 후쿠이동혈의 세석인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 『△△대학을 발굴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제1차 조사의 책임자이며 △△대학교수였던 甲野 전 교수 (및 H교수)가 날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준 것은 명백하며 1심 피고들의 주장은 채택할 수가 없다」를 추가한다.

2. 쟁점(2) 본건 각 기사의 기술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해

당 재판소도 본건 각 기사의 기술이 진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도 원판결 「제3 당 재판소의 판단」의 2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원판결 30쪽 8행부터 10행까지를 「(1)진기와 같이 본건 각 기사는 『… (중략) 甲野 전 교수가 이 날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보도기관이 이러한 보도를 한 이상 ‘혐의’는 단순한 풍문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혐의를 갖기에 충분한 근거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의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진실성의 증명대상사실은 「성악동혈유적의 석기는 날조된 것이라는 것」 및 「甲野 전 교수가 그 날조에 관여했었다는 혐의를 갖기에 충분한 근거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고친다.

(2) 원판결 30쪽 20행부터 21행의 「성악동혈유적이 날조라는 것 및 그 날조에 甲野 전 교수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악동혈유적의 석기는 날조되었다는 것 및 甲野 전 교수가 그 날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근거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고친다.

(3) 원판결 31쪽 14행의 「1점의 제품 · 박편(薄片)도 채취하지 못했다」를 「2점 밖에 채취하지 못했다」로 고친다.

(4) 원판결 34쪽 11행부터 35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상기코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甲野 전 교수는 제1차 조사 후 곧 발견된 석기의 상황 등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으니 학문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제2차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 그가 제1차 조사의 책임자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석기의 날조에 관여했다고 추인(推認)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진실성의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3. 쟁점(3) 1심 피고 등이 본건 각 기사의 기술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당 재판소도 1심 피고들이 본건 각 기사의 기술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1심 피고 C본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1심 피고 C는 1심 피고회사로부터 성악동혈유적에 대해서도, D에 의한 구석기발굴날조사건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정보가 있으니 취재하라는 명을 받고 취재를 시작했다.

② 1심 피고 C는 상기정보의 정보원인 젊은 고고학자와 통화를 하고 취재원(源)과 자료에 관해 교시(教示)를 받았다.

③ 1심 피고 C는 관련문헌 조사, E부장과의 통화, F씨 및 G교수와와의 면담을 통해 본건기사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다른 고고학자로부터 성악동혈유적의 석기가 부자연스러운 점, 날조의 혐의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④ 1심 피고 C는 사전예약 없이 甲野 전 교수를 선격적으로 방문, 본건기사 1에 그의 담화토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청취했으나 석기에 관한 문제점을 해명하는 분담은 하지 못했다.

⑤ 1심 피고 C는 하루 전에 사전예약을 하고 △△대학 내에서 H교수와 면담, 본건기사 1 기재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청취했다.

⑥ 1심 피고 C의 취재에 근거하여 1심 피고회사 편집부는「성악동혈유적은 날조된 유적」이라는 방침을 결정하고 본건기사 1의 원고를 집필, 게재, 발매했다.

⑦ 1심 피고 C는 동년 2월 하순 A씨로부터, 성악유적의 발굴 전에, 甲野 전 교수가 福井동혈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黑曜石)의 석기를 보여주었다는 등 본건기사3에 △△대학 관계자의 증언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청취, 원고를 초안했다.

⑧ 2월6일 甲野 전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날조를 부인하는 동시에 재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1심 피고 C는 회견도중 퇴장, 끝까지 듣지 않고 원고를 작성하여 본건기사 3이 게재된 3월 15일호가 발매되었다.

(2) 이상에 의하면, 1심 피고 C는 제2차조사단의 부단장이었던 E부장 및 F씨, 제1차 조사 발굴 두골을 채검토한 인류학자 G교수로부터 성악동혈유적 출토품의 부자연스러움에 관해 청취하는 등 원판결의 제3의 2(2)가 인정한 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 유적이 날조된 유적이라는 의문을 갖는 것 자체는 반드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고고학자로서 유적발조의 혐의를 받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심히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사게재의 긴급성·절박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성악동혈유적이 날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甲野 전 교수가 관련한 혐의가 있다는 본건 각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입증조사가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의 제3의 2(2)의 인정사실 가운데 adefgh의 각 사실은, 1심 피고 C가 조사한 문헌에 기재되어 있고 조사하면 쉽게 밝혀질 사실이었는데, 1심 피고들은 이런 사실의 의의에 관해 검토나 조사 없이 (乙27, 원심에서의 1심 피고 C본인) 전적으로 E부장, F씨 및 G교수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고학 관계자의 담화에 근거하여 날조를 단정한 것이다.

그러나 E부장, F씨 및 G교수는 유적에 관한 학문적인 의문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적을 했으나 날조되었다는 판단은 표시하지 않았으며(원심에서의 1심 피고 C본인), 甲野 전 교수나 H교수를 상대로 한 취재는 본건기사 1의 집필 전에 각각 1회 했을 뿐이다.

특히 甲野교수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방문, 이야기를 들었을 뿐 의문점을 해명할만한 문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다시 취재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1심 피고들이 성악동혈유적을 날조된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甲野 전 교수가 관련한 혐의의 근거가 있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4. 쟁점(4) 손해액 및 사죄광고의 필요 여부에 대해

(1) 당 재판소는, 1심 원고들이 본 판결주문 제1항(1)과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甲野 전 교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본판 결주문 제1항(2)와 같은 사죄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본건 각 기사의 게재는 甲野 전 교수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기사의 내용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제1차 조사에서 성악동혈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는 날조된 것으로, 여기에 甲野 전 교수가 관여하고 있었다고 오신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게재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시(說示)한 바와 같다.

또한 기사에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 甲野 전 교수가 자살을 결의하기에 이를 만큼 다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며, 1심 피고회사가 甲野 전 교수의 사후에 게재한 기사내용(甲5)은 자기의 정당성만 강조하여 유족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본건 각 기사는 甲野 전 교수의 사적행위를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날조자로 특정하거나 단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자료는 800만엔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며 상속분에 따라 1심원고 花子가 400만엔, 二郎 및 三郎이 각각 200만엔의 지불을 청구할 수가 있다.

(3) 본건 각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태양(態樣),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 기타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지불반으로는 甲野 전 교수의 명예를 회복할 수가 없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건 각 기사가 게재된 주간지 「주간××」지상에 <별지 1> 기재내용의 사죄광고를, <별지 2> 기재의 게재조건에 의한 게재가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1심 피고들은 1심 원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로 전기와 같이 사죄광고를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별지 1>

고 甲野太郎 △△대학 명예교수에 대한 사죄문

「주간××」2001년1월25일호, 동년2월1일호, 동년3월15일호에서 1955년대에 大分현 성악동혈유적에서 채취된 석기가 날조였으며, 동유적의 발굴조사의 책임자였던 甲野太郎 △△대학 명예교수가 마치 그 날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련의 기사를 게재했으나 이들 기사 가운데 석기가 날조라는 것 및 동교수가 이 날조에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해 고 甲野太郎 △△대학 명예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여 폐를 끼친 데 대해 사죄합니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 乙川春男

주간×× 편집장 B

주간×× 취재기자 C

甲野 花子 귀하

甲野 二郎 귀하

甲野 三郎 귀하

<별지 2>

1. 사용할 활자

(1) 「고 甲野太郎 △△대학 명예교수에 대한 사죄

문」이라는 제목

(2) 본문 : 10.5포인트의 명조체

2. 게재장소 : 광고·그라비아를 제외하고 앞 표지로부터 최초의 페이지

<별지 3>

1. 사용할 활자

<별지 2>의 (1), (2)와 같다.

2. 게재장소 : 광고·그라비아를 제외하고 앞 표지로부터 최초의 페이지 또는 그에 준하는 페이지

3. 게재의 크기(스페이스)

「주간××」의 한 페이지

출처 : 『판례타임즈』 1149호 pp.224~231.

번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일본 판결 2

방송법 4조1항의 정정방송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에게 부가된 자율적 의무에 관한 것일 뿐, 이에 근거해 정정방송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최고재판소 2001(才) 제1513호 정정방송등청구사건

2001(수) 제1508호 2004.11.25 제1소법정 판결

일부기각, 일부파기자판(自判)

원심 도쿄고등법원 1999(未) 제502호

주 문

원판결 주문 제1항2를 파기한다.

전항의 부분에 대해 피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고인의 다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을 상고인의, 나

머지를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대리인 米倉偉之 외의 상고수리신청이유 제1의 2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피상고인과 A의 이혼 경위

(가) 피상고인은 1972년 10월 A와 결혼, 장남(1974년생)과 장녀(1977년생)를 낳았다. 피상고인과 A와의 혼인관계는, 1979년경부터 A가 전근에 따른 불만으로 가족들에게 마구 화풀이를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다니는 등 방자한 생활을 계속하는 한편 피상고인이 말을 걸어도 성실하게 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상고인에게 짓궂은 행동을 되풀이함으로써 점차 혐악한 관계가 되었다. 이에 피상고인은 1987년 3월 A에 대해 이유를 들어 이혼하고자 했다.

(나) 그러나 A는 그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아 1988년 7월경부터 양자간에는 대화가 끊겼으며 용건은 서로 메모로 하게끔 되었다. A는 스스로 희망하여 1988년 8월부터 1990년 7월까지 단신으로 부임하여 주말에만 귀가했으며 단신부임이 끝난 후에도 양자의 가정내 별거상태는 계속되었다.

(다) 피상고인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89년 12월경 이혼을 결심하고 A에게 앞으로는 제3자를 통해서만 이혼문제를 얘기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 친척을 통해 상담해도 A는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A는 그 후 1991년 7월경 피상고인에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뜻을 표명하고 동년 11월에는 재산관계 서류를 자택에서 들고 나가 이혼에 대비했다.

(라) 피상고인은 199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

며, A와의 동거를 원하는 장남을 남겨두고 장녀와 함께 아파트로 옮겨, 1993년 2월 A와 조정이혼을 했다.

(2) 본건방송과 그 개요

(가) 상고인은 1996년 6월 8일(토요일) 오전 8시 35분부터 NHK종합텔레비전 프로그램 「생활ほっとモニタリング」에서 「처로부터의 이연장(離縁状) · 갑작스런 이별에 당황하는 남편들」이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본건방송」으로 한다)을 했다.

본건방송은, 중·노년이 되어 이혼을 경험한 남녀 각 2명을 등장시켜 이들의 발언과 삽입된 '나레이션'으로 각자의 이혼사례를 소개하는 사전수록부분과 사회를 보는 2명의 아나운서와 3명의 게스트가 사전수록부분을 본 소감과 의견을 말하는 등 이혼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스튜디오'로부터의 방송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A는 사전수록부분에 출연, 피상고인과의 이혼 경위에 대해 설명했는데, 50대의 남성으로 대기업의 관리직이라고 소개되면서 그 이름이나 구체적인 직장이 소개되지 않았으나, 본건방송에서는 A 및 그 장남의 얼굴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다) 본건방송은 제1심판결 별지3 기재와 같은 방송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나레이션'과 이어 이어지는 A의 발언부분에 의해 ①A는 결혼 21년만에 갑작스레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이혼을 했으나 이혼 후 4년이 지나도록 부인이 왜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다 ②A의 부인은, A에 대해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③A의 부인은, A가 직장일로 심야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조해 하면서 A의 행동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사소한 조건을 붙였으며 A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조차 회피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④A의 부인은, 미리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마친 후 사소한 이혼이유를 들어 이혼을 강요했으며 A는 부인이 내세우는 이혼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혼에 응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항을 방송한 것이었다.

2. 피상고인은 상고인에 대해, 본건방송은 A와 그 부인이었던 피상고인과의 이혼경위와 이혼원인 등에 관해 진실이 아닌 사항을 방송하여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 민법 709조, 710조에 근거한 위자료 등의 지불과 동법 723조에 근거한 사죄방송 및 방송법(이하 「법」으로 한다) 4조1항에 근거한 정정방송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피상고인의 상기 청구 가운데 민법 723조에 근거한 사죄방송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원판결에서 청구를 기각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피상고인으로부터 불복신청이 없었으므로 상기부분은 당심(當審)에서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3. 원심은 피상고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정방송청구를 인용했다. 원심의 판단 가운데 정정방송청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본건방송에서 방송된 상기 1(2)(다)①부터 ④까지의 각 사항은 진실이 아니다.

본건방송에서는 A 및 그 장남의 얼굴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므로, 이것이 피상고인의 남편 또는 자식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본건방송을 보고 있으면 용이하게 본건방송이 피상고인과 그 남편과의 이혼문제를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어, 본건방송은 피상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건방송은 피상고인이 남편인 A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이 결여된 여성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 4조1항의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로 그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방송사업자에 대해 정정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방송사업자가 청구를 받고도 정정방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해 그 실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상고인은, 본건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방송의 청구를 했으므로 상고인은 피상고인에 대해 본건방송을 한 방송설비와 동등한 방송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전기 1(2)(다)①부터 ④까지의 각 사항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는 내용의 정정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그 방법은, NHK총합텔레비전 프로그램 「생활(ほつとモニング)」의 토요일 방송시간대 등에서 원판결 별지 기재의 문장을 2회 반복하여 읽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상당하며, 법 4조1항, 56조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정정방송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만 한다.

4. 그러나 원심의 상기 3(2)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 4조는, 방송사업자가 진실이 아닌 사항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본인 또는 그 직접관계인(이하 「피해자」로 총칭한다)으로부터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있을 때는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방송을 한 사항의 진실여부를 조사하여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판명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방송을 한 방송설비와 동등한 방송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하는 방송(이하 「정정방송 등」으로 총칭한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1항)고 했으며,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에 관해 진실이 아닌 사항을 발견했을 때도 상기와 같은 정정방송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56조1항은 법 4조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4조1항은, 진실이 아닌 사항의 방송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방송 등의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나 이 청구나 의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법의 전체적인 틀과 취지에 입각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면에서 볼 때, 법 1조는 「방송이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되어 그 효용을 갖도록 보장한다」(1호), 「방송의 불편부당(不偏不黨), 진실 및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한다」(2호), 「방송에 종사하는 자의 직책을 명백히 함으로써 방송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한다」(3호)고 하는 3개의 원칙에 따라 방송을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규율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2조 이하의 규정은, 이 3개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 3조는 상기의 표현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율성 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방송프로그램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근거한 경우가 아니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거나 규제되지 않는다」고 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별도로 법률에 정한 권한에 근거한 경우가 아니면 방송프로그램 편집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법 4조1항도 위에서와 같은 규정을 수용, 방송의 자율성 보장의 이념에 입각하여 진실성 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법 4조1항 자체를 보더라도 방송한 사항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방송사업자에 의해 판명되었을 때 정정방송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가하고 있을 뿐이며, 정정방송 등에 관한 법원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동항 소정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동항(同項)은 진실이 아닌 사항이 방송되었을 경

우 방송내용의 진실성의 보장 및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정정방송 등을 하는 것을 국민전체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로서 정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정정방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에서와 같이 법 4조1항은 피해자로부터의 정정방송 등의 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2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이는 동 청구를 방송사업자가 당해방송의 진실성에 관한 조사 및 정정방송 등을 하기 위한 단서(端緒)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사법상의 청구권의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법 4조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정정방송 등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이상에 의하면 법 4조1항에 근거해 정정방송을 명한 원심의 전기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다. 논지(論旨)는 이유가 있으며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원 판결 주문 제1항2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에서 설시(說示)한 바에 의하면 피상고인의 정정방송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동항2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피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피상고인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수리신청이유가 상고수리의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http://courtdomino2courts.go.jp>』
번 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독일 판결

오로지 광고료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일간신문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공정경쟁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당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기본법 제5조 1항 2문

판결요지

시장의 법칙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건대 광고수입만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일간신문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가 현재 유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의 판매량 및 그 정기구독자의 수를 감소시켰다 할지라도 무가치의 배포행위가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확립된 독립성의 원칙은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유료로 배포되는 신문 및 그 정기구독이 완전히 광고수입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신문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금지한다.

연방대법원(BGH) 2003년 11월 20일자 판결 - I ZR 151/01 (지방상급법원 Koeln)

• 원고, 항소인, 상고인: "Koeln Stadt-Anzeiger", "Koelnische Rundschau", "Express"라는 신문명을 가진 일간신문의 발행인

• 피고, 피항소인, 피상고인: 무상으로 배포되는 "20 Minuten Koeln"라는 제하의 일간신문의 발행인

사실관계

원고는 "Koeln Stadt-Anzeiger", "Koelnische Rundschau" 및 "Express"라는 이름을 가진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Express" 일간신문은 연예오락지이며 인접지역인 Koeln과 Bonn의 두 도시에서 약 253,000부가 발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Axel Springer 출판사가 "Bild"라는 제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여 이들과 경쟁하고 있다. "Bild" 일간신문은 매일 약 85,000부가 이 지역에서 발간된다.

피고는 노르웨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매디언 콘체른의 독일 자회사이고, 이 매디언 콘체른은 특별히 광고수입에만 의존하여 재정을 해결하는 무가치도 발행하여 오랫동안 독자에게 제공해 왔다. 피고는 1999년 12월 13일 처음으로 Koeln 시에서 독자에게 무상으로 교부되는 "20 Minuten Koeln"라는 이름을 가진 일간신문을 발간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신문의 발행부수는 150,000부였다. 신문의 3분의 2정도는 편집을 하여 지방뉴스 및 특히 정치, 문화, 스포츠에 관한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Koeln 시의 모든 전차 및 지하철 역의 신문박스에 놓여졌고, 피고의 신문사 직원들은 Koeln 시의 가장 적당한 곳을 임의로 선택하여 시내 곳곳에서 이 신문을 배포하였다. 이 신문의 이와 같은 무상배포행위는 - 베를린지방법원이 내린 배포금지처분 결정이 법원에 의해 파기(AfP 2000, S.291 ff. GRUR 2000 S. 624) 되기까지 2개월 동안의 배포 중단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 2001년 3월 16일 사실심에서 마지막 구두심리가 있었을 때까지 합당한 것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 원고는 "Koelner Morgen"이란 제하의, Axel Springer 출판사는 "Koeln Extra" 이란 제하의 부가지 일간신문도 발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20 Minuten Koeln" 이란 무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을 발행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원고는 일간신문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시장을 파괴하고 허용되지 않는 '가치광고' (Wertreklame)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행위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일간신문의 판매 및 광고가 감소되는 위험을 초래하고, 이는 본 사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무상배포행위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일간신문의 존립을 위협하고 독립적인 신문의 보도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가 경쟁의 목적으로 (Koeln 시의 범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간신문의 형태로 내용과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발간하는 신문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전파하거나 전파되게 하는 것 및 교부하거나 교부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광고수입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일간신문의 배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법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로지 광고료에 의해서만 발간되는 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전통적인 일간신문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다(LG Koeln ZUM - RD 2000 S.190 : OLG Koeln ZUM - RD 2000 S.377). 상급지방법원(제2심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OLG Koeln ZUM - RD 2001 S.343). 원고는 제1심과 제2심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가지 배포행위를 금지하는 청구권을 허용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하였다.

판결이유

I.

제2심법원은 피고가 공정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과도한 유혹을 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 '가치광고' (Wertreklame)라는 주장이 본 사안에서 고려될 수 없는 이유는, 피고가 독자에게 신문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나중에 이를 유상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신문을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공정경쟁에 반하여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도 설득력이 없다. 관행적으로 오로지 유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상황만을 보고 공정경쟁에 반하여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 불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사안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파괴를 주장하는 자는 그 요건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 및 입증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도 대략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상으로 배포되는 신문도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제도로 인정되어 온 전통적인 신문의 존립에 대해 보호할 만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내용을 담은 일간신문이 단지 광고수입에 의존하여 운영되며 무상으로 배포되는 방법으로써 시장에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본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헌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된 신문의 자유 및 정보제공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대한 존립위협, 편집되는 기사들의 질적인 저하나 편집에 대한 광고주의 증가된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또한 Koeln 시의 신문시장에서도 피고가 무

상으로 1년 반 동안 배포한 일간신문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일간신문 자체의 존립이 진정한 면에서 위협 받은 것은 없다. 원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판매 부수가 6 - 20%까지 감소했다고 말하지만 - 광고시장에서의 손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 - 이는 원고의 신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기에 충분치 않다. 또한 유상으로 배포되고 있는 원고의 일간신문의 판매량이 원고 자신이 무상으로 교부한 신문 및 Axel Springer 출판사가 무가치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발행한 신문 때문에 감소했다는 점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피고가 자신이 발간하는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것인지의 배포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기본법 제5조 1항 2문에 규정된 신문의 자유에 관한 제도적 보장의 적용을 받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II.

원고는 위와 같은 판결을 거부하고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으나 패하였다. 제2심 법원이 피고가 “20 Minuten Koeln”이란 제하의 일간신문을 무상으로 배포한 행위를 공정경쟁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1. 제2심 법원이 본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의 고객에 대해 불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공정경쟁에 반하는 ‘가치광고’를 하였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가치광고’란 상인은 말로써가 아닌 가치로써 광고를 하여 무언가를 고객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며, 그것은 독립된 광고 선물일수도 있고 보너스 또는 유상으로 판매하면서 동시에 선전하는 상품 자체일수도 있다. 이러한 ‘가치광고’가 언제나 공정경쟁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사안에서 - 말하자면 가격은 꽤, 과

도한 유혹 또는 심리적인 구입강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 예외적으로 공정경쟁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본 사건에서 공정거래에 반하는 ‘가치광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상으로 장기간 신문을 배포할 때에는 유상 신문의 경우에 그 신문의 수신인들이 행사할 수도 있는 불공정한 영향력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연방대법원 판결 81 S. 291 [291 f.] - Baeckerfachzeitschrift: 지방상급법원 Karlsruhe WRP 1906 S. 118 [119] 참조). 신문 발행인은 자신의 상품이나 업적을 독자를 상대로 한 시장과 광고시장이라는 두 종류의 상이한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가 두 개의 시장 중 한 시장에서만 보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시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시장에 불공정한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공정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매출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문이 오로지 광고료에 의해서만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한 신문발행인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언론인의 성과물을 선물로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그를 비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그는 성과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독자가 아니라 광고주가 하는 것이다(“Bliestal - Spiegel” GRUR 1985 S.881 [883]; 지방상급법원 Karlsruhe WRP 1906 S. 118[119 f. 참조). 이러한 재정해결모텔은 인터넷사이트 또는 개인방송 등에서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공정거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제2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시장을 방해했다는 관점에서 피고가 공정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

상품을 선물하는 것이 시장을 혼란시키거나 파괴하

는 경우에는 물론 공정경쟁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경쟁행위 단독으로 또는 경쟁자의 예상되는 동종의 조치와 연결되어 진정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기업이 성과물을 가지고 하는 경쟁을 현저히 제한한다. 경쟁자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경쟁으로 인해 일반인의 이해가 영향을 받는데, 일반인의 이해는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를 추방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안에서도 교란되며 상품을 체계적으로 선물함으로써 또는 경쟁이 있을 때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위협받게 된다(연방대법원 1988. 10월 27일자 판결 - 1 ZR 29/87, GRUR 1990 S. 371 [372] = WRP 1989 S. 468 - Preiskampf 참조).

이 사건에서 시장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 경쟁을 제도로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시장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 동시에 시장의 구조를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상황 및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UWG) 및 경쟁제한방지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경우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의 목적이 언제나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상려하거나 그리하여 시장의 벽을 높이 쌓게 하는 조치들은 공정경쟁에 있어서 금지되는 것에 속한다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은 편집된 기사부분이 들어있는 광고지를 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반할 수도 있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광고지에 있는 편집된 기사부분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보기에 일간신문으로 받아들여기에 적당한 경우와 제도로서 일간신문을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위협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반이 되는 것이다(연방대법원 GRUR

1985 S. 881 [882] - Blietal -Spiegel). 따라서 광고지 및 편집부분이 일정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전문잡지를 계속해서 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연방대법원 판결 81 S. 291 [294] - Baeckerfachzeitschrift: 연방대법원 GRUR 1985 S. 881 [882] - Blietal-Spiegel). 이 외에도 영업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객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고, 새롭고도 특별한 효력을 나타내는 경쟁상의 조치를 불공정한 것으로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은 강조하였다.

이미 헌법상의 이유에서 원고가 발간하는 일간신문의 존립이 무엇보다도 피고가 부상으로 배포하는 일간신문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기본법 제5조 1항 2문에서 규정한 신문의 자유는 신문이 오로지 광고에 의해 또는 광고 외의 독자가 신문을 취득할 때에 지불하여야 하는 요금에 의해 재정이 해결되는지의 여부에 전혀 상관없이 보장되는 것이다(연방대법원판결 51 S. 236 [246 f.] - Stuttgarter Wochenblatt I 참조).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 의해 신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존립을 다른 신문사와의 경쟁에서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지면의 존립이 -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해 기사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이 형성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신문 - 이 역할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경쟁지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될 경우에만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규정의 적용이 고려된다(지방상급법원 Karlsruhe WRP 1996 S. 118 [120] 참조: "Stuttgarter Wochenblatt II GRUR 1971 S. 477 [479]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대해 원고의 일간신문이 헌법상의 이유로 우선순위를 차지해

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과 일반적으로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광고로 재정이 충당되는 일정한 형태의 일간신문에 대해 다른 형태의 일간신문이 공정경쟁법상 평가를 할 때에 더 유리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무료로 신문을 배포할 때에 신문의 모든 편집 작업도 광고로써 재정이 충당되는 것이므로 편집 작업, 목표 및 종사자의 인선에 광고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연방대법원 판결 114 S. 82 [86] AfP 1991 S. 528 -Motorboot-Fachzeitschrift 참조 : 이 외에 Tepitzky, GRUR 1999 S. 108 [111] 참조). 그렇다고 하여 구독료에 의해 (복합적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일간신문이 시장파괴에 대해 처음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으며 여론이 형성되는 요소를 지닌 복합적인 재정체계를 갖춘 신문의 종속성에 대한 고려와는 무관하게, 보도에 관해 가치평가를 하거나 공정경쟁법상 판단을 내릴 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령은 확고하다.

원고가 발간하는 신문의 판매부수가 감소했다는 것이 피고의 행위가 공정경쟁법상 비난을 받을 만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자신의 신문이 "20 Minuten Koeln"이란 피고의 신문과 경쟁했을 당시에 판매량이 6 - 20%에 이르는 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판매량 감소가 피고의 새로운 신문과의 경쟁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찾을 수 없다. 이제까지의 시장참여자가 자신의 독자층이 위협받는다 고 하여 현존하는 경쟁상의 구조의 존립을 유지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발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임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힘이 자유롭게 작용하도록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질서의 의미이기 때문이다(연방대법원 AfP 1989 S. 737 GRUR 1990 S. 44 [45] - Annoncen-Avis: 연방대법원 판결 114 S. 82 [81] = AfP 1991 S. 528 - Motorboot-Fachzeitschrift). 그러므로 원고는 - 이미 경쟁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 자신의 존립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왜곡되지 않은 경쟁에 있어서 일반인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도 다른 시각은 이끌어 낼 수 없다. 지방 및 지역에 있는 신문시장의 관계는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지역 및 지방 신문은 지난 세기의 50년 동안에는 극심한 경쟁이 없어오다 오늘날은 독자시장에서 주요 한 전파지역의 독점적인 제공자가 되었다. 이웃한 지방 또는 지역 신문과의 전파지역이 겹칠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다. 원고의 신문은 Koeln 시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일간신문의 지역 신문 시장에서 피고의 신문이 출현하기까지 경쟁이 배제된 상태에 있었다.

새로이 등장하고자 하는 경쟁자는 이와 같이 구성된 시장에는 매우 어렵게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의 진출을 제한하는 벽은 심각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제까지는 독점적인 제공자가 한번 이 위치를 차지하고 나면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기대하지 않았다. 오늘날 아직도 다른 정기구독신문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출현하고 싶은 제공자는 오로지 광고로써 재정을 해결하는 방법 외에 달리 선택을 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AfP 1999 S. 125 [129] 참조).

출 처 : AfP 35. Jahrgang Heft 3 - 2004 SS. 258 - 260.

번 역 : 손원선 (독일 튀빙엔 법대 법학박사) □

“형사피의자의 별거중인 아내의 성과 주소 일부는 공적 정보로 보도할 수 있어”

영국 불만처리위원회는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에 거주하는 한 형사 피의자의 별거 중인 아내가 『MK 뉴스』(MK News) 2001년 10월 27일자 “코위 경찰,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범정에 서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K 뉴스』는 위 기사에서 불만 신청인의 별거 중인 남편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녀의 동의 없이 성과 주소 일부를 공표했다. 이에 불만 신청인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신원을 공표하여 보도윤리강령 제9장 ‘범죄 보도(Reporting of crime)의 장’을 위반했으며, 제3장 ‘사생활(Privacy)의 장’을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에서 자신의 신원

을 더 이상 공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MK 뉴스』는 불만 신청인이 이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충분히 있으며, 그녀가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분제의 아동 포르노가 남편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경찰도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송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분제의 아동 포르노가 발견된 장소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집 주소는 이미 법원 기록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불만 신청인의 이름 또한 가택 수색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서 이미 공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K 뉴스』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녀의 신원을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불만 신청인은 가택 수색 당시에는 남편의 혐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그녀의 이름과 주소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으며, 법원 기록에도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더 이상 신원을 공표하지 않겠다는 언론사측의 약속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며, 편집자가 사과의 편지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불만 신청인의 이름과 피고인과의 관계는 이미 다른 기사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그녀의 집 주소가 비록 진행 중인 소송 절차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공 기록인 법원 기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가 범죄가 발생한 장소로 기사와 연관성이 크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미 앞의 보도윤리강령 제9장 ‘범죄 보도의 장’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친인척들이 범죄 관련 기사의 초점이 되어 불필요하게 그들의 신원이 공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이 기사에서 불만 신청인은 보도의 대상이 아니고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제9장 '범죄 보도의 장'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불만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일부는 공적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 제3장 '사생활의 장' 또한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

또한 기자가 거짓으로 자필 서명하도록 유도했다는 불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불만 신청인이 거짓말했다고 고백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면의 기사 제목이 완전한 오보임을 인정했다. 기사 본문인 4면과 5면에서 이 기사가 독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려 했지만, 결국 불만 신청인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충분히 알리기에는 부족했다. 따라서 보도윤리강령 제1장 '정확성(Accuracy)의 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인이 속아서 자필 서명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여 보도윤리강령 제10장 '은밀한 책략과 속임수(clandestine devices and subterfuge)의 장'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

영국사례 2

“기사 본문에서 사실을 명확히 하려했다 하더라도 제목이 완전 오보이므로 보도윤리강령 위반”

영국 불만처리위원회는 스탠 콜리모어(Stan Collymore)씨가 『선(The Sun)』지 2004년 11월 3일자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인정했다.

불만 신청인은 11월 1일 더블린 지역에서 다수의 럭비 선수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를 후 『선』지는 1면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스탠 콜리모어의 놀라운 고백”(I lied: Stan Collymore's sensational signed confession to the Su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 신청인은 자신이 몇 가지 비행 사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또한 거짓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에 자필 서명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신은 기자가 편이 자필 서명을 요구한다고 하여 서명을 해주었을 뿐이지, 기사인 '고백'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신이 속아서 '고백'에 자필 서명했다는 사실은 오직 본문에서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지는 '고백'이 독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백' 기사 본문에서 이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기사를 이해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사례 3

“소송 취하 사실을 다음 호에서 이미 보도했으므로 불만 신청은 이유없다”

호주신문평의회는 Casey시 의장인 Cr. Brian Oates씨가 『Cranbourne Leader』지와 『Berwick/Pakenham Leader』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erwick Leader』지는 2004년 10월 26일자에, 『Cranbourne Leader』지는 10월 27일자에 Casey시의회

에서 Cr. Oates씨가 자신과 또 다른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종교적인 모욕과 관련된 소송관련 기사가 잘못되었다며 언론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Oates씨는 기사가 보도될 당시 이미 문제의 소송은 취하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주에 보도된 후속기사에서 두 신문은 소송은 취하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소송에 들어간 실질적인 비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에 앞서 2005년 6월에 언론은 '지역 악마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신들의 예배당을 지으려 하고 있다는 시의원의 의회에서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악마의 숭배자들이 Casey시의회를 공격해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Pagan Awareness Network』가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 측은 자신들의 소속기자들은 2004년 10월에 지방의회 회의를 직접 취재할 수 없었고, 26일과 27일자 보도에 앞서 Oates씨와 통화했으나 기자들에게 소송이 취하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한 양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언론사 측이 10월 27일 Oates씨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음 호에서 이를 보도했다고 판단.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 문제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는 근무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또한 방문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총과 칼 등 무기가 발견되었고, 교도소 담장에서 떨어진 테니스 공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으며, 한 여성 방문객의 속옷에서 7,000 달러의 현금이, 또 다른 방문객의 소지품에서는 마약이 발견된 사실이 있다는 또 다른 근무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불만 신청인은 보도에 앞서 언론사측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요구받고 위 기사 중 세 가지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나머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벤디고 애드버타이저』지는 불만 신청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교도소 내에 약물 반입이 없었고, 최근 교도소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총 등 무기류가 발견된 사실이 없으며, 마리화나의 압류가 교도소 내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주장 또한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불만 신청인의 반론이 기사에 충분히 게재되지 않았고, 기사의 모든 내용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호주사례 1

“반론의 기회는 기사의 모든 내용에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빅토리아 교도소 소장인 켈빈 앤더슨(Kelvin Anderson)씨가 『벤디고 애드버타이저』(Bendigo Advertiser)지의 “부패한 교도소”(Jail shame: Prison source says drugs, corruption rife)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벤디고 애드버타이저』지는 위 기사에서 교도소 근무자의 말을 인용, 빅토리아 중앙교도소에서 뇌물 수수, 마약 밀반입과 각종 비리 은폐 등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교도소 내

수 있는 사건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 □

호주사례 2

사실 중 부정확함으로 인해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정정해야

호주 신문 평의회는 재호주 팔레스타인대표단(the General Palestinian Delegation in Australia) 단장인 알리 카자크(Ali Kazak)씨가 『오스트레일리언』(The Australian)지 2004년 7월 20일과 23일자 사설에 대해 제기한 불만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불만 신청인은 위 사실들은 모두 친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사화된 것으로, 7월 20일자 사설은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사측은 이 사설에 대해 반박하는 자신의 투고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평의회는 언론은 사실에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음을 일관되게 인정해 오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같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언론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언론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게재해야 하는지이다. 신문평의회는 어떤 독자도 자신의 의견을 지면에 게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했다.

대부분의 신문사에는 매일 수많은 독자 투고가 들어오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게재할 것인가는 편집자의 권한이다. 신문평의회는 이런 편집자의 선택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했다. 『오스트레일리언』지는 불만 신청인의 투고 중 두 건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신문평의회는 불만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문제의 사실들이 이스라엘 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불만 신청인은 7월 20일자 사설 중 “2000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인 1,000명, 팔레스타인인 2,50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에 다섯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 부분은 오보라고 주장했다.

카자크씨는 그 기간 중 이스라

엘인이 그 정도 사망했다는 내용은 맞지만, 문맥상 이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다섯 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 기간에 팔레스타인인은 어린이 46명을 포함하여 221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측이 의도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언』지는 20일자 사설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테러리즘 행위 조사’이며, ‘이스라엘은 테러리즘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사실의 주된 논지라고 밝혔다. 또한 문맥상, 다섯 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인의 사망자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평의회는 위 문장은 문맥상 부정확한 것으로, 좀더 명확하게 표현했었거나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자크씨는 신문평의회에 권고를 받아들여 반론 보도문을 언론사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게재한 독자 투고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평의회는 신문사측이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했음에도 이를 정정보도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취 불만 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였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불법감청 의혹제기 위법성 인정안돼”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1997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검찰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이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등 국가

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며 “이 사건 사실 중 검찰의 불법감청에 관한 의혹제기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1999년 7월 31

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실을 통해 검찰이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감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검사 1인당 1천만원씩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5. 1. 14.

TV고발프로그램의 개인명예훼손 “공익방송팬 위법아니다”

TV방송 등 언론매체의 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특정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3일 김모 씨가 자신을 부유층 고액채널자로 고발한 방송프로그램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방송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김 씨는 2001년과 2003년 KBS 시사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최재원의 양심추적'에 네 차례 등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 중 '최재원의 양심추적'은 방송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추적 60분'은 내용상 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4. 12. 14.

한겨레, 향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조선일보의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1일 한겨레신문사가 자신의 '심층해부-언론권력' 시리즈 기사를 반박한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한겨레신문사에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가 2001년 당시 한나라당 삼규철 의원의 국회 발언을 근거로 게재한 '대한매일·한겨레의 반여지(反野紙) 공격. 50년 된 처와 10년 된 접 사랑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가 일부 언론을 동원해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한 기사 등 9건이 왜곡보도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판결에서 “언론사는 여론 형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한겨레신문에 대한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강조한 이후 한겨레신문이 연일 조선일보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하고 조선일보에 대한 국제청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을 옹호하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에 비추어 (조선일보의 보도는)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공익을 위해 사실에 기초한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5. 1. 12.

“비난 유발시 다소 심한 보도도 참아야”

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기자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권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문 광고를 비판하기 위해 피고가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에는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당초 원고의 신문 광고가 5.18민주화운동을 ‘소수의 좌익이 북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폭동’이라고 본질을

왜곡한 이상 그런 심한 비난과 반발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문광고 자체가 충분한 사실입증이나 추론을 거친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이어서 논리적인 비판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기사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원고가 참아야 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2년 8월 모 일간지에 5.18은 좌익이 북측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냈다가 오마

이뉴스가 ‘지만원과 늑대’라는 제목에 ‘분열적 정신상태’, ‘야당이 집권하면 출세할 것이라는 착각’ 등의 표현이 담긴 기사를 쓰자 1억원 손해소송을 내 1심에서 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신문 광고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민주화운동 사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2005. 1. 12.

“조선일보에 악의적 비방·욕설 문화방송 5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김상균)는 29일 조선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2001년 언론사 세부조사 등 관련 뉴스와 언론 비평 프로그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은 조선일보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500만원은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엄기영씨, 1000만원은 기자 이용마 씨, 2000만원은 연출자 최용익 씨, 아나운서 손석희 씨, 시사평론가 정태인 씨 등 3명이 각각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기자 윤능호 씨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평(論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이나 모멸적 표현에 의한 모욕은 허용될 수 없다”며 “문화방송은 악의적 비방, 욕설,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당시 문화방송 보도와 관련, ▲6월 9일자 ‘미디어비평’ 중 “없어져야 하는 사회악”, “괴물”, “비정상적인 언론” 표현 ▲7월 18일자 ‘뉴스 데스크’ 중 “기피와 혐오의 대상”, “군림하되 책임지지 않는 언론권력” 표현

등 6개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문화방송의 보도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존재를 더불어 비판하며 공존할 상대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조선일보를 악의적으로 모함한 인신 공격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화방송의 보도는 논평에 해당해 정정보도를 명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보도 후 3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며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2004. 12. 30.

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에 관한 논문 나와

배병화 전남대일 노설위원이 ‘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최근 전남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배 위원은 이 논문에서 공익성이 높은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헌법적 관점에서 공인의 명예권보다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공인이론과

현실적 악의이론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이론과 판례를 비교 분석해 그 대안을 찾으려 모색하고 있다.

배 위원은 “최근 언론의 자유와 공

인의 인격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의 남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보도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해 법원이 위법성의 심사 기준을 헌법적 관점에서 더욱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 1. 28.

2005년도 정기총회 개최 조준희 위원장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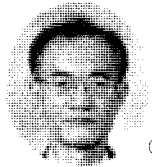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3월 31일, 법원인사이동과 일부 중재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위원 30명을 새로 위촉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준희 변호사를 선출했다. 신임 조준희 위원장은 서울민·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초대회장과 시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부위원장으로서는 이종욱(서울제1중재부) 위원과 허광욱(광주중재부) 위원을, 감사에는 전세봉(서울제4중재부) 위원과 박충선(대구중재부)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이 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



조준희 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



허광욱 부위원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지난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법적으로 단일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중재제도를 '조정' 과 '중재' 로 구분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와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했다. 신청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외에 인터넷신문으로까지 조정(중재)대상매체를 확대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시정권고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7월 28일 부단 시행된다.

대전지방법원회 개회

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대전 지역 각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호순 위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주제논문을 발표했으며, 사회는 한성곤 위원(대전지법 부장판사)이 맡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인해 언론분쟁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는 등 언론피해구제제도가 확대 강화되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국민들이 변화된 제도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 했다. 그러나 제3자의 사정권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조항은 경우에 따라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법원 인사에 따라 일부 중재부장 해촉

대법원이 2월 14일자와 21일자로 고법 및 지방 부장판사 등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 위원회 일부 중재부장이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했으며 이에 따라 중재부장 직에서 해촉됐다.

| 소속중재부 | 성 명 | 현 직 | 변 동 사 항 |
|---------|----------|-------------|-------------|
| 서울제3중재부 | 김 상 균 부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퇴 직 |
| 서울제5중재부 | 조 관 홍 부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
| 광주중재부 | 구 길 선 부장 | 광주지법 부장판사 |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
| 강원중재부 | 조 용 준 부장 |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
| 충북중재부 | 장 형 식 부장 | 충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법 부장판사 |
| 경남중재부 | 박 상 철 부장 |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 부산고법 부장판사 |
| 제주중재부 | 김 인 광 부장 |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5-1차 운영위원회 개회

200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정기총회 상정안을 검토하고, 보수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언론중재위원 명단

새로 구성된 각 중재부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굵은 글씨는 새로 위촉된 위원)

◇ 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 부위원장

이종욱 전 한겨레 논설위원
허광욱 전 전남일보 논설주간

◇ 감사

전세봉, 박충선 위원

◇ 운영위원

위원장, 허광욱, 주길치, 양삼승,
박봉간, 강은교, 이도영, 김영주,
서송목 위원

◇ 시정권고위원

위원장, 이종욱, 박영상, 노향기,
신명중, 신찬균, 주동황 위원

◇ 서울 제1중재부

조용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종욱 전 한겨레 논설위원
안병준 전 내일신문 편집위원장
오욱환 변호사

◇ 서울 제2중재부

송영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경일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변화석 변호사

박영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주길치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서울 제3중재부

성기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수언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노향기 전 월간 말 발행인
양삼승 변호사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서울 제4중재부

신명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신찬균 전 세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
박봉간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
전세봉 변호사
문영희 전 한겨레 논설위원

◇ 서울 제5중재부

조인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재덕 전 국민일보 부사장
임연택 전 KBS국장
주동황 광운대 신방과 교수
조수정 변호사

◇ 부산중재부

신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
정영현 동의대 신방과 겸임교수
김민남 동아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주대경 변호사
강은교 동아대 문예창작과 교수

◇ 대구중재부

- 김 창 종 대구지법 부장판사
- 여 원 연 전 영남일보 논설위원
- 박 충 선 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김 중 수 변호사
- 김 준 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 광주중재부

- 장 병 우 광주지법 부장판사
- 허 광 욱 전 전남일보 논설주간
- 곽 준 흠 변호사
- 이 수 애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 성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 대전중재부

- 한 상 곤 대전지법 부장판사
- 김 강 덕 전 국도일보 대표이사
- 전 병 무 변호사
-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이 용 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

◇ 경기중재부

- 한 병 의 수원지법 부장판사
- 김 건 영 전 경인일보 대표이사
- 석 희 태 경기대 법학과 교수
- 조 정 근 변호사
- 김 정 현 안양대 신방과 교수

◇ 강원중재부

- 홍 승 철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김 중 식 변호사

이 관 열 강원대 신방과 교수

- 유 현 옥 강원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 정 언 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충북중재부

- 박 대 영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이 도 영 전 충북YMCA 명예사무총장
- 박 종 호 청주대 사회과학대 학장
- 허 석 열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박 충 규 변호사

◇ 전북중재부

- 류 연 만 전주지법 부장판사
- 하 명 희 전북언론문화연구원장
- 신 환 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 권 혁 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
- 김 영 복 변호사

◇ 경남중재부

- 황 용 경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 임 경 숙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 김 영 주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 김 창 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 이 재 철 변호사

◇ 제주중재부

- 조 한 창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고 창 실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 서 승 북 전 연합뉴스 제주지사장
- 현 순 도 변호사
- 김 중 배 전 CBS 제주방송보도제작국장

- 강경근 (2004). 언론관계법 개정의 방향: 언론발전론과 언론개혁론.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언론관계법 핵심쟁점에 관한 논의'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9.
- 강명규 (2004). 언론전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법 개정' 토론회 발제논문. 2004. 11. 26.
- 고주희 (2004, 겨울). 언론과 권력: 개방형 브리핑 제도. 관훈저널. 통권 제93호. 38-48.
- 권상희 (2004, 12월). 2004 언론계 결산: 인터넷 - 법적 지위의 강화에 노력, 포털 뉴스 영향력 증대. 신문과 방송. 제108호. 24-27.
- 김동규 (2004, 겨울). 발표저널리즘과 언론의 책임: 발표저널리즘의 현황과 개선방향. 언론중재. 통권 제93호. 4-17.
- 김상철 (2004, 겨울). MBC-SBS 보도전쟁으로 본 미디어비평: '보도전쟁'과 '상호비평'의 간극.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2호. 112-121.
- 김영옥 (2004). 신문윤리강령: 기능과 내용 및 개선방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신문윤리강령 개정과 신문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1. 25.
- 김영호 (2004). 한국언론현황: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언론개혁입법 추진.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회 동아서아 기자포럼: 전쟁과 언론 및 언론인의 역할'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1. 16-21.
(2004, 겨울). 노무현 정부, 언론정책도 언론선략도 없다.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2호. 98-111.
- 김재영 (2004, 12월). 2004 언론계 결산: 각종 오보와 부리한 예측 보도 양산. 신문과 방송. 제108호. 10-14.
- 김종현 (2004, 겨울). 언론개혁 3개 입법안 해설: 언론피해구제법 내용.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2호. 46-57.
- 문재완 (2004). 언론중재법의 개혁방향. 한국헌법학회 주최 '언론개혁 입법의 주요 쟁점'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15.
- _____ (2004, 겨울). 언론과 권력: 언론개혁 입법. 관훈저널. 통권 제93호. 20-28.
- 문종대 (2004). 신문 관련 법 개정의 내용과 평가.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법 개정' 토론회 발제논문. 2004. 11. 26.
- 민성철 (2004, 겨울). 의견면책의 한계: 인신공격적인 의견표명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언론중재. 통권 제93호. 46-63.
- 박용상 (2004). 신문법의 개혁방향. 한국헌법학회 주최 '언론개혁 입법의 주요 쟁점'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15.
- 박인규 (2004, 겨울). 언론과 권력: 노무현 정부의 권언갈등. 관훈저널. 통권 제93호. 9-19.
- 박형상 (2004). 한국규범, 한국현실 그리고 한국언론개혁.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언론관계법 핵심쟁점에 관한 논의'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9.
- 방정배 (2004). 언론철학과 민주주의 이론: 언론관계법안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법 개정' 토론회 발제논문. 2004. 11. 26.
- 송영천 (2004, 겨울).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쟁점.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논문. 2004. 12. 6-7.
- 신대섭 (2004, 겨울). 언론개혁 3개 입법안 해설: 방송법 개정 쟁점.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2호. 30-45.
- 오동석 (2004). 국가보안법 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 개혁입법 논쟁. 진정 '언론의 자유'는 무엇인가' 토론회 발제논문. 2004. 11. 4.
- 오준근 (2004, 겨울). 방송위원회의 주의·경고 및 권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방송연구. 제59호.

- 227-250.
- 원숙경 (2004).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일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4 가을철 학술대회 발제논문, 2004. 10. 22.
- 유일상 (2004). 언론피해구제법안 왜 문제인가. 한국방송협회 주최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10.
- 이 신 (2004).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주최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10.
- 이수중 (2004, 겨울). 중국·싱가포르의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 언론중재, 통권 제93호, 100-105.
- 이연수 (2004, 겨울). 언론중재사례로 본 지역 언론.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광주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4. 11. 5.
- 이영중 (2005, 1월). 김정일 호칭 생략 오보의 전말: 북한 취재와 보도에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신문과 방송, 제409호, 77-81.
- 이영환 (2005, 1월). 신문법 제정 진행 경과: '합의'는 없고 '입장차'만 드러나. 신문과 방송, 제409호, 163-167.
- 이용성 (2004). 신문법안의 주요 쟁점 비교 평가와 입법 전망.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언론개혁 입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토론회' 발제논문, 2004. 12. 16.
- (2004). 언론자유와 여론 다양성.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20.
- 이재진 (2004, 겨울). 발표저널리즘과 언론의 책임: 정치적 폭포에 대한 중계보도와 언론의 법적 책임. 언론중재, 통권 제93호, 30-45.
- (2004, 겨울). 언론과 권력: 정부의 반론권 이용 현실과 쟁점. 관훈저널, 통권 제93호, 29-37.
- 이재진·이민주 (2004). 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 시기의 법을 통한 언론통제의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4 가을학술대회 발제논문, 2004. 10. 16.
- 이정호 (2004). 신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언론개혁국민행동·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언론개혁입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발제논문, 2004. 11. 2.
- (2004). 신문법안 관련 왜곡보도와 절유율 규제 사례.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20.
- 임상원 (2004). 신문 관련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신문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법 개정' 토론회 발제논문, 2004. 11. 26.
- 장영수 (2004, 겨울). 발표저널리즘과 언론의 책임: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한 오보와 변칙범위. 언론중재, 통권 제93호, 18-29.
- 정윤식 (2004). 방송 관련 법 개정의 내용과 평가.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법 개정' 토론회 발제논문, 2004. 11. 26.
- 조수정 (2004, 겨울).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언론중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논문, 2004. 12. 6-7.
- 조준상 (2004, 겨울). 언론개혁 3개 입법안 해설: 신문법 쟁점과 전망.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2호, 16-29.
- 주동항 (2004). 각 신문법안과 독과점 규제의 쟁점들.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세미나 발제논문, 2004. 12. 20.
- 최경진 (2004, 겨울). 탈북자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통권 제93호, 106-111. □

On-Line 중재상당실



인터넷 기사에 대한 반박

잘못된 보도의 유형에 부합되는 부조리한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문제는 신문지상이 아니라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분명히 보도 자체는 문제가 있음에도 대응조치를 취하거나 반박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고작 아무도 보지 않는 러플만 달수 있는 것이 끝입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잘못된 보도가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으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까를 현행법상 인터넷 기사나 방송에 대한 중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기사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반박문과 게재한 기사의 삭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을 운영한 지 2달 정도 되었는데도 신문사 기자라고 하면서 취재를 하러 온다고 하더군요. 무슨 특집기사인데 절대로 광고성은

아니라고 하면서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자기들에게 제보와 추천을 해 준 사람들에게 경품을 줘야한다고 하면서 200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연락 온 당일 날 촬영과 인터뷰를 마치고 계약서 비슷한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어 취소하고자 했으나 기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사가 나온 것을 보니 말이 기사지 게재된 위치나 내용은 광고나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을 이용한 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내용이 잘못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귀하께서 체결하신 광고계약은 기자의 강압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용하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선 귀하께서 기자의 강압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민법 제110조 '자기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광고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은 광고계약서의 내용, 계약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20)의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효력의 차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있는데 Q&A 내용을 읽어보았지만 효력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정보도는 말 그대로 보도된 뉴스가 오보임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보도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효력은 비교적 확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반론보도에 대해서는 그 효력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서로 쌍방에서 타협하여 내린 결정이므로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만약 타협 건안이 7개라고 가정하였을 때 옳은 보도가 4개 잘못된 보도가 3개일 경우에도 반론보도 게재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문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반론보도란 정정보도와 달리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의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보도내용은 사실과 개별적인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도기밀적 취재에 한함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반론보도청구 후 종재결과는 합의, 중재결정, 중재결정 불이행에 합의, 확정된 중재결정은 재판상 합의와 동등한 효력이 있으므로 언론사로서는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셋째, 반론보도는 본 보도와 잘못된 부분의 정정, 정정보도여부여가 중요하며, 몇 번인가 잘못보도하는 중보한 문지가 없습니다.

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저희 민간언론매체상담센터(02-33743000, 3070, 31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중재심리시 소요되는 시간?

중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당사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당일 날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쌍방 간에 합의도 안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종재심리는 시간이 걸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종재결정이 내릴수 있어 됩니다. 그리고 종재결과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종재부는 중재를성립결정이나 종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재를성립결정이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재부가 내리는 결정을 말하고, 중재결정이란 사건과 동일한 사실을 위하여 종재부가 당사자의 이익을 판단하는 사항을 심판하여 직권으로 언론보도 등을 게재하라고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정은 대부분 종재심리기간 말일에 내려지나 심리종결만을 고지하고 결정은 주후 14일 또는 2일 7일 내에 내려지는 수도 있습니다.

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저희 민간언론매체상담센터(02-33743000, 3070, 31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잘못 보도된 기사 정정보도 요청 목적

OO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을 하였던 독자입니다. 2004년 12월호를 받아 관심 있는 기사부터 읽어다가는데 잘못된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잘못된 기사내용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피고인이나 검사의 상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법원판결까지 가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도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않으면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되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OO잡지사측에 잘못된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유익하실 부분은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판결문까지 못하오 주, 간접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도여부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엔 중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

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

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1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

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함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불복절차) ① 반론보

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이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 제어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 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찾아가기: <http://www.pac.or.kr/>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설치된 언론보도 관련 종합법률상담기구입니다.
- 중재신청 상담은 물론 명예훼손에 의한 민형사상 법률 상담도 해 드립니다.
- 방문·전화·우편·이메일 상담뿐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 언론사나 기업, 사회단체가 원할 경우 언론피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